

2000년 여름호

# 언론중재

기준들 폐업 철

개 따로



## 특 집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피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
- 명예훼손 면책 사유로서의  
상당성기준

## 국내논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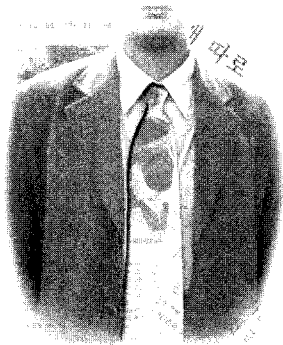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2000. 여름

차 례



계간/2000년 여름호 • 제20권 • 제2호/통권75호  
 인쇄/2000년 6월 25일 • 발행/2000년 6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김 행 술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 ~ 5, 732-6011 ~ 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 특 집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 4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 이은영
- 18 •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 김민중
- 33 •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 표성수

## 국내논문

- 49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분석 및 평가 • 백선거

## 위원칼럼

- 64 • 언론과 말 • 장공자

## 지방토론회

- 66 • 제주지방토론회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중재제도 • 양경승
- 72 • 충북지방토론회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최선열

## 해외시찰

- 78 • 해외시찰기 • 권우동

## 해외동향

86

## 자 료

- 94 • 언론중재신청사례
- 110 • 선거기사심의사례
- 118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6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64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위원회 소식

168

## 지상중계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집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특 집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 I. 머리말

명예훼손소송의 유형은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형사소송보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비중이 높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론보도·정정보도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 못지 않게 손해배상금을 통해 자신이 입은 고통을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의 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리세계에서의 비가역성의 원리를 들지 않더라도 손해는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인체손해이든 재산손해이든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토록 제도화되어 있다.<sup>1)</sup>

손해배상법은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의에 맞게 분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손

#### 이 은 영

한국의대 법대교수

- 서울대학교 법대 및 동 대학원졸, 독일튀빙겐대 법학박사
- 저서 : 『민법총칙』, 『채권총론』, 『민법학 강의』, 『법여성학강의』 등 다수
- 현 방송위원회 연예오락분과 심의위원장, 대통령직속 반부패 특위 위원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 참고문헌 : 김선석, “민사상의 인과관계론에 대한 재음미(자연적 인과관계론)”, 『변협지』 1985년 10월호 ; 김석우,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의 본질”, 『중앙대논문집』 제4집(1959. 10) ; 김용규, “손해배상의 본질”, 『부산대논문집』 제10집 ; 김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재검토”, 『법조』 1989년 5월호 ; 김승태, “손해전보원리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박영사, 1986 ; 김형배, “인과관계”, 동저『민법학연구』수록 ; 김용한, “손해배상”, 『재산법의 과제와 판례』, 1989 ; 박찬주, “손해경감 조치의무의 법리”, 『법조』 1987년 7월호(36권 7호) ; 박우동, “손해배상 청구권과 소멸시효”, 『민법학논총』, 박영사, 1985 ; 송기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법의 제문제』, 삼영사, 1985 ; 강봉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입증의 정도”, 『사법행정』 1985년 8월호 ; 윤재식,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민사판례연구』 제10권, 1988 ; 양삼승,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독일·일본 및 우리나라 민법의 비교”, 『방순원 선생 고회 기념논문집』, 1984, p.70. 이하 ; 동, “스위스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법조』 37권 11호, 1988 ; 이명갑, “손해공평분담법의 재검토”, 『사법행정』 538호, 1989, p.233 ; 이상태,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구조와 인과관계”, 『불법행위법의 제문제』, 삼영사, 1985 ; 이종복, “일반조항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법행정』 1988년 10월호 ; 동, “규범목적에 의한 손해배상범위”, 『판례연구』 제3집, 고대법학연구소, 1984 ; 장경학,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상사중재연구총서』 IX, 1977 ; 조종현, “민법상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용한화갑기념 『민사법학의 제문제』, 1990 ;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p.397 이하.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해 주는 제도이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법의 목적은 아니다

해배상법은 인체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재산손해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2차적 보장기능”을 담당한다.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해 주는 제도이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법의 목적은 아니다. 가해자가 야기한 손해에 한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과한다. 제한배상주의의 법제도 아래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규범적·정책적 판단에 해당한다. 법관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단간의 이해대립을 정의관념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익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sup>2)3)</sup>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하여 그 재산적 손해의 산정문제와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99년 부스터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이하 ‘부스터사건 판례’라고 약칭)는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보도와 그 매출액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즉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인 사이클론 제품

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그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 입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II.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

###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세련된 법기술을 필요로 한다. 어

2)참고문헌 (독일문헌) : H. Lange, Schadensersatz, 1979; F. Bauer, *Entwicklung und Reform des Schadensersatzrechts*, 1935; Brinker, *Die Dogmatik zum Vermögensschadensersatz*, 1982; Gottwald, *Schadenszurechnung und Schadensersatz*, 1979; Grunsky, *Aktuelle Probleme zum Begriff des Vermögensschadens*, 1968; Keuk, *Vermögensschaden und Interesse*, 1972; Mertens, *Zum Begriff des Vermögensschadens im Bürgerlichen Recht*, 1967; Schiemann, *Argumente und Prinzipien bei der Fortbildung des Schadensrechts*, 1981; Hans Stoll, *Begriff und Grenzen des Vermögensschadens*, 1973; Str fer, Schadensersatz und Kommerzialisierung, 1982.

3)출처, 『채권각론』, pp.536~38에서 상술하였음.

편 사건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각각 어느 정도씩 그 사회적 위험을 분담시킬 것인가 하는 다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배상액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법원리가 적용된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성립이 거의 확실하게 된 이후에는 손해배상범위의 문제가 야기된다. 배상범위가 결정되면 그 범위 내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계산해 내는 일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배상범위의 결정 및 배상액의 산정이 법의 적용만으로 명확해 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합의하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남게 된다.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관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손해배상사건은 민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법률문제일 것이다. 자주 일어나는 사건일수록 법적으로 명확한 해결방향을 제시해야만 당사자 사이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적 명확성이 강하게 요망되는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법원칙이 많이 수립되

어야 한다.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원칙”들이다. 배상액 산정의 문제는 단순한 계산문제가 아니다. 근대초기의 민법학에서 배상범위 결정은 규범판단의 문제인 반면 배상액 산정은 사실판단의 문제로 파악하고, 배상액 산정을 법학에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sup>4)</sup> 손해배상사건이 증가하면서 배상액산정의 여러 작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사회·경제를 보는 규범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깊이 인식되었다. 배상액산정의 원칙들을 수립하여 놓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재산적 손해의 산정

재산적 손해는 인체손해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금전으로 산정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차이설’에 의해 가해전과 가해 후의 재산 상황을 비교하여 가치감소분을 계산해 내는 방법에 의한다.<sup>5)</sup> 또한 배상액이 물건의 객관

4) 만약 민법학에서 계속해서 배상액산정의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여 외면한다면 민법학은 사례해결에 적용될 실정법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민법학을 학습하여 배출하는 법률가들도 쉬운 손해배상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법학이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추상적인 이론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사례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용할 때 살아 움직이는 법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줄고, “물건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김현태박사팔순기념논문집 『불법행위법의 특수문제』, 법문사, 1997, pp.347-370.

5) 독일에서는 1855년 몸젠에 의해 손해의 개념에 관한 차이설(Differenztheorie)과 배상액 산정방법으로서 차이방법(Differenzmethode)이 주장되었다. Friedrich Mommsen, *Zur Lehre von dem Interesse*, 1855: Hermann Lange, *Schadensersatz*, 1979, S.18.

독일민법은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이외의 인체손해와 재산손해)로 구분하고 배상방법으로서 원장회복주의를 취하고 보충적으로 금전배상을 허용하는데, 차이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뿐이다.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적 가치에 미달해서는 안된다는 '객관적 최소 손해설'<sup>6)</sup>과 가해사건을 통해 생긴 결과를 제거하는데 드는 금전적 필요성을 배상액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설'<sup>7)</sup>도 물건손해에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대판 1965. 3. 23, 64다1899)는 "현실적 손해란 배상청구권자가 자기 수증에서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치료비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재수술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여 현실적 필요도 손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손해의 분류방법으로서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손해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익을 상실한 것을 가리켜 '적극적 손해'라고 한다. 인체손해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 장례비의 지출 등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재산손해에서 물건파손으로 인한 그 물건의 시가상당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이며, 물건의 수리기간 중 입게 된 영업상 손해, 기타 사용이익의 상실 등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된다. 반면에 당연히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가해원인으로 말미암아 획득불능으로 된 경우를 '일실이익의 손해' 또는 '소극적 손해'라고 한다. 일실이익의 손해는 장래이익획득의

확실성 및 예상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배상액 지불시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등 고유한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판례(대판 1992. 6. 23 전원합의체, 91다33070)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분류한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손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느냐 소극적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산정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판례(대판 1994.10.7, 94다169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受分讓權) 상실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로 파악하면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될 것이다.

6) 재산손해에서는 최소한 침해된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는 배상되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배상액이 그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는 배상이론이 객관적 최소손해설(Lehre vom objektiven Mindestschaden)이다. 객관적 최소손해설은 너이너(Neuner), 빌부르크(Wiburg), 비들린스키(Bydlinski), 라벨(Rabel)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현재에는 그 밖에도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다. Neuner, Interesse und Vermögensschaden, AcP 133(1931); Wiburg, Zur Lehre von der Vorteilsausgleichung, JherJb 82(1932), 51ff.

7) 재산손해란 가해사건을 통해 생긴 손해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금전필요라고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이 필요설(Bedarftheorie)이다. 필요설은 쾨이너(Albrecht Zeuner)에 의해 주장되었다. Zeuner, Schadensbegriff und Ersatz von Vermögensschaden, AcP 163(1964), 380ff.

### 3. 손해액의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외에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사실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일실수입의 산정과 관련하여서 원고는 피해자의 직업, 소득 등을 증명해야 하며,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만, 장래 얻을 사업이익이나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실액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에 고려되는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의 일종이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판결을 해야 할 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 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노동부발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변론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판단할 수 있다.

### 4. 확실성의 원칙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실무에서 원칙으로 삼는 것 중에 '확실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손해의 입증책임과 관련을 갖는다. 확실성의

원칙(basic requirement of certainty)은 "손해는 확실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하며 고찰과 추측에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8)</sup> '손해의 확실성'은 손해의 존재의 입증도 포함한다. 어떤 사건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야 그 손해를 산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손해의 확실성이 인정된 후에야 손해세부항목의 산정에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해 '확실성의 원칙'을 이미 채택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판례(대판 1992.11.27 92다29948)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배상액 산정에 요구되는 확실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인간이 손실의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면 된다"는 것이며 모든 손해항목에 관해 완벽한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손해가 모든 항목마다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입증된 손해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범위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손해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비록 손해의 양과 범위가 불확

8) 이 원칙은 미국손해배상법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United States Trust Co.v. O'Brien, 143 N.Y.284 (1894).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해는 확실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하며 고찰과 추측에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확실성의 원칙을 채택

실하더라도 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넓다. 예를 들어 D가 도급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P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비용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법원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sup>9)</sup>

확실성의 원칙은 영업이익의 일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시한 “사업의 장래이득 목표의 기록장” 또는 “투기적이거나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손해액 주장”을 부정하는 경우에 자주 원용된다.

“장래의 이익에 관한 손해”는 계약의 이행이익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이득상실이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그 불확실성에 차이가 있다. 통상손해(general damages)는 불법행위나 기타 위법행위의 결과 당연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히 배상청구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특별손해(special damages)는 위법행위로 인해 단순히 추정되거나 산정될 수 없는 손해로서 피해자에 의해 주장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일실이익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통상손해로서 고려되지만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특별손해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대판 1992.4.28 91다29972)는 “장래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 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판결에서는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판매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판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또한 “매도인이 판매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판매하면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거나 또는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의 액수까지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과다한 것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통상적인 이익의 범위로 한정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

9)Wenzler & Ward Plumbing & Heating Co. v. Sellen, 330 P.2d 1068 (Wash,1959)는 같은 취지이다.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sup>10)</sup>

### III.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

1999년의 대법원판례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에 관하여 원고의 입증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배척하였는데,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 원고는 자동차연비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인 ‘사이클론’이라는 제품개발에 성공하여 1989년 미국특허를 취득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5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였고 덴마크 등 세계 40여 개국에 특허·의장·상표권을 출원 중에 있었다. “교통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시중에 출하되어 판매되고 있는 연비향상 및 매연절감장치(부스터라고도 칭하나, 이하에서는 연비향상장치라고 함)의 성능에 의문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그 성능검증의 일환으로, 1994년 4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대전 구간에서 위 사이클론 제품을 포함한 11개 연비향상장치에 대

하여 제품성능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시험결과에 의하면 위 테스트에 참가한 제품 중 위 사이클론 제품이 연료소모량(12%내지 16%로 감소), 하이드로카본(58%내지 75%까지 감소), 일산화탄소(97%까지 감소) 등 3가지 시험분야 모두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나머지 제품들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가 운영하는 KBS 텔레비전의 뉴스 보도 담당자들은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신중한 구매를 위한 판단자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시험현장에 임하여 원고를 비롯한 세 명의 연비향상장치 제조업자와 인터뷰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제품의 작동원리와 특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그 인터뷰 장면과 함께 편집하여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1994년 5월 20일 21:30경 KBS 텔레비전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즉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로 보도 첫머리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그 연비향상장치 제조업자들의 선전이 과장선전임을 암시하게 하고,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시험결

10) 판례평석: 윤진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동시이행항변권과 권리남용”, 『사법행정』, 379호(1992. 7), p.86.

대법원,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에 관하여  
원고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 배척

과의 부정확성을 밝히면서 그와 대비되는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그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자들의 선전은 과장선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경우,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그 보도에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제조업자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제조업자 및 그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그 제조업자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서울고법 1998.7.9. 97나47790)은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연절감 장치인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사

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다"라고 배척하였다.

이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재산적 손해발생 입증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입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요구가 쏟아진 사실과 그 후 당해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되어 도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해 원고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모조품의 범람이나 경영 미숙, 과도한 광고비의 지출 등으로 원고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경험칙에 의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원심은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그 손해액을 규명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 제품의 국내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해외매출을 포함한 원고의 총매출액은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인 1993.4.1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매출액의 감소에는 원고의 경영 미숙과 지나친 광고비 지출, 유사제품의 범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매출은 그 제조자나 당

해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여건과 소비심리의 변화, 기업의 경영기법, 마케팅 전략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수시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원고회사의 사이클론제품의 국내매출액의 감소에 이 사건 보도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보도가 매출액감소에 유일한 원인이라거나 중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사건 보도 직후 국내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출액의 감소가 전적으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거나 위와 같은 국내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보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결국 재판부가 감소된 매출액 중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 과관계 있는 부분을 증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매출액감소 등 재산적 손해의 존재 및 그 금액을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은 대개 위자료청구에 한정되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입증의 곤란을 극복하고 확실한 손해액을 증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기관은 한편으로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그 상업적 이익의 증대를 위하여 센세이셔널한 내용을 보도하려는

속성을 보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부 방송사들은 상업적인 속성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명예가 다반사로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조차 있다. 언론기업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행위를 해서라도 기업이윤을 축적해 가려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위험 앞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의 인격적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 언론기업의 보다 정확한 사실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위자료'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다.<sup>11)</sup> 방송사들이 명예훼손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얼마간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사례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다.

판례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액 입증에 확실성의 원칙을 계속 엄격히 고집한다면 장래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의 배상은 실제 배제될 것이고, 법원의 이러한 법 운용은 신용훼손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려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괴리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확실성의 원칙을 완화하여

11)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위자료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2년 봄호, pp.52-55.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액 입증에  
확실성의 원칙을 엄격히 고집한다면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의 배상은  
배제될 것이다

피해자를 구제해 줄 것이 요망된다.

#### IV. 위자료의 금액

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충격·절망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비록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개념상 별개의 손해로 다루어진다.<sup>12)</sup>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달리 그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가 모호하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위자료의 인정여부나 산정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기초해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자료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규범적 판단에 맡겨지는데, 그것은 곧 손해배상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기도 하다. 우리 판례는 위자료액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사정 외에 가해자측의 사정도 고려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를 충분히 받았는가도

고려한다. 이는 바로 위자료가 전체 손해배상금의 적정화를 위한 조정적 기능도 실제 담합을 나타낸다. 그 밖에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도 실제 담당하고 있다.<sup>13)</sup> 최근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성상실을 비난하고 인간성회복을 피하고자 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자료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금액도 고액화되는 경향에 있다.<sup>14)</sup>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 받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제751조).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 의해 가해진 정신적 고통 모두 금전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뚜렷하며 직접적일 것(간접침해의 경우 예외 인정), 둘째, 정신적 손해가 적법한 이익 - 즉 보호법익 - 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되었을 것, 셋째,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 인내의 정도를 초과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전으로 배상된다. 유아<sup>15)</sup>나 식물인간 및 측사자<sup>16)</sup>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볼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액은 피해자 1인당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보통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검사·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

12) 참고문헌 : 박우동, "민법 제752조의 의의," 『법조』 1967년 7월호 ; 권용우, "민법 제752조 소정의 위자료청구권," 『법조』 1974년 1월호 ; 이근식, "위자료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정," 『고시계』 1978년 10월호 ; 김학수,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민법학논총』, 박영사, 1985 ; 한봉희, "위자료청구권의 제문제,"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박영사, 1986 ; 이명갑,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 『사법행정』 1987년 3월호, 5월호.

13) 이명갑, 전계논문에서는 위자료정액화 경향에 반대하고 위자료는 영미법에서와 같이 가해행위억제를 위해 고액으로 책정됨으로써 가해자에게 실손해보다 훨씬 무거운 배상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1964년 제45차 독일 법조인대회에서는 위자료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이 때 위자료 확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 Stoll, Empfiehlt sich eine Neuregelung der Verpflichtung zum Geldersatz für Immateriellen Schaden?, Gutachten für den 45. Deutschen Juristentag, 1964.

15) 대판 1971.3.9, 70다2992 등.

16) 대판 1973.9.25, 73다1100.

억원의 위자료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그밖에도 살인자의 혐의가 방송되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명해 진 적이 있다.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정도로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다.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고 그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피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대판 1984.11.13, 84다카722).<sup>17)</sup>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판 1999.1.15, 98다38032).

1999년 부스터사건 판례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위자료를 증액시키지는 않았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가사 원고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7)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그 아들인 소외 망 김도중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의과대학 2학년생이었으므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개업의사 또는 고용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체 아래 위 의사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369,808,000원과 위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도합 399,808,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위 망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 및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하고 나서, 원고들이 예비적 주장으로 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일실이익청구를 포기하고 위 청구금액 전액을 망인의 위자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누구든지 승객이 될 수 있는 점,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앞서 본 일반의사로 고용되었을 때 전문의사로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월보수가 1,500,000원 정도인 점, 사고 후 피고측에서 장례비 4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측 과실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의사의 수입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위 예비적 주장에 의한 일실이익의 손해액 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재산상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의사의 수입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바로 위자료로서 위 예비적 주장에 의한 일실이익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위자료가 갖는 보완적 기능의 한계를 이탈하여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허용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어

하더라도 위자료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반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위자료액은 통상의 경우와 유사하게 2천만원이 인정되었을 뿐으로서 감소된 매출액을 위자료액의 결정에 고려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스터사건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부스터사건은 다른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액수와 비교할 때 평균적 수준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된다.<sup>18)</sup>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사실여부를 확인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해야 하는 사건(대판 1997.9.30, 97다24207)에서는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제재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금 3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고 판시하였다.

유명작가의 남편인 원고가 시진제공 및 사생활에 대한 기사화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여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건에서(서울지방법원 1998.8.19, 97가합96337) “초상권, 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잡지사 사장과 기자)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의 성별,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및 내용, <우먼센스>의 배포부수 및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각각 2천5백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는 사건에서(대판 1999.2.9, 98다31356) 대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원심은 이 기사들의 내용과 취재경위, 허위기사 부분이 기사 전체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사들의 게재·반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정도, 특히 문단에 등단한 후 대한민국 문학상 희곡부문 수상경력까지 있는 중견 희곡작가로서의 원고의 명성에 오명을 남긴 점,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과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3천만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18)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1998 : 제6집, 1999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자매지간을 모녀지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승락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해야 하는 사건(서울고등법원 1997.9.30 판결, 97나14240)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클라쎄>잡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회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의 사실확인보도 의지의 결여, 위 기사의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 경위와 발행부수,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손미자에게는 금 5천만원, 원고 손창기, 박소순에게는 각 금 2천5백만원씩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라 할 것이다”라고 비교적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유명가수 사망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은 원고가 범인으로 확정된 듯 오락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건에서(서울지방법원 1999.3.26, 98가합9329), “피고회사(서울방송)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내용의 중대성 및 원고들에게 미치는 영향, 방송후의 사회적 반응, 프로그램들의 성격, 제작 및 방송경위, 표현방법,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후의 원고 김예원에 대한 피고회사측의 태도, 원고 김예원의 연령 및 학력, 원고들의 가족관계, 방송으로 인한 현재

원고들의 정신적인 피해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 김예원에 대해서는 1억원, 그 부모인 원고 김하경, 고기점에 대해서는 각 근 1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매우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한 사건에서(서울지방법원 1999.6.23, 99가합14391), “일반 국민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할 검사, 기타 법조인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 들여 왜곡된 판단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 준 데 일조를 한 점, 나아가 이른바 ‘대전법조 비리사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와 동료검사들에게 국민들이 따갑고도 의혹어린 시선을 부당히 더하여 줌으로써 커다란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준 점, 피고공사가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한국방송공사 및 3인)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연대채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역시 매우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원고의 공천허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는 사건에서(서울지방법원 1999.9.1, 98가합107104) “피고(허기하)의 발언내용이 정치인인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임에도 아무런 사실확인절차도 밟

신용훼손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손해증명의 정도를 완화해 주어야

지 않은 점, 위 발언으로 결국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원고가 마치 공천헌금을 받은 듯한 인상을 심어 주게 된 점, 원고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고소취소로 석방되고도 위 명예훼손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아니 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그밖에 피고 연합(연합뉴스)에는 5백만원, 피고 서울방송·세계일보는 각 1천만원의 위자료지급을 명하였다.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는 사건에서(서울지방법원 1999.7., 90가합 51935) “피고들이 원고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한 점, 위 녹음테이프가 음성변조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위 프로그램의 시간대·시청률·방송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 V. 맺음말

1999년 부스터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보도와 그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손해증명상 확실성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매출액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곤란하다. 판례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의 산정에 ‘확실성의 원칙’을 계속 엄격히 고집한다면, 재산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배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결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위자료에 한정된다면, 첫째로 명예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가 불충분하게 배상됨으로써 손해배상법이 피해의 구제라는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둘째로 언론기관이 그 상업성의 요구에 따라 경솔한 보도를 자행하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어 인권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책임을 우려하여 보도에 위축을 받을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게 부과되어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그 책임이 지나치게 미미하여 명예훼손의 남발을 초래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신용훼손으로 매출액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원고에게 손해증명의 정도를 완화해 주어 피해를 구제해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 특 집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 공인·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

김민중

전북대 법대 교수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독일 괴팅겐대학 법학박사
-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 저술: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클릭! 법률·인터넷』 등 다수
- 현재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 I. 서 설

(1)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 기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특히 헌법상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일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는, 제한되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제한되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의 하나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들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고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7조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고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부담되며, 형법에 의한 형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헌법 제21조에 전혀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2)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혹은 각 개인의 알권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성이 강하다.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정하는 헌법상의 문제로서 명예훼손법리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원고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즉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의하여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공직자·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의 명예를 다른 사인보다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진술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인의 명예를 낮게 보호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판결에서 천명된 현실적 약의이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공직자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그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관한 기사나 보도는 언론기관이 허위를 고의로 유포하거

공직자나 공적 인물인 경우  
그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

나 혹은 진실에 관한 무모한 무시를 통하여 행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3)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명예 혹은 사적 영역의 범위가 그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한가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원고의 신분에 따른 명예훼손법리의 적용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원고의 지위에 따른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 관한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논의를 살펴보고, 외국에서 발전한 이론이 국내에 적용될 때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공직자, 공적 인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사인과 달리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현행법상의 명예훼손법리

### 1.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지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일부로서 명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sup>1)</sup> 특히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거대화된 매스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극히 크고, 과거보다도 명예보호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예보호는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명예훼손적 표현을 -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 일체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도 받아들이기 곤란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이든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 언론·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명예보호인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인가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편 어느 정도 명예를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 어떤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헌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가, 혹은 과연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가를 한마디로 단정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도 학설도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해석에 의하여 그 조정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국민의 알권리 및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보호

1) 자세한 설명은 김철수, 『헌법학개론』, p.617; 권영성, 『헌법학원론』, p.453; 허영, 『한국헌법론』, p.527 참고.

라는 두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편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문제는 헌법적인 평가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 2.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명예보호법리의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312조)이다. 특히 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30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의하여 형법 제310조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사

실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고 본다.<sup>3)</sup>

## 3. 민사상의 명예훼손범리

개인의 명예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범으로는 형법 이외에 민법이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가 되며, 의심할 여지없이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민사상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sup>4)</sup> 다만 형법에서와 같은 특별규정이 민법에는 없으나, 판례나 통설은 모든 명예훼손적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2) 판례에 따르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고).

3) 대법원 2000.2.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4)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40077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 판결.

공인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강하고,  
언론이 그 행동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고 본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성립시키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sup>5)</sup>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sup>6)</sup>

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행위·인격에 대한 윤리적 가치에 한하지 않고, 윤리적 인격으로서의 명예 이외에 법률적·예술적·학문적 명예는 물론,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명예, 예컨대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소질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도, 또한 국가·사회에서 일정한 지위·신분·직업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도 명예가 성립할 수 있다.

보통 명예는 내부적 명예와 외부적 명예로 구분하지만, 외부적 명예는 사람마다 그 내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가와 같은 공적 인물이나 예술인 혹은 프로선수와 같은 공인(유명인)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특수한 지위·업적·능력 등을 가진 자로서의 명예, 즉 특수한 우월적 명예를 가지고, 물론 그 명예도 헌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그러나 유명인과 같은 공인은 공인이라고 하는 사정에 의하여 일반인과 비교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이 강하고, 언론이 그 행동이나 사생활 등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아 공인의 명예훼손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또한 정치가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보도·평론·비판이나 기타 유명인의 학문·예술 등의 업적에 관한 비판이나 평론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흔하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크다.

### III. 원고의 지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문제

#### 1. 서 설

명예훼손에서의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

#### 2.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5)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16203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 판결.

6)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57 판결.

## 1) 명예훼손에 관한 '뉴욕타임즈' 판결의 의미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자유와 명예 보호의 비교형량에서 언론자유를 우위에 두는 선택을 한 판례가 '뉴욕타임즈' 판결이다.<sup>7)</sup> '뉴욕타임즈' 판결은 공적 논점에 관한 논의는 제약 없이, 활발하게 널리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만일 명예훼손책임에 엄격 책임을 적용하여 신문기사의 진실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언론사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체 검열(self-censorship)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위축이 야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주관적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뉴욕타임즈' 판결에 의하면 공직자가 그 직무행위에 관한 명예훼손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는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허위인가 아닌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보도를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뉴욕타임즈' 판결은 명예훼손적 표현에도 수정헌법 제1조의 헌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공적 논점에 관한 논의의 자유를 보장한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 최고법원은 '뉴욕타임즈' 판결을 계기로 하여 그 법리의 적용범위를 공직자의 직무행위의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으로부터 공적 인물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 확대하고, 또한 근래는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도

헌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판례] 뉴욕타임즈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사실관계] 알라배마주의 수도 몽고메리에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목사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뉴욕 타임즈는 그에 가담한 흑인에 대해 자행된 테러위협과 경찰의 가혹한 진압방법을 비난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몽고메리시의 경찰국장(선거직)이 신문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였다. 제1심에서는 광고내용의 일부에 허위가 있음이 밝혀져 징벌적 손해까지 포함하여 500,000달러의 손해배상이 인용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고위공무원이 보도행위의 피해자인 때에는 원고에 의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이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고 확실적인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명예훼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현실적 악의'란 허위에 대한 고의 혹은 허위 여부에 관한 무모한 경시(with 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of its falsity)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 악의는 표현이 허위라는 사실을 표현자가 알았거나, 혹은 허위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현실적 악의는 실질적으로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의미는 아니나 단순한 부주의가

7) 뉴욕 타임즈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석호, "명예훼손 책임을 둘러싼 쟁점의 분석", 『현대민법법리의 발전』(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1129 이하 참조.

뉴욕타임즈 판결은 명예훼손적 표현에도  
수정헌법 제1조의 헌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공적 논점에 관한 논의의 자유를 보장

있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sup>8)</sup>

예를 들어 신문사가 기사를 제대로 검토하  
였더라면 오보를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 악의라고 판단할  
수 없고,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그 공표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하여 실  
제로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결론  
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의, 즉 허위임을 안 경우란 대표적으로 기사  
의 조작을 가리키며, 표현내용의 진위를 무모  
하게 무시한 경우에서 '무모한(reckless)' 이라  
는 표현의 의미는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 즉 객관적  
중과실(objective gross negligence)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언론사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고도로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를 가리킨다고 본다.<sup>9)</sup>

2) 미국에서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발전

'뉴욕타임즈' 판결을 통하여 확립된 현실적  
악의이론은 그 후 공직자(public officials)로부  
터 공적 인물 혹은 사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Rosenbloom v. Metromedia, Inc.사건에서  
는 New York Times Rule의 적용범위를 원고  
가 공인인가 사인인가 하는 신분에 따른  
(status based standard) 구분을 배격하고, 문  
제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가 아닌가 하는 내  
용을 기준으로(content based standard)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공인으로부터 그 적

용범위를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 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판례] 로젠브롬사건(Rosenbloom v. Metro-  
media, Inc., 403 U.S.29(1971))

[사실관계] 방송사(피고)는 잡지판매상(원고)을  
음란물을 판매하다가 체포당했다고 보도하였다. 그  
러나 방송사의 보도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어 방송사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다.

[판결요지] 문제된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 에  
관한 것인 이상, 이에 관한 모든 토론의 자유가 보  
호되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와  
관계없이 New York Times Rule이 적용되어 현실  
적 악의에 대한 입증에 있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된  
다.

New York Times Rule의 적용범위를 공적  
관심사에까지 확대한 로젠브롬판결에 대하여  
는 모든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언론의 면책을  
인정하면 - 모든 인간사가 어찌면 모두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결과 -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보호에는 충실하지만 개인의 명예보호  
에 너무나 불충실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후 수정  
을 받게 되었다. 거츠사건을 통하여 단순한 공  
적 관심사이거나 뉴스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  
정만에 의하여 New York Times Rule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인인가 사인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 적용범위의 한계선을 찾아야 한  
다고 다시 천명되었다.

8)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p.106

9) 방석호, 앞의 논문, p.1130

[미국판례] 거츠사건(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사실관계] 시카고의 유명한 인권변호사인 거츠(Elmer Gertz)는 경찰관에 의하여 살해당한 한 흑인청년의 유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보수주의적 견해를 대변하던 피고 Robert Welch, Inc.는 잡지(American Opinion)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거츠는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고 그를 미국정부를 폭력으로 점거하는 것을 옹호하는 단체의 간부이며 경찰불신화운동조직의 일원이라고 단정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잡지사의 주장은 모두가 오류였으며, 이에 대하여 거츠는 명예훼손으로 잡지사를 제소하였다.

[판결요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private person)이 원고로서 제소한 경우에는 New York Times Rule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까지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는 비록 사인이라 하더라도 문제된 모든 종류의 보도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공적 관심사인 여부를 불문하고 언론기관(피고)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에게 단순한 과실(fault)이 있음이 입증되더라도 New York Times Rule에서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단지 실제의 손해(actual damages)만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손해발생을 추정받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 3) 국내에서의 논의

#### (1) 학설상의 논의

국내에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공적 인물의 이론'이라고 한다.<sup>10)</sup> 공적 인물의 이론에 의하면 공적 인물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그 표현을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많고, 공적 인물의 사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이미 공공이익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본다.<sup>11)</sup> 공적 인물이란 그 재능·명성·생활양식으로 인하여 혹은 일반인이 그 행위·인격에 관심을 가지는 직업으로 인하여 공적 인사가 된 명사를 가리키며, 공적 인물에는 정치인·운동선수·연예인과 같이 자의로 명사가 된 자뿐만 아니라, 범인·피의자와 그 가족과 같이 타의로 유명인이 된 자도 포함된다.<sup>12)</sup>

#### (2) 판례상의 논의

판례상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에서 공직자라고 하는 이유로 사인과 달리 취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신문의 경우 그 광범위한 전파성과 기사내용에 대한 일반독자의 높은 신뢰성에 비례하여 그릇된 오보로 피해자가 입게 될 손해도 역시 지대하고 그 회복도 또한 극히 어렵다고 보고, 설혹 그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거나 이를 게재한 의도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10) 대표적으로 권영성, 『헌법학원론』, p.409

11) 같은 취지로 허영, 『한국헌법론』, p.363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p.409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문제된 사례에서 공직자라는 이유로  
사인과 달리 취급한 경우는 많지 않아

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본다.<sup>13)</sup>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대만히 하든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내지 품위를 손상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력직 공무원의 법규위반이라는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앞서 그 원고를 작성하고, 게재될 체제와 정도를 결정, 편집한 후 공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별히 신중하여야 하며, 그 표현에서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sup>14)</sup>고 하여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보도에서의 언론기관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판례] 공무원의 개인적 비위사실에 대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사실관계] A신문사(피고)의 소속기자인 B는 동료기자 등을 통하여 면사무소 부면장인 X(원고)의 비위사실을 알린 면사무소 과장 Y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제보를 받고 이어 X의 직속상관인 면장 Z를 다시 만나 그에게서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Y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경남 김해군 주촌면 간부직원인 최모 씨가 그 소유 감나무 밑에 있는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 하면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과 사슴축사를 지어 사용함에 있어 역사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판결요지]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다만 최근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여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13) 부산고등법원 1997.5.22. 선고 96나11761 판결.

14) 역시 부산고등법원 1997.5.22. 선고 96나11761 판결 참고.

끌고 있다.<sup>15)</sup> 물론 언론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헌법상의 요청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제재로 인하여 공공성·사회성이 강한 사실에 관한 보도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허위를 진실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 보도·게재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sup>16)</sup>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에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보도하거나 게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형벌로부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사실관계]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A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 도의원인 B, C와 남북

강원도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다.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을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A와 B·C의 명의로 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였다. 이 편지는 강원도 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간의 자매결연, 의원세미나개최, 특산물교환, 문화체육행사와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야영대회 등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 앞머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중간부분에는 A가 1994. 11.에 김정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A가 역대 군사정권에 저항한 반독재투쟁경력을 소개하고 끝에는 1995. 4.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서 교류방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원과 수사기관은 이 편지의 내용과 전달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한편, X일보는 1995. 4. 9. 신문에서 “북 접촉 도의원 3명 내사”라는 제목과 “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한 이래 1995. 9. 6.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제목 또는 본문에 사용하면서 A와 B·C가 김정일에게 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독자투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A는 X일보의 보도가

15)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16)역시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6.8.23. 선고 94도3191 판결 참고.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현재 결정

비방목적에 의한 허위내용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2. 검찰청에 X일보사 발행인 겸 편집인 갑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1997. 2. 2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A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8. 21. 갑 등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

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4)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 따른 문제

(1)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공직자를 사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직자를 사인과 달리 취급하여 명예훼손을 용이하게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는 (i) 공직자의 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그 공개 자체가 공공이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공공이익설), (ii) 공직자는 자의로 자신을 공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결과 '밀착된 국민의 감시(closer public scrutiny)'에 의한 증가된 명예훼손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는 견해(위험인수론), (iii) 공직자는 보통 허위진술에 대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access to media)의 기회가 많으므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사인보다 쉽게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자기방어용이설)가 있다.<sup>17)</sup>

(2) 명예훼손법리를 사인과 달리 적용하는 공직자란 선거직 고위공무원만을 의미하는가? 공직자란 일반적으로는 선거직 고위공무원을 의미하지만, 역시 비선거직 공무원이나 공직출마후보자<sup>18)</sup>에 대하여도 명예훼손법리의 적

17)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p287; 이홍권,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외국사법연수논집(7)』, p.254

18) 판례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유죄확정판결의 전과사실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법원의 최종적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도977 판결).

용에서 사인과 달리 취급된다고 본다.<sup>19)</sup> 다만 교사 등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사인과 다른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곤란하다고 본다.<sup>20)</sup>

(3) 공직자에 대한 오보나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견해는 단지 그 공직자의 공무행위에 관련되는 표현행위에 국한되는가? 명예훼손법리를 공직자에 대하여 사인과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는 기사 등 표현행위에서 그 대상자가 공직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그 공직자의 공무행위에 관한 진술인 경우는 물론, 공무행위를 벗어난 때에도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그 직의 적격성(official's fitness for office) 여부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 3.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1) 일반적인 공적 인물

(1) 공직자는 아니나 그 업적·명성·생활양식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그 인격·지식·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직업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자를 일반적

인 공적 인물(pervasive public figures)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목적과 상황에서 그 명성이나 악명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면 일반적인 공적 인물이 되고, 지극히 유명한 사회저명인사나 정치·경제의 활동가, 전국적 인기를 받는 연예인·운동선수, 백만장자, 인기프로그램의 앵커, 대기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sup>21)</sup>

(2) 일반적인 공적 인물에 관하여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에 현실적 악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만 명예훼손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미국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공적 인물에 관하여도 New York Times Rule를 적용하여 언론기관의 현실적 악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여야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일반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고,<sup>22)</sup> 될 수 있는 한 엄격히 해석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서 그 논평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

19) 미국판례는 연방이나 주의 선거직 공무원,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 법관·검사, 경찰·군의 고위간부, 중앙정부와 지방의 정책결정위원, 교육계의 고위행정관, 연방이나 주의 중요정책결정기관의 집행관리를 공직자로 본다.

20) 미국판례를 보면 공립학교 레슬링코치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경우(Milkovich v. New-Herald, 15 Ohio St., 3d 292(1984))도 있고, 초등학교 레슬링코치는 공무원이므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경우(Johnston v. Corinthian TV Corp., 583 P 2d 1101 (OkL 1978))도 있다.

21) 박용상, 앞의 책, p.288; 표성수, 앞의 책, p.100; 염규호,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언론중재』, 2000년 봄호, p.66

22) 공적인 인물의 판단의 곤란에 관하여는 염규호, 앞의 논문, p.63 참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여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본다.<sup>23)</sup> 판례는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현실적 악의이론을 부정하고 있다.<sup>24)</sup> 또한 판례에 의하면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는 아니한다.<sup>25)</sup>

[판례] TV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서울지법 1997.9.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사실관계]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되는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말을 앞두고 증가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고, 음주운전의 단속현장을 취재하여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모방송사 보도국 차장 A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A는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

[판례] 유명연예인에 관한 허위기사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1998.5.8. 선고 96다36395 판결)

[사실관계] A신문은 사회면에 증견모델인 B모양 등이 음식점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C를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B가 기사내용과 같이 C를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C를 접대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B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3) 서울지법 1997.10.10. 선고 97가합2923 판결.

24)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25) 대법원 1998.5.8. 선고 97다34563 판결. 이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 p.39 이하 참조.

[판결요지]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 2) 제한적인 공적 인물

(1) 일정한 공적 논점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그 제한된 범위의 논점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공적 인물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인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s)이라고 한다. 예컨대 공개적인 직업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활동하여 일정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연예인·체육인·베스트셀러의 저자·종교지도자·기자<sup>26)</sup> 등이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속하고, 기업가·형사피의자의 변호사나 유명인사의 가족, 널리 알려진 이혼사건의 당사자가 된 부인, 범죄의 피해자, 민사소송의 피고, 형사피의자는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sup>27)</sup>

(2)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공적 인물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사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누가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며, 생각건대 (i) 스스로 공적 논쟁에 참여하는지 여부, (ii) 논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하는지 여부, (iii) 언론에의 접근이 용이하여 반론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는지 여부, (iv) 문제된 발언내용이 공적 사항인지 여부, (v) 논쟁에서 피해자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한적 공적 인물에는 자발적으로 특별한 논쟁에 참여·개입하여 그 공적 논점과의 관계에서만 한정적으로 공적 인물로 되는 자발적 제한적인 공적 인물과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적 논점에 참여·개입하는 비자발적 제한적인 공적 인물이 있으나,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제한적인 공적 인물은 공적인 논쟁의 중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제한적인 공적 인물만이 해당한다.

## 4.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는 명예훼손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예외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26) 예컨대 하급심판결(서울지법 1996.11.22. 93가합11471)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여성기자클럽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김일성과 단독면담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원고를 “기자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경우가 있다.

27) 자세한 설명은 박용상, 앞의 책, p.291-292; 표성수, 앞의 책, pp.103-104; 박선영, 앞의 논문, p.46. 참조.

원고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인 경우 언론기관에  
기사조작과 같은 고의가 있거나 진위에 대한 무모한 경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여야 하며,<sup>28)</sup> 피해자가 사인인 때에는 언론기관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즉 단순한 과실(negligence)만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인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수반하는 허위보도가 허용될 수 있고, 단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그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인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경우에도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인인 경우와 달리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sup>29)</sup>

물론 사인에 대한 기사내용이 공적 관심사인 경우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킴으로써 언론의 보호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된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가 아닌가는 그 구별기준이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비록 사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어느 정도는 사회적 중요성이 있거나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인에 대한 발언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이유로 언론기관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대중매체의 범죄사건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는 않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적 인물이 아닌 범인의 사적 신상을 발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다.<sup>30)</sup>

[판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 3309 판결)

[사실관계] A는 크리스찬저널지에 X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단의 사술에서 주님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럽여행 중 구원파 교주 X를 대동하던 중 그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자신은 사탄적인 존재로 몰리게 되어 4, 5개월간 공갈,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나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보도하게 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X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피소되었다.

[판결요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판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사실에 관

28)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 판결.

29)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30) 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57 판결.

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57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는 사회면에 원고 A가 남편 B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A가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부폭력배 X 등에게 남편을 혼내 주고 위자료조로 5억원을 받아 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편의 친구인 Y를 불러내어 남편의 소재지를 대라며 감금·폭행하였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A는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원고 A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A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IV. 결 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의사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여론형성을 촉진하여 사회공동체를 동화·통합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사실에 관한 일부의 오보가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일부의 허위사실에 대한 보도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서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을 지운다면 실제로 진실한 내용의 비판적 보도마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에 대하여 형사법적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i)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고, (ii) 형법상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하고, (iii)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iv)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고, (v)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된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민사상의 명예훼손법리도 공직자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에 관하여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서 혹은 미국을 위시한 외국에서의 진보적 발전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의 원고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인 때에는 언론기관에 기사조작과 같은 고의가 있거나, 진위에 대한 무모한 경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특 집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 언론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판결을 중심으로 -

### 표 성 수

서울지검 형사제1부장검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U. C. Berkeley visiting scholar, 시범연수원 교수
- 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검사
- 저서 : 『언론과 명예훼손』

### I. 서 언

출저 '언론과 명예훼손'을 발간한 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은 상당한 변모를 보여 왔다. 필자는 이 책에서 언론이 상당한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명예나 인격권과의 조화를 위한 토대가 아직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향후 시민들의 인격권의 보호 요구가 강하여질 것으로 예측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준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1)</sup> 근간의 변화는 이러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진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바 본래의 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들의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사건이 증가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민·형사제소를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건수가 몰라보게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sup>2)</sup> 나아가 제소자의 신분, 제소대상이 다양해졌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보여진다. 과거와는 달리 정치인, 공직자, 기업경영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소에 나서고 있으며<sup>3)</sup> 제소의 대상도 사실기사위주에서 신문이나 방송의 논평, 심지어 만평까지로 확대되고 있다.<sup>4)</sup>

1) 출저,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p.461 이하.

2) 중재신청건수는 1999년 641건으로, 1990년 159건에 비하여 4배로 증가하였다. 『언론중재』, 2000, 봄, p.105, 도표1 참조

3) 근간의 제소자 중 특이한 경우로는 청와대간부, 장관, 정보기관의 장 등이 있고 심지어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군사법원의 판사들이 제소한 경우가 있으며 언론사간부가 다른 언론사를 제소한 경우도 있다. 중앙일보 1999. 11. 6.자, 법률신문 1999. 11. 4.자, 동아일보 1999. 6. 24.자 기사 등 참조

4) 신문사설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어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문만평에 대하여 제소된 사례들도 있다. 문화일보 2000. 2. 2.자, 중앙일보 2000. 4. 8.자 기사 참조

다음 지적할 것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 등 관계기관의 변화이다. 종래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깊은 문제 의식 없이 사안에 따라 다소 기준 없는 판결을 하여 왔으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한 깊은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는 사려 깊은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sup>5)</sup>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전담부 설치,<sup>6)</sup> 손해배상액의 현실화<sup>7)</sup> 등은 법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징표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언론사의 접근방식의 전환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사들이 진작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 기사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사후불만처리제도를 확립하고 명예훼손소송에 대처하는 공동 기구를 설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온데 비하면 뒤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언론사들도 근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기사를 검토하게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8)</sup>

우리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겪은 과정을 단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모색은 다소 혼

란스럽고 정리되지 아니하였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의 문제를 우리 환경에 맞게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시도로 생각된다.

## II. 상당성의 면책론 일반

이른바 상당성의 면책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근래 등장한 또 하나의 면책론으로 이는 표현내용의 진실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종래의 명예훼손법은 나라를 불문하고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표현행위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케 하는데 거의 일치하여 있었다. 그러나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모든 표현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운다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크게 제한될 것이고 이는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의견형성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법제도가 다르나 헌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처음 시도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 New York

5) 예컨대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헌재판례집』 11-1, p.76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언론중재』, 1999. 여름, p.147. 등은 깊은 논리적 검토를 거쳐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과의 조화를 다룬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6) 1997년부터 서울지방법원은 민사 25부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 전담부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 3.부터 각 지방검찰청에도 명예훼손 전담 부서가 지정되었다.

7) 자세한 통계는 없으나 1999. 6. 23.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사건(1억원), 2000. 2. 2.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사건(1억8천만원), 앵커우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1억원) 등으로 손해배상액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한겨레신문 1999. 6. 24. 자, 문화일보 2000. 2. 3. 자 기사 참조.

8) 예컨대 조선일보나 KBS 등 일부언론사에서 시행중인 변호사에 의한 사전기사심사제가 이에 해당한다

상당성의 면책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근래 등장한 또 하나의 면책으로  
표현내용의 진실성과 관련

Times사건<sup>9)</sup>에서였다. 미국에서도 종래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위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새로운 책임원칙을 창조하여,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에 대하여는 설령 표현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적인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장을 열어 놓았으며 이는 명예훼손법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우리와 같은 법제를 가진 일본에서도 New York Times사건의 2년 뒤인 1966년 표현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등장하였는 바 이것이 상당성의 면책이라는 새로운 면책론을 탄생시킨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sup>10)</sup>이었다. 종전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을 위하여 표현내용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필요하였으나 이 판결로 설령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논리는 1969년 '夕刊和歌山' 사건<sup>11)</sup>에서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아니하였던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언론과 인격권을 둘러싼 사건

이 증가하고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법원은 헌법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판결들을 내놓게 되었는데 최초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1988년의 손해배상사건의 판결<sup>12)</sup>이었다. 이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1960년대의 판결과 유사한 논리에 입각하여 표현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새로운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표현행위자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이었으나 그 후 형사사건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었으며<sup>13)</sup> 지금까지 판결에서 면책론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을 둘러싸고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여 왔던 헌법재판소도 1999년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어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된다...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실시함으로써 종래의 상당성의 면책론을 재확인하였고<sup>14)</sup> 이 면책론은 이제 우

9)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10) 最高判 1966. 6. 23. 民集 20. 5. 1118

11) 最高判 1969. 6. 25. 刑集 23. 7. 975

1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공보 1988. 1392

1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공보 1993. 2188

14) 위 5)의 헌법재판소 97헌마265결정

리 명예훼손법상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III. 진실오신(誤信)의 상당성과 관련한 판결의 검토

#### 1.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표현행위자가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되나 어떤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언론의 보호와 인격권의 보호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수십년의 운영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고 대략적인 판결의 경향도 확립되어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당성의 원칙이 선언된 지 10여 년에 불과하고 사건 수도 많지 않아 뚜렷한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흐름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 일본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상당성의 인정과 관련한 몇 가지 준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논리는 같으므로 함께 정리한다.

#### 1)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

대법원은 몇 가지 판결을 통하여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표현을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곧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sup>15)</sup> 상당성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위 사정의 종합판단이라는 준칙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뒤를 이은 여러 건의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16)</sup>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고려할 사정으로는 표현된 내용의 성격, 정보원의 확실성, 본인 등 진실확인용의 용이성, 피해의 정도, 표현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할 뿐 표현에 관한 다른 요소들도 고려대상임은 물론이다.

1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언론중재』, 1997. 겨울, p.139.

1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언론중재』, 1998. 여름, p.1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공보 1998. 1572.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언론중재』, 1998. 가을, p.15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언론중재』, 1999. 봄, p.158 등. 다만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은 그 동안의 상당성의 면책에 관한 논리와 다소 다른 논리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종래의 판결은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표현행위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오신하였고 그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책으로 인정하는 소위 상당성의 면책이론을 유지하여 온 데 대하여 이 판결은 오신과 상당성이라는 논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직접 위법성면책을 겨냥하고 있다.

대법원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에 근거했는가를 상당성의 존부 판단 기준으로 제시

이러한 대법원의 경향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반의 요소를 고려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고려의 중점을 달리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적절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나 사실의 공공성, 공익을 위한 목적 등 다른 면책요소의 판정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 특히 표현방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므로<sup>17)</sup> 중첩적으로 표현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며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2)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논지를 보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sup>18)</sup> 이전의 판결에서는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요한다거나 하여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고도의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sup>19)</sup> 이러한 근거보다 완화된 느낌을 주는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라는 표현이 판결에 등장한 후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이어졌으며 하급심의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한 것이 적지 않다.<sup>20)</sup>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상당성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자료의 객관성과 함께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행위자의 진실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표현행위자의 특이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그 경우에 보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보편적인 언론종사자라면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상당성 유무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sup>21)</sup>

17) 위 13)의 대법원 92도316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공보 1996.상 1627

18) 위 16)의 대법원 98다24624 판결

19) 이러한 논리를 편 판결은 위 13)의 대법원 92도3160 판결이 있고 한편 위 11)의 1969. 6. 25.의 일본최고재판소판결에서 확실한 자료,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고 난 후 最高判 1976. 3. 23. 刑集 30. 2. 229. 등의 판례에서도 계속 인용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자세한 것은 위 1)의 줄져, pp. 246-247.

20) 예컨대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 고지 97카합2923 결정. 하집 1997-2. 114),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서울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 하집 1996-2. 134),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 (서울지방법원 1995. 12. 22. 선고 94가합17753 판결. 『언론중재』, 1997 겨울, p.146) 등

21) 일본의 하급심 판례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정도의 자료라고 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東京地判 1972. 5. 15. 判夕 279. 292)과 통상인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정도의 정보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東京地判 1995. 3. 14. 判夕 872. 298)가 있다.

또 한가지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당한 이유는 그러한 표현행위의 시점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표현의 결과적인 정당성을 가리는 문제라기보다는 행위시의 표현의 정당성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하급심판결로 “...언론보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기사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라고 하여 기사의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상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있고,<sup>22)</sup> 일본의 하급심판례에도 진실성증명의 판단시점은 당해 사실의 게재시이며 그 시점에 존재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실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있다.<sup>23)</sup>

### 3)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상당한 이유의 면책에 관한 입증책임 등의 문제를 간략하게 본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보

편적으로 활용되는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면책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 및 입증의 방법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다. 자세한 이론은 논하지 않으나 결론적으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는 피고나 피고인이 면책사유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며<sup>24)</sup> 일본의 판결도 대개 이와 같다.<sup>25)</sup>

진실성의 오신에 관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하여도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피고, 피고인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증명의 형식과 정도에 관하여 특히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근래 대법원은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형사적인 면책이 문제된 경우에도

22)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98592 판결

23) 東京高判 1995. 11. 27. 判夕 918. 166, 東京高判 1996. 11. 29. 時報 1587. 65 등. 한편 이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나 最高判 1997. 5. 27. 民集 51. 5. 2024에서는 신문의 발행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손해가 생긴 이후에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명예훼손의 위법성 또는 고의, 과실의 판단에 참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

2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공보 1996하 3491에서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라고 하고 있고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이 있다. 한편 위 16)의 대법원 97다34563 판결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고 이러한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책임과 입증책임의 전환은 우리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

25) 일본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결의 경향은 출처, pp.237-242, 267, 274.

26) 위 24)의 대법원 95도1473 판결

상당한 이유의 면책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측에 있어

증명의 형식과 정도를 완화하였다.<sup>26)</sup> 민사사건에서와의 균형을 생각하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의 판결을 보면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실성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며<sup>27)</sup> 나아가 상당성의 입증에 관하여도 증명의 방법 및 정도가 소위 자유로운 증명이나 증거의 우월로는 부족하다고 한 하급심판결도 있다.<sup>28)</sup>

2. 판례에 나타난 언론보도에서의  
상당한 이유

명예훼손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보도를 다른 경우와 달리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의 업무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널리 인정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sup>29)</sup>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보도라고 하여 명예훼손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0)</sup>

상당성의 면책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를 특별히 취급할 것인가를 직접 다룬 판결은 없으나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보도기관의 성격, 보도의 내용 등은 중요

한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것이므로 그 정도에서 언론의 보도는 다른 표현행위와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오신의 상당성이 문제된 경우에 법원이 내린 결론을 구체적인 사정을 비교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법원은 표현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고 각 사건마다에 특유한 다양한 사정들을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주요한 사정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 표현내용과 명예훼손의 정도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도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어떤 정도로 훼손하는가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취재, 자료의 확보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태도를 달리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가 주로 다루어진 것은 언론이 타인의 범죄를 보도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27) 東京地判 1974. 11. 5. 時報 785, 116

28) 東京高判 1984. 7. 18. 高裁刑集 37. 2. 360

29) 황산덕, 『형법각론』, 1985, pp.231-232, 등.

3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939 판결. 공보 1994. 194 등. 자세한 것은 출처, pp.367-368. 한편 언론기관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같은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고도의 확실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여러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언론을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하지도 아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위 20)의 대법원 94가합17753 판결,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 등.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라고 실시함으로써<sup>31)</sup> 이러한 경우 언론의 충분한 취재와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판결이나 일본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인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sup>32)</sup> 또한 표현내용이 대통령후보자나 저명인사의 사상성 또는 과거전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경우 사회적 평가의 손상이 크므로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고<sup>33)</sup> 반

면 일본의 하급심 판결로 당해 기사가 정치에 관한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를 배려하여야 하므로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로 족하다고 그 정도를 완화한 것도 있다.<sup>34)</sup>

## 2) 보도매체와 신속성의 요구

판례에 의하면 매체가 신속성을 중요시하는 일간지나 방송의 뉴스인지 아니면 주간지, 월간지와 같이 신속성이 덜 한 경우인지에 따라서 취재의 충실성과 자료의 확실성에 대한 요구도 달라진다고 한다. 일간지의 경우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고<sup>35)</sup> 월간지에 있어서는 더욱 충실한 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는 판결도 있다.<sup>36)</sup> 그러나 이와 같은 신속성의 배

31) 위 16)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

32) 특히 범죄보도에 있어서 “... 원고 000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신분이고 위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들은 원고를 살인범으로 몰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었으므로 피고회사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신중하면서 일체의 편견이 개입될 없이 공정하게 방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타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취재와 자료의 충분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는 취지의 하급심판결이 있고(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3. 26. 선고 98가합9329 판결 언론중재 99, 여름 159), 일본의 하급심판결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범인의 범행을 단정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냄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 따른 적정 엄격한 절차 밑에서 중요한 증거조사가 마쳐지고 또한 그 유죄판결이 사후에 취소될 가능성이 지극히 작은 상황에 도달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한 정도의 자료가 필요함을 실시한 판결도 있다(위 23)의 東京高判 1996. 11. 29.). 한편 같은 하급심판결(위 21)의 東京地判 1995. 3. 14.)에서는 “범죄행위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사실의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인에 있어서 당해 범죄행위가 행하여졌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도 있다.

33)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7카합2923 결정, 서울지방법원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 『법률신문』 2856호. 또한 일본의 판례로 언론이 변호사의 부정한 행위를 보도하는 경우 그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의 조사에 관하여 특히 신중할 것이 요청된다고 판시한 것도 있다. 東京高判 1989. 10. 17. 時報 1327. 34

34) 東京高判 1978. 9. 28. 時報 915. 62

35)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 위 24)의 대법원 94다33828 판결. 같은 취지를 표명한 하급심판결로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7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나19309 판결. 『언론중재』, 1997 가을, p.149.

36)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98592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2. 4 선고 97가합90841 판결. 『언론중재』, 1999 봄, p.167. 또한 일본 하급심의 판결로 골프장건설에 반대하는 미니지의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중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다(大阪高判 1995. 9. 5. 時報 1553. 95).

판례에 의하면 매체의 신속성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취재의 충실성과 자료의  
확실성에 대한 요구도 달라진다

려는 일간지나 방송의 뉴스와 같이 신속을 필요로 하는 기사에 있어서 자료의 충분성을 완화하는 것보다 월간지와 같이 신속성이 없는 매체에 있어서 자료의 불충분성을 탓하는 방편으로 주로 활용되었다.<sup>37)</sup> 한편 일간지의 경우에도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sup>38)</sup> 같은 매체에 있어서도 보도의 내용에 따라 신속성의 요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자료의 충분성도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취재원의 신빙성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된 취재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자료, 근거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거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한다. 취재원이 고도로 신빙성을 가진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보도를 하여도 언론사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피해당사자 등에 대한 확인취재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바 논리전개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경우,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경우, 다른 언론의 보도를 활용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다.

(1) 공공기관의 공식발표의 보도

정부기관 특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신(誤信)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문제로는 공공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좋은가. 어떤 경우에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고 볼 것인가. 공공기관의 발표를 변경, 보도한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의 점에 있다. 이를 차례로 본다.

가. 공공기관의 발표에 대한 확인취재의 필요 특히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였다면 보편적으로 진실의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더러 우리 판결 중에는 정부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정

37) 일간지에 있어서 신속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불명확한 기사를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 언론의 신속성을 감안할 때 언론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말을 들으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보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위 16)의 대법원 97다34563 판결)

38) 위 15)의 대법원 97다24207 판결(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일간지의 보도), 위 16)의 대법원 96다36395 판결(연예인의 접대행위에 대한 일간지의 보도), 한편 살인사건과 관련한 방송보도에 있어서도 이를 오락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것은 그다지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방송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위 32)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8가합9329 판결), 범죄보도에 관한 일본의 판결로 "본건 기사게재의 전일에 체포보도가 되었다고 범죄의 착상원(着想源)에 관한 보도에 반드시 긴급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라고 하여 긴급성을 이유로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한 불확실한 보도가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있다(東京高判 1992. 3. 30. 시보 1417. 67).

도 고려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sup>39)</sup> 결론 도출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로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정부기관의 발표를 의심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 나.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의 범위

공공기관의 발표에는 기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의 배포를 통하여 취급 중인 업무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와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사실에 대한 진위확인을 요청받아 이를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전자는 물론 후자의 경우도 해당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에 해당한다고 하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sup>41)</sup>

실제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 것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에 관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경우 이를 공식발표라 볼 수 있을 것인가? 대체적으로 법원은 공공기관의 내부적인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아니면 공식적인 발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담당자, 감식담당자, 법원의 담당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그들로부터 얻은 자료만으로 확인취재 없이 보도에 이른 경우에는 대개 면책이 부정되고 더 이상의 확인취재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sup>42)</sup>

- 39) 정보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에 있어서 “... 피고신문이 발행하는 신문은 일간지로서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취재 또한 제한되었던 관계로 정부기관의 발표나 구속 영장 외에는 달리 사실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라고 하면서 언론사의 면책을 인정한 판례(위 35)의 서울고등법원 96나19039 판결)와 검찰의 발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7753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다.
- 40) 일본의 판결로, 경찰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언론이 범죄용의사실에 관하여 보도를 한 경우, 원고는 보도기관은 그 발표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특히 범죄의 실명보도에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고도의 진실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특히 면책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으며(東京高判 1987. 3. 31. 時報 1239, 45) 역시 하급심판결로 “...그것이 수사당국의 정식발표에 기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하에 있어서 그 발표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특단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식발표를 믿어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를 인정한다는 판결도 있다(위 38)의 東京高判 1992. 3. 30.)
- 41)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수사검사가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피의사실을 요약, 정리한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사내용을 발표한 경우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을 취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판시),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7753 판결(수사중인 사실을 기자들이 지독하여 확인을 요청한 바 검찰관계자가 공식으로 확인하여 준 경우에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
- 42) 공식발표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경찰서의 형사계장이 굶직한 사건을 하였다면서 기자들에게 수사내용과 자료를 공개하여 보도된 경우 1심에서는 공공기관의 발표로 보고 언론사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였으며(서울지방법원 93가합54908 판결), 2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공식발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5나24946 판결), 대법원은 이 점에 관한 특별한 판단 없이 다른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17257 판결, 언론중재 98. 가을 162). 기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따라 보도를 하였으나 확

공공기관의 내부적인 과정을 거친 입장표명이 아니면  
공식적인 발표로 볼 수 없어 확인취재가 필요

다. 발표를 변경하여 보도한 경우와 상당성의 면책

공공기관의 발표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 발표내용을 변경하거나 각색하여 보도하면 대개 상당한 이유의 면책이 부정된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사실을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인 바...”라고 실시하고 있다.<sup>43)</sup> 이는 언론기관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으로 공식발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대개 이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보도기관에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발표내용에 덧칠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이것은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 제목과 내용을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변경, 추가함으로써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 나라나 일본에 있어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sup>44)</sup>

인취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를 보면, 위 16)의 대법원 96다36395 판결(보도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검사로부터 전하여 들은 내용과 수사기록 중 일부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으나 본인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16)의 대법원 98다24624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이름조차 알 수 없는 통일원관계자나 경찰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사화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1. 9. 25. 선고 91나27320 판결. 『언론중재』, 41, 166(경찰청 감식계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건네 받은 비공개자료, 기타 사건현장에 있었던 사람 등을 취재하여 보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판결로 형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단순히 수사관의 설명만에 의존하였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오신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고(最高判 1980. 10. 30. 時報 986, 41), 하급심판결로 단순히 수사관의 담화, 의견설명, 전망 등에 기초한 경우만으로는 정식의 발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으며(위 38)의 東京高判 1992. 3. 30.), 법원관계자의 개인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표현을 한 경우에 상당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위 36)의 大阪高判 1985. 6. 12.).

43)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7753 판결

44)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로는 위 24)의 대법원 94다33828 판결(경찰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사에 추가하고 심지어 추가내용 중 일부를 소제목으로 강조하는 등 과장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기사가 작성된 경우), 위 20)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7753 판결(검찰에서는 변호사사무장들을 연행하여 그들이 브로커역할을 하였는지 수사중이라고만 발표하였으나 기사에서 그들을 브로커라고 적시하고 마치 혐의사실이 확인된 듯한 보도를 한 경우), 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107104 판결. 언론중재 99, 겨울 162(범죄혐의를 전혀 알지 못하던 검찰이 원고의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혐의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범죄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통보하여 준 사안에서 마치 검찰이 원고의 범죄혐의를 포착하여 조사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경우),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 『언론중재』, 2000 봄, p.145(수사책임자가 공식브리핑을 통하여 관련자들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는 본인의 진술로 확인된 것이며 감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서 감청의 의혹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일본의 하급심판례로 경시청 외사과장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원고를 산업스파이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문제된 사례에서 “...발표내용자체에 피항소인이 제공하였다는 기밀 비밀에 관하여 누구의, 어떤 비밀인지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만큼 피항소인을 산업스파이로 단정하는 데 의문을 품어야 하고 발표에 의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기사에는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도 있고 그것에 관하여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또 자극적인 표현의 표제나 억측에 의한 각색을 덧붙인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항소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大阪高判 1985. 6. 12. 時報 1174, 75).

## (2)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의 경우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하는 것은 제보나 독자적인 정보에 따라 보도한 경우가 많다. 정부기관의 공식발표에 의하여 보도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충실한 취재와 확실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판례는 제보자, 취재원의 단편적인 자료, 근거에 의존한 것만으로는 대개 진실이라고 오신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등의 확인취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것이 문제된 사례를 본다.

### 가. 본인 등 확인 취재가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이 지득한 자료만으로 진상의 규명이 어려우면 반드시 확인취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확인취재를 다하지 않은 언론기관은 대개 민·형사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어떤 경우에 확인취재가 필요한가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앞의 판례와 같이 표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sup>45)</sup> 판례에 나타난 확인취재의 핵심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예견되는 당사자 등 핵심자료에 대한 확인이며 본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에도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개 언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sup>46)</sup> 다만 몇 사례에서는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언론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었는 바 기사의 성격상, 혹은 취재원이 특히 신빙성이 있는 경우, 확보된 자료가 특별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할 정도로 확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45) 위 16)의 대법원 98다24624 판결 등

46) 위 16)의 대법원 97다34563 판결(논픽션라디오드라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쓴 회고록 등 저서와 또 다른 사람이 제공한 자료에 기하여 당사자나 위 저서의 저자들에 대한 확인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쳐야 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위 24)의 대법원 94다33828 판결(경찰의 보도자료와 타 언론사의 기사를 참고로 하여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내보낸 경우). 부산지방법원 1996. 10. 15. 선고 95카합5821 판결. 언론중재 97. 봄 173.(동료 기자들로부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제보를 전해 듣고 제보자를 만난 후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로서 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위 44)의 서울지방법원 99가합77460 판결(이는 수사에 감청의후이 있다고 수사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들에게 감청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사책임자가 항의까지 하였음에도 보도한 경우이다). 기타 아에 관한 우리 나라와 일본의 판례경향은 줄지. pp.248-249, 268-269, 389-392. 清水英夫, '名譽毀損法とマス・メディア', マス・メディアの現在, 일본평론사편, 1986. p.107 이하 참조.

4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공보 1996하 2928(언론기관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1명은 직접 면담하고 1명은 직접면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사람을 면담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의 목격내용을 전하여 들었고 그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받아 진술내용을 확인한 경우 대법원은 "학생의 사망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모 기관의 직원이 그 학생과 동승하였던 것이 밝혀지고 나아가 그들의 일행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까닭에 그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라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6나39389 판결. 『언론중재』, 1998년 봄호, p. 142(본인확인도 하지 아니

판례에 나타난 확인취재의 핵심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예견되는 당사자 등  
핵심자료에 대한 확인

나. 당사자 등에 대한 확인가능 여부의 고려  
한편 본인 등 핵심자료에 대한 확인이 불가  
능하였던 경우 이러한 사정은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참고가 되었으나<sup>48)</sup> 이 경우에도 법원  
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과의 접  
촉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한 판  
단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sup>49)</sup> 본인에 대하  
여 확인하여 보았자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이  
없어서 포기하였다고 언론관계자가 주장한 경  
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일본의 하급심판  
례도 있다.<sup>50)</sup>

다. 취재원의 비닉권(秘匿權)의 주장과 상당

한 이유

보편적으로 언론에는 취재원에 대한 비닉권  
이 인정되는 바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의 증  
명과 비닉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일본의 판  
례 중에는 비닉권이 있다고 하여 이 분야 소  
송에서 언론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고<sup>51)</sup> 진실오신의 상  
당한 이유가 문제된 사건에서 언론종사자가  
취재원을 비익한 경우 충분한 취재와 객관적  
인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들  
도 있어<sup>52)</sup>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닉권은 상당  
한 이유의 결정에 있어서 참작요소가 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하였으나 기사의 성격, 취재원에 대한 신뢰정도, 원고의 평소성향 등을 근거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 오래된 일본의 하급심판례로 위 21)의 東京地判 1972. 5. 15.(언론이 의존한 자료가 적사사실의 증명에 불가결한 직접증거의 하나이고 수사기관도 그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

48) 위 16)의 대법원 97다19038 판결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다룬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로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보호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보도 내용이 역사적인 경우 명예의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한편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취재의 충분성과 자료의 확실성의 요건에 유연성을 인정하였다. 곧 대법원은 “1960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왔고 1992년 수차에 걸쳐 위 ○○○ 스스로 위 ○○○이 백범암살을 암시. 선동하였음을 시인하였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히 역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더욱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위 ○○○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등을 참작하면...”라고 설시하여 오랜 세월로 인하여 더 이상의 사실확인취재가 어려운 점을 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라디오의 논픽션드라마에 관한 위 16)의 대법원 97다34563 판결과 일견 일치하지 않는 듯하나 후자는 한 언론인의 1970년대의 행각을 드라마로 제작 보도한 것으로 당사자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서 명예훼손의 피해자 본인이 생존하여 있고 주변인물들에 대한 확인이 용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탓하고 있어 확인취재의 용이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본인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결로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 위 35)의 서울고등법원 96나19039 판결이 있다.

49) 위 24)의 대법원 94다33828 판결에 의하면 언론사가 원고에 관한 경찰의 발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한 경우 추가한 내용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소의 ○○○가 원고와 통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 기자들의 원고에 대한 접촉시도가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라는 등 확인취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언론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50) 위 38)의 東京高判 1992. 3. 30.

51) 最高判 1955. 12. 9. 刑集 9. 13. 2633.

52) 東京高判 1994. 7. 21. 時報 1512. 36.(집필자가 대부분의 취재원을 비익하고 있는 이상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 또한 우리나라의 판결로 위 42)의 서울고등법원 97나57630 판결에서도 언론 측이 취재원인 공공기관종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었다.

### (3) 다른 언론의 보도의 활용

언론이 다른 언론의 보도내용을 활용하여 보도한 경우 상당성의 면책과 관련하여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위 wire service defence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sup>53)</sup>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로 “언론매체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실시한 것이 있고<sup>54)</sup> 이와 같은 취지는 최근의 대법원판결 등에서도 확인되었다.<sup>55)</sup> 이러한 입론은 위 판결에 나타난 대로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

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라는 우리 언론 환경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인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sup>56)</sup>

이 점은 근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바 일본의 대표적 통신사인 공동통신의 기사를 받아 보도한 신문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부 하급심은 통신사의 정확성과 취재 체제를 고려하여 상당성을 인정한 반면 다른 하급심은 통신사의 기사가 다른 일간지나 공공기관의 발표보다 정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성을 부정하였다.<sup>57)</sup>

### 4) 표제의 선택과 표현의 방법

53) 출처, p.118. 참조.

54) 위 24)의 대법원 94다33828 판결(이 사건은 일간영자신문이 경찰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어 다른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으로 법원은 특히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이 더욱 필요하다고 실시)

55)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 한편 위 44)의 서울지방법원 99가합77460 판결에서는 논설위원이 해당신문의 사실 기사나 다른 신문 기사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사실을 내보낸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56) 위 54)의 대법원 94다33828 판결

57) 신문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東京高判 1995. 3. 29. 東高裁判報 46. 1-12. 11)는 경시청기자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정보에 관하여는 기자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통신사와 계약하여 그로부터 배신된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신문사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신문사들이 배신기사에 대하여 확인취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배신기자자체의 신뢰성, 피고신문사가 확인취재를 할만큼의 인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외에 확인취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배신기사의 취재원에 배신을 받은 각 사들의 취재가 왜도하여 취재원을 당황하게 하고 배신을 받은 각 사와 공동통신사와의 신뢰관계 나아가 공동통신사와 취재원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게 된다. ...공동통신사는 다수의 보도기관이 가맹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로서 인적, 물적으로 취재체제도 정비되어 있고 그 배신기사의 신뢰성이 높기 평가되며 그 내용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공동통신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맹 보도기관은 확인취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도체제가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도체제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공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배신기사에 관하여 피고 신문사 등이 진실이라고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신문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원의 다른 판결(東京高判 1996. 4. 26. 時報 1608. 107)은 이와 반대로 “...공동통신사의 기사에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취재체제가 유명 일간지 등 전국지에 비하여 우월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공동통신사의 배신기사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의 공적발표와 같은 정도로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전국지의 보도를 신뢰하여 그 내용의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는 면책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과 대비하여 배신서비스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을 결하며 가맹사는 통신사를 수족으로 취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취재의 잘못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성이 없으며 배신기사에 의하여 명예훼손된 자가 배신(先)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칙으로 벗어나고 배신원(源)에 다시 소송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흠이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라는 이유를 들어 신문사에 대하여 진실오신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언론과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언론 스스로 사실의 정확성과  
논평의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

보도에 있어서 표제를 잘못 선택하거나 표현을 잘못된 경우 언론은 명예훼손소송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 독자나 시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혹은 단정적인 표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성의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의 단계, 즉 보도목적의 공익성 등에서 언론 측의 면책주장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나 더러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판단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언론이 취재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나아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평가를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이다.

우리 판례에는 혐의의 단계에 불과함에도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도록 편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sup>58)</sup> 반대로 의혹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책임이 부정된 사례도 있

다.<sup>59)</sup> 또한 일본의 판례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게 ‘극악인(極惡人) 사형율’, ‘희대의 악인’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는 사실의 적시에 범인의 악성을 강조한 논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이 범인의 악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는 고도의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도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것들이 있다.<sup>60)</sup>

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특정과 관련한 판결들이 선고되어 주목된다. 범죄혐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 일반국민들이 범인이 누구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sup>61)</sup>

한편 일본의 하급심판례 중에는 범죄혐의자의 특징은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sup>62)</sup>

58) 위 32)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8가합9329 판결.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언론중재』, 1999년 가을, p.166)은 상당성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나 “남득하지 못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편집보도한 방송보도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59)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 위 47)의 대법원 94도3191 판결.

60) 最高判 1997. 9. 9. 民集 51. 8. 3804. 위 23)의 東京高判 1996. 11. 29. 앞의 판결은 어떤 자가 실제로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과 그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걸려 있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범죄의 혐의에 관하여 다른 언론으로부터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뒤의 판결도 같은 논리를 취하였다.

61) 위 42)의 대법원 97다17257 판결. 한편 위 5)의 대법원 97다10215 판결에서는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실명보도에 대하여는 좀더, p.388 참조

62) 名高屋高判 1990. 12. 13. 時報 1381. 51. “...일반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범죄의 주제로 된 측에서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현재에 있어서도 사회 일반의 의식에서 보아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특징은 범죄뉴스의 기본적 요소로서 범죄사실자체와 나란히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피의자를 실명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포함하여 그 특징의 방법, 정도의 문제는 일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범죄사실의 태양,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질(공인의 성격을 가지는가), 피해자 측의 피해의 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 교량하여 또한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옹호와와의 균형을 감

## V. 결 언

이상에서 진실오신의 상당성에 대한 판례를 대략 검토하였다. 이 문제의 이념적 바탕은 양립하기 어려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명예 등 인격권이 개인의 존엄한 권리의 하나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언론의 자유도 민주사회의 유지에 절대 필요한 만큼 그 보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상당성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적절한 조화의 논리를 정착시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나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권주체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통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보여지나 현실적인 사안은 천차만별이며 이 원칙을 개별적인 사안에 구체화할 기준은 경험과 판례의 부족으로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위에서 본 판결들은 실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관련쟁점들이 계속 정리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언론과 명예훼손에 대한 향후 전개상황을 전망하면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당분간은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의 주장이 증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언론과 인격권의 조화를 위한 모색이 계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과 침해에 대한 적극 대응의 움직임이 점차 강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하여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현재의 판결로도 자유로운 보도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할 것이나 이러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한편 언론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취재의 충실성, 자료의 확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궤도에 올라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가 정착되면 외부로부터의 규제는 감소되어 나갈 것이다. 언론과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가장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 AP통신의 매뉴얼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언론 스스로 사실의 정확성과 논평의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sup>63)</sup> 판례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은 대부분 정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다. □

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면서 사고로 2인이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실정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혐의자를 경칭이나 직함 없이 호칭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경칭 등을 붙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63) The Associated Press, Style book and libel manual, p.279, 1994.에서 인용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및 평가

-선거기사심의사례를 중심으로-

## I.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0년 벽두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4월 13일의 선거 결과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27명 가운데 한나라당 112명, 민주당 96명, 자민련 12명, 민국당 1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5명으로 결과가 드러났다. 그리고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인한 비례대표들의 수까지 합치면,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 정수 가운데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및 무소속 6석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절묘한 균형과 견제의 구도로서 그 어느 정당도 독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을 제1당이 못되게 하였으며, 기존의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제1당의 위치를 갖게 하되 과반수는 넘지 못하게 하여, 의회 내에서의 지나친 독주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3당을 차지하며, 민주당과 더불어 공동정권을 창출하였던 자민련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감정과 지역정서에 소구하던 한나라당의 공천탈락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당인 민국당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경향으로서 '양당체제'를 선호하며, 군소 정당들의 난립을 바라지 않는 속성에서 표출된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의 선거들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최초로 기존 정치구도를 바꾸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이후의 선거이어서, 이전과는 달리 야당이 제1당이고 여당이 제2당인, 이른바 '여소야대'의 상황에 서 이루어진 선거이다. 따라서 현 정권을 이룬 민주당은 새해

## 백 선 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동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언론학 박사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임
- 현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성균관대 언론정보문화연구소 소장
- 저서 : 『보도의 기호학』(1996), 『한국 선거보도의 기호학』(1997), 『한국 선거보도 연구』(공저, 1997), 『언론보도와 신화적 인식』(1998)

벽두부터 여당의 승리를 위해 선거체제를 빠르게 정비하고, 모든 체제를 여당의 선거 승리에 맞추었다. 여기에 맞서 제1정당인 한나라당도 선거체제를 정비하여, 전국은 갑작스럽게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동정권을 구성하였던 자민련은 민주당이 대통령제에 집착하고, 내각제로의 정계 개편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야당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었다. 이른바 '1여 2야'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또하나의 특징은 이전까지 선거과정에서 공명선거 제고나 부정선거 감시에 몰두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먼저, 각 정당에서 공천하는 입후보자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도하여, 각 정당의 공천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정치세계에서 떠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공천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힘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시민단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은 거칠게 반발하였지만, 이미 대체는 이들의 입지를 약하게 하였고, 실제로 각 정당의 공천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우선 민주당은 일부 중진들을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공천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인 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총재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거의 모두 공천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 정당의 반영은 이들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어, 이른바 '공천파동'을 야기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이들 공천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민국당'이 급조되었으며,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의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게 되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법정 선거가 개시되고 각각의 지역구에서 유세가 시작되자, 일부 공천 부적격자들을 공천한 정당의 입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와는 달리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행위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적인 마찰이 잦았다. 또한 낙선 운동 대상자인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여, 선거분위기를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의 영향은 실로 위력적이어서, 시민단체들을 대표하는 총선연대에서 선정한 86명의 낙선대상자들 가운데 59명이 낙선되어 68%의 낙선율을 보였으며, 수도권에 입후보한 영향력 있는 낙선 대상자들 20명 가운데 19명을 낙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정치권의 분위기나 성격을 바꿀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검찰권으로 대변되는 공권력의 미진한 개입으로 인한 혼탁한 선거분위기에서 치루어진 이번 선거에 대해, 특히 지역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게 된 역설적인 선거환경에 대해, 우리 언론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보도하였으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도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해 본 연구가 시도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 언론이 선거보도에 있어서 지녀야 할 보도원칙들을 얼마나 지켰으며, 그러한 보도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어느 것들인지 밝혀보고, 그같은 위반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들을 밝혀보고, 그 대안들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뉴스보도의 원칙을 중심으로

뉴스보도의 근본속성 및 근본원칙으로서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주요 논제에서 있어서 취하는 입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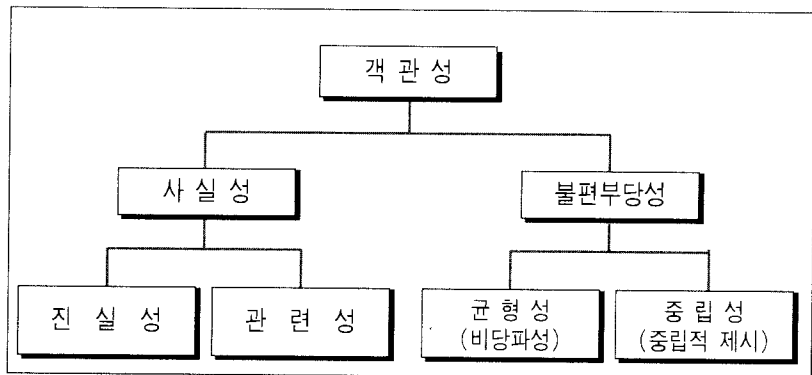
따라서 언론은 여러 당파성을 지닌 구성원들과 각기 다른 이익적 욕구를 지니는 집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사회의 기본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언론이 한쪽의 측면에서 다른 쪽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할 경우, 그것은 사회상의 뚜렷한 균열을 가져오고 사회구성원간에 심각한 갈등국면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뉴스보도시에는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객관보도란 발생한 사건의 '사실성'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고, 균형보도란 어떤 사건이 지니는 의미나 해석에 있어서 또는 비중에 있어서 특정한 쪽에 비중을 두지 않고 취급하는 것이며, 중립보도는 기자 자신의 사건이나 편견없이 중립

적 입장에서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이런 개념들은 서로 깊은 연계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서로 뚜렷한 개념 구분 없이 모호하게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웨스터스탈(Westerstahl)은 이들 개념들과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 그는 뉴스보도의 객관성을 '사실성(factuality)'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차원으로 나누고, 다시 사실성을 '진실성(truth)'과 '관련성(relevance)', 그리고 불편부당성은 '균형성(valance)'과 '비당파성(non-partiality)'과 '중립성(neutral presentation)'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Westerstahl, 1983, pp.403-424 참조).

〈도표 1〉 Westerstahl의 뉴스객관성 개념



먼저 사실성은 사건(또는 보도)에 있어서의 정확성, 검증가능성, 보도의 연결성(관련된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느냐)과 관련된다. 즉, 뉴스로 보도된 사안이 진실로 일어난 사실과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계된다.

그리고 관련성이란 보도에 있어서 관련된 사안들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선정과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의 개념은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

안인가에 대한 선정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

흔히 뉴스선정의 가치기준으로는 사건의 규모, 강조, 공간적·시간적 근접성 등이 관련성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웨스터스탈은 관련성의 개념은 하나의 사건 보도뉴스와 하나의 주요 항목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과정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라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 수출입 추이, 기업투자지수, 임금인상 등 경제위기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뉴스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 항목들간의 상호관련성, 중요성의 순위 등을 선정하고 판단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1987, p.94 참조).

한편, 불편부당성은 대립되는 현실인식들간에 어느 쪽의 입장에도 서지 않고 동등한 비중을 두고 보도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균형'이란 각 당파에 똑같은 양의 시간이나 지면을 할애하느냐, 특정사건에 대해 일정한 입장이 있느냐 없느냐, 각 당파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등의 판단여부를 가리킨다.

끝으로 중립적 제시란 기자가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한 당파가 대립되는 당파의 견해나 주장을 비난할 경우, 기자는 그것이 지니는 어떤 특정 당파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균형성'이나 '중립성'을 '객관성'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여기서 객관성은 공정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즉, 보도의 객관성을 다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맥퀘일(McQuail, 1986)은 웨스터스탈이 언론보도(뉴스)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서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언론보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은 사회 내의 경제적, 조직적, 기

본적 요인들로 인하여 뉴스생산자인 기자에게 일정한 압력을 가하므로, 뉴스보도에 있어서 순수한 객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McQuail, 1986, pp.1-36 참조).

따라서 뉴스의 객관성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제 요인들에 기자들이 적응하는 전략으로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란 것이다. 요컨대 언론에 의한 현실의 객관적 보도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는 비객관적 보도(뉴스)라는 개념을 개진시킨다. 즉 맥퀘일에 의할 것 같으면, 보도매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요구 이외에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행사하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객관보도의 요구로부터 독립해서 보도매체는 사실, 해설기사, 휴먼인테레스트 기사, 투고 등과 같이 객관보도의 요구와는 다른 독립적으로 일정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제보도에 있어서 필연적 요인으로서 객관성을 보았으며, 객관성의 하위개념으로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비객관적 요소로서, '당파성', '선전성', '주관성' 및 '선택성'을 들고 있다. 그는 언론보도 관행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론상이나 원론상에서의 '객관적 보도' 규제의 이념보다는 분명히 신문 나름의 독자성을 지닐 수 있는 비객관적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의 보도원칙이나 언론의 속성 가운데 지나치게 '객관성'이 강조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는 지적이나, 과연 언론사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 나름의 '독립성' 또는 '독자성'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점은 역시 문제로 남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맥퀘일 역시 '객관성'을 '공정성'의 의미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즉, 신문은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나

신문에는 비객관적인 요소가 있어 '공정성'의 견지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로젠그렌(Rosengren, 1980)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진실성', '관련성', '중립성' 및 '균형성'을 강조하면서, 앞의 두 요소는 '인지적 차원'에서, 뒤의 두 요소는 '평가적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찰리(Charnley, 1960)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사건은 인간적 관찰자(기자)에 의해 복사되긴 하지만 공정하게 보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명구 교수는 뉴스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3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강명구, 1987, pp.99-108 참조). 즉 뉴스의 공정성은 사실성의 검증, 윤리성의 검증, 이데올로기의 검증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사실성에 있어서는 정확성과 균형성이, 윤리성에 있어서는 합법성과 윤리성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전체성과 역사성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한다. 요컨대 뉴스의 공정성의 문제는 첫째, 그것이 객관적일 수 있는가 라는 인식론적인 질문과 보도의 내용과 과정이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에서 보다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그리고 정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적 질문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의 질문은 뉴스가 지니는 여러 속성을 입체적이면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각기 다른 차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연결시켜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으며, 두 번째의 윤리적 판단의 근거, 세 번째의 이데올로기적 판단근거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실제 연구상에서 이런 차원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류일상(1987)은 보도란 인간과 사회의 실상을 진실하게 재현시켜야 하므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성'이라는 보도의 규범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

성'이란 언론이 처해 있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과 언론인들의 개인적 가치관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뉴스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개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별개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백선기, 1995: 1997)의 견해로는, 사실성의 확보를 제한된 의미에서의 '객관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공정성이란 문제는 '균형성'과 '중립적 제시'라는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사실성의 확보를 좁은 의미의 객관성의 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성의 확보는 사실의 정확한 묘사나 충실한 자료제공 및 의견이나 주장의 제시에 대해 그 진위여부로 분명히 밝혀지는 것으로서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균형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균형성이란 보도의 양에 있어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균형을 의미하며, 또한 그러한 양이나 질이 적절하게 균등하였느냐 하는 '평가(evaluation)'의 차원이기도 하다. 양의 균형은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 맞출 수 있으나 질의 균형의 문제는 그 평가의 기준 및 척도에 따라서 달리 파악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웨스터스탈도 지적했듯이, 균형성이란 모든 당사자들의 견해, 입장, 시각을 기계적으로 균형되게 보도하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의견 또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인 평가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그 사회가 처한 사회체제, 또는 문화적으로 보편화된 가치와 이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균형이란 문제는 그 사회의 윤리적 차원과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결부되게 되는 것이다(강명구, 1989, pp.85-111 참조).

따라서 언론이 사실성에 입각한 뉴스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균형보도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그 언론사가 지닌 윤리적 차원과 이데올로기적 차원, 나아가 그것이 속한 사회의 윤리적 차원과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의미관계에서 설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언론이 사실성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균형보도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취급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즉, 사실성의 확보와 균형의 보도가 어우러져야만이 공정한 보도를 행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균형성의 확보가 언론이 지닌 공정성의 확보에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을 보였는가? 특정한 보도원칙을 위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한국 언론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균형되게 보도하였는가? 균형되게 보도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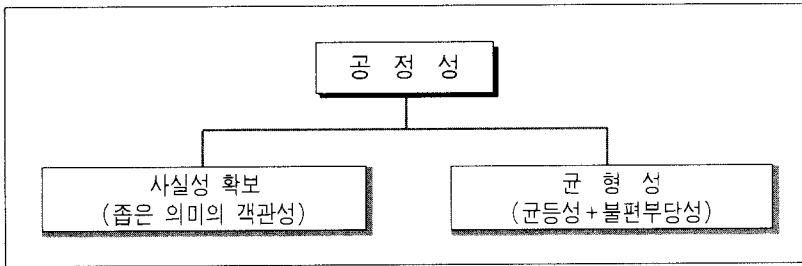
**연구문제 3** : 한국 언론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특정한 보도원칙을 위반하거나, 균형되게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며,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정치계에서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이들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한 자체 심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00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의 284개의 언론매체 -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중앙 주간지, 지방 주간지, 연합통신 및 주간 잡지 - 등을 중심으로 선거보도 내용들을 심의한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산하에 있으면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내용들에 대해 심의하며, 또한 보도내용들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심의를 통해 강제할

〈도표 2〉 백선거의 '공정성' 개념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뉴스보도의 원칙과 본 연구자의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한국 언론은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도에 있어 어떠한 경향

수 있는 감시 및 중재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선거 감시 및 중재의 공식 기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원칙의 위반 사항이나, 균형성의 위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사한 기사내용들과 그에 따른 심사 결과들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심사한 뉴스보도 내용들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그것이 지닌 의미, 특히 한국의 선거 역사에 있어 미치는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선거기사심사위원회의 자체심의의결 사항 및 논의

〈도표 3〉과 〈도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체 93건의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였으며, 이 가운데 71건(76.3%)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평가하였으며, 14건(15.1%)을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7건(7.5%)을 ‘여론조사결과 보도 금지 위반’으로, 나머지는 ‘상업광고제한 위반’으로 평가 분류하였다.

첫째,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 관련 보도에 있어서 주요 문제의 제기는 ‘보도내용에 따른 형평성 또는 균형성’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도에 있어서 균형성 및 형평성의 논란은 평가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서,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보도내용의 균형성 시비는 항상 있어 왔으며(백선거, 1995; 1997 참조), 우리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들 중의 하나인 ‘편파보도’와 특정 사안에 있어서 한 쪽을 유리하게 하는 ‘확대보도’, ‘축소보도’, ‘은폐보도’ 나아가 적극적으로 특정 편을

〈도표 3〉 선거기사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신문유형별 현황

| 간 별              | 구 분 | 계            | 위 반 유 형         |                |                |             |               | 결 정 내 용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여론조사<br>보도여건미비 | 여론조사결과<br>보도금지 | 상업광고제한      | 기 타           | 경 고           | 주 의 | 기 타 |
| 일<br>간<br>신<br>문 | 중 앙 | 12           | 1               | 7              | 4              |             | 4             | 8             |     |     |
|                  | 지 방 | 64           | 55              | 5              | 3              | 1           | 42            | 22            |     |     |
| 통 신              |     | 1            |                 | 1              |                |             |               | 1             |     |     |
| 주<br>간<br>신<br>문 | 중 앙 | 6            | 6               |                |                |             | 5             | 1             |     |     |
|                  | 지 방 | 9            | 9               |                |                |             | 7             | 2             |     |     |
| 주 간 지            |     | 1            |                 | 1              |                |             |               | 1             |     |     |
| 총 계              |     | 93<br>(100%) | 71<br>(76.3%)   | 14<br>(15.1%)  | 7<br>(7.5%)    | 1<br>(1.1%) | 58<br>(62.4%) | 35<br>(37.6%) |     |     |

<도표 4>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매체별 현황

2000. 3.1 ~ 2000.4.14

| 간 별                        | 구 분     | 계  | 위 반 유 형         |                |                |        |     | 결 정 내 용 |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여론조사<br>보도여건미비 | 여론조사결과<br>보도금지 | 상업광고제한 | 기 타 | 경 고     | 주 의 | 기 타 |
| 중앙<br>일간신문                 | 경 향 신 문 | 3  |                 | 3              |                |        |     | 3       |     |     |
|                            | 국 민 일 보 | 3  |                 | 2              | 1              |        | 1   | 2       |     |     |
|                            | 문 화 일 보 | 2  |                 | 2              |                |        |     | 2       |     |     |
|                            | 중 앙 일 보 | 1  |                 |                | 1              |        | 1   |         |     |     |
|                            | 한 거 레   | 1  |                 |                | 1              |        | 1   |         |     |     |
|                            | 매 일 경 제 | 2  | 1               |                | 1              |        | 1   | 1       |     |     |
|                            | 소 계     | 12 | 1               | 7              | 4              |        | 4   | 8       |     |     |
| 지<br>방<br>일<br>간<br>신<br>문 | 경기도민일보  | 1  | 1               |                |                |        | 1   |         |     |     |
|                            | 경 남 신 문 | 3  | 3               |                |                |        | 2   | 1       |     |     |
|                            | 경 도 일 보 | 2  |                 | 1              |                | 1      | 1   | 1       |     |     |
|                            | 경 상 일 보 | 2  | 2               |                |                |        | 2   |         |     |     |
|                            | 경 인 매 일 | 4  | 4               |                |                |        | 4   |         |     |     |
|                            | 광 주 매 일 | 1  | 1               |                |                |        | 1   |         |     |     |
|                            | 광주타임스   | 2  | 2               |                |                |        | 2   |         |     |     |
|                            | 국 도 일 보 | 3  | 3               |                |                |        |     | 3       |     |     |
|                            | 대 전 매 일 | 1  |                 | 1              |                |        |     | 1       |     |     |
|                            | 대 전 일 보 | 3  | 3               |                |                |        | 3   |         |     |     |
|                            | 신경북일보   | 1  | 1               |                |                |        | 1   |         |     |     |
|                            | 영남투데이   | 3  | 2               |                | 1              |        |     | 3       |     |     |
|                            | 울 산 매 일 | 1  | 1               |                |                |        |     | 1       |     |     |
|                            | 인 천 일 보 | 1  |                 | 1              |                |        |     | 1       |     |     |
|                            | 일 간 경 북 | 2  | 2               |                |                |        | 2   |         |     |     |
|                            | 전 남 매 일 | 1  |                 | 1              |                |        |     | 1       |     |     |
|                            | 전 남 일 보 | 1  | 1               |                |                |        | 1   |         |     |     |
|                            | 전북도민일보  | 7  | 7               |                |                |        | 3   | 4       |     |     |
|                            | 전 북 일 보 | 4  | 4               |                |                |        | 3   | 1       |     |     |
|                            | 전북제일신문  | 4  | 4               |                |                |        | 4   |         |     |     |
|                            | 전 주 일 보 | 2  | 2               |                |                |        | 2   |         |     |     |
|                            | 세 민 일 보 | 1  |                 |                | 1              |        | 1   |         |     |     |
|                            | 제 주 일 보 | 2  | 1               | 1              |                |        | 1   | 1       |     |     |
|                            | 중 도 일 보 | 1  |                 |                | 1              |        | 1   |         |     |     |
|                            | 중 부 매 일 | 2  | 2               |                |                |        | 1   | 1       |     |     |
|                            | 충 청 일 보 | 4  | 4               |                |                |        | 3   | 1       |     |     |
|                            | 호 남 신 문 | 1  | 1               |                |                |        |     | 1       |     |     |
|                            | 한 라 일 보 | 2  | 2               |                |                |        | 1   | 1       |     |     |
|                            | 한 빛 일 보 | 2  | 2               |                |                |        | 2   |         |     |     |
|                            | 소 계     | 64 | 55              | 5              | 3              | 1      | 42  | 22      |     |     |

| 간 별    | 구 분         | 위 반 유 형         |                |                |              |             | 결 정 내 용       |               |     |
|--------|-------------|-----------------|----------------|----------------|--------------|-------------|---------------|---------------|-----|
|        |             | 공정성<br>및<br>형평성 | 여론조사<br>보도여건미비 | 여론조사결과<br>보도금지 | 상업광고제한       | 기 타         | 경 고           | 주 의           | 기 타 |
| 통신     | 연합뉴스        | 1               |                | 1              |              |             |               | 1             |     |
|        | 소 계         | 1               |                | 1              |              |             |               | 1             |     |
| 중앙주간신문 | 주간내일신문      | 1               | 1              |                |              |             | 1             |               |     |
|        | 일요시사        | 2               | 2              |                |              |             | 1             | 1             |     |
|        | 일요서울        | 1               | 1              |                |              |             | 1             |               |     |
|        | 주간현대        | 2               | 2              |                |              |             | 2             |               |     |
|        | 소 계         | 6               | 6              |                |              |             | 5             | 1             |     |
|        | 전북일요시사      | 1               | 1              |                |              |             | 1             |               |     |
| 지방주간신문 | 주간고향신문      | 1               | 1              |                |              |             | 1             |               |     |
|        | 새거제         | 1               | 1              |                |              |             | 1             |               |     |
|        | 리빙타임즈       | 1               | 1              |                |              |             | 1             |               |     |
|        | 정읍신문        | 1               | 1              |                |              |             |               | 1             |     |
|        | 주간남원민보      | 1               | 1              |                |              |             | 1             |               |     |
|        | 울산내일신문      | 1               | 1              |                |              |             |               | 1             |     |
|        |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 1               | 1              |                |              |             | 1             |               |     |
|        |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 1               | 1              |                |              |             | 1             |               |     |
|        | 소 계         | 9               | 9              |                |              |             | 7             | 2             |     |
|        | 주간지         | 뉴스피플            | 1              |                | 1            |             |               |               | 1   |
| 소 계    |             | 1               |                | 1              |              |             |               | 1             |     |
| 총 계    |             | 93<br>(100%)    | 71<br>(76.3%)  | 14<br>(15.1%)  | 7<br>(7.53%) | 1<br>(1.1%) | 58<br>(62.4%) | 35<br>(37.6%) |     |

들어 오도하게 하는 ‘조작보도’와 연계되게 된다.

우리 언론의 ‘균형성 및 형평성’ 시비는 대부분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제기하는 ‘여당 편들기’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항으로서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로 인해 언론은 여권이나 여당에 우호적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여당이나 여권에 피해가 덜 가도록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리고 특히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언론인과 특별히 가깝게 지낸다든가 배려를 해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관리해 왔다. 그리하여, 이른바 ‘누구 누구 장학생’이라는 말이 언론계에 회자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은 여전하였던 것 같다. 보도와 관련된 시비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형평성’ 시비라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등의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이후에 보다 자세하게 분석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야당 입후보자나 무소속 입후보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우리 언론의 ‘여당편들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는 호남 지역 여당 입후보자들과 관련된 편향보도 시비로서, 특정 지역에 있어, 특정 정치인과 특정 언론과의 유착정

도가 아주 심각한 지경임을 일깨워주는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특히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해되는데, 지역에 있어서의 특정 그룹들의 연합이나 연계가 그 지역의 '파워엘리트' 군을 형성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김영호·강준만, 1995 참조). 지역의 언론인, 정치인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혈연이나 학연으로 연계되어, 평상시에는 서로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고 갈등상황을 보이기도 하지만, 선거와 같은 특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서로 단합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관행이 있다. 이리하여, 특정 언론이 특정 입후보자 - 대부분의 경우는 여당 입후보자나 야당인 경우에는 정치무대에서 실력자 - 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서울의 중앙일간지들보다는 지방의 일간지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지역의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유착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71건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사례들 가운데 지방일간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이러한 시비에서 비껴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밝혀내기 어렵거나, 그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중앙일간지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 의외인 사실은 주간신문에서 균형성 및 형평성의 시비가 별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간신문은 그 특성상 충격적이거나 과장된 보도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사안들에 있어 '사실성' 유무에 대한 시비와 '형평성' 시비가 자주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는 전체 71건 가운데 15건 정도로 다소 적게 발생하여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형평성 시비 외에 우리 언론이 선거보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위반하는 사항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보도'를 통한 특정 입후보자 편들거나 특정 입후보자 약화시키기'가 대부분의 경우이다.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 경향들 가운데 가장 파행적인 경향들 중의 하나는 '경마식 보도'로서, '당락 가능성에 의한 입후보자들의 우열'을 가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보도경향이다(백선거, 1995, 1997; 권혁남, 1997 참조). 수 많은 언론학자나 방송학자들이 이러한 보도경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에 따른 입후보자의 경쟁 상황이 우리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서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 자체가 입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임으로 이러한 보도경향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어, 전혀 고쳐질 것 같지 않다.

경마식 보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주목하기 보다는 오로지 입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에만 주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선거에 따른 선거 쟁점들, 쟁점들에 대한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의 대안이나 제안들, 새로운 비전들의 제시 등에는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판세 분석'이라는 미명하에 선거전에 돌입되기 오래 전부터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입후보자가 지닌 일차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가 지닌 지역연고, 혈연(문중), 학력이나 지역 내의 영향력이나 지위 등에 주목하게 된다. 다른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것이다.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정치적 사항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사항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러한 판세 분석을 비정치적 사항들에 입각하여 평가하던 것을 사회과학 방법론의 발달과 그응용력이 지닌 효율성에 의해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여, 선거에 활용하게 되었다. 이른바 '과학'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판세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각각의 지역구에서 어느 후보가 우세한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당이 우세한가에 대해, 각종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 활용의 경우, 때에 따라서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이의가 자주 제기된다. 이의 제기의 주요 사항으로는 주로 특정 입후보자가 앞서 나간다고 함으로써, 선거 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여타 입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오차한계의 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도,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여, 그러한 격차를 기정 사실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론조사 대상에서 특정 입후보자들 - 대부분의 경우는 무소속 입후보자들 -을 배제한 상태에서 실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무소속 입후보자들이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여론조사가 정확도나 신뢰도에서 믿을만 한가 하는 것이며, 적합한 통계적 지식에 의해 해석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4월 13일 행한 방송 3사의 여론조사결과 공표는 많은 오류를 범하였으며, 실로 많은 경우에 있어 결과가 뒤바뀌어 나타나기도 하였다(권혁남, 2000 참조). 이는 지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의 오류와 같은 상황인데, 그 때는 처음 행한 출구조사이고 아직 통계적 활용이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실수라고 용서받기도 하였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난 4년간의 노력과 엄청난 액수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될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다. 지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당선자 수와 그에 따른 제1당의 예상을 뒤바꿀 정도로 틀리게 예측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후보자는 물론이고 정당 관계자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게 되었으며, 이의 오류와 남용에 대해 우려하게 된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정확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와 출처나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특정 입후보자를 부각시키거나, 특정 입후보자를 약화시키는데 활용한 바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는 방송보다는 신문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현상인데, 특정 신문과 특정 입후보자 사이의 유착관계의 정도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를 빌미로 삼아 특정 입후보자를 옹호하거나, 특정 입후보자의 당선을 기정 사실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언론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보도원칙인 공정보도나 객관보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형평성 및 균형성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도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우리 언론이 자주 위반하는 또 하나의 선거보도 경향은 법정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선거법에는 법정 선거가 시작된 날부터 선

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민감한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본 연구자도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따른다는 입장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정선거기간 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커다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특정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심하여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공정보도와 균형보도 위반 사항 및 논의

이제부터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기사내용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 언론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정보도와 균형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유형과 문제점 및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자 한다.

첫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언론의 '여당 편향의 경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들 중 대표적인 경향의 하나인 '여당 및 여권 편들기'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냈고, 이러한 경향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일간지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판세분석의 유형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남여 북야 구도 ... 민주 '2배 우위'” (K신문)

“...서울은 현재 민주당이 2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K신문)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 방문 성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7-8% 급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K신문)

“...충청북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등 ... 초반 선거판세가 급변하고다...” (M신문)

“...그러나 공천파문과 민국당 창당 직후...민주당은 30.4%, 한나라당은 20.3%로격차가 벌어졌다...” (M신문)

둘째, 지역의 각 선거구에서는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우호의 정도에 따라 지방 언론들이 편향되게 보도하였으며,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호남지역에서 극명하게 일어났으며, 주로 민주당 입후보자에게, 그리고 무소속이긴 하지만 '친여 무소속 입후보자'에게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 '제1당' 도민 손에... '반짝 우애 작전' ...” (J신문)

“... 한영애, 더블스코어 1위...” (M신문)

“... 민주당 대전 서울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남재두 의원은 3선의 관록과 여당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 (T신문)

“...주가 상승 정동영 민주당 대변인 ... 야당 공격 방어 선봉장 ...” (JD신문)

“... 정균환 의원 ...특히 정단장은 '국민의 정부' 실세답게...” (JD신문)

“...정균환, 전북발전 견인차 ...” (JY신문)

“...이협 의원, 논·밭두렁·막걸리 한 사발 ... 소박한 신정치인...” (JY신문)

“...김원기, 정읍의 미래 큰 그릇에 담아내겠습니다...” (JY신문)

“...고산중 강당 완공, 김태식 의원 예산 확보 결

실...” (JD신문)

“...천용택 미주후원회장 귀국, ‘태평양’ 건너 선거 지원 ...” (KT신문)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 앞서...강운태 41%, 이정일 32.1%, 박주선 37.9% 우위...” (JN신문)

“...바뀌·바뀌 속 ‘무소속 돌풍’ 거세...” (JN신문)

“...무소속 강운태 강세 ...호남 이변 조짐...” (주간 H신문)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 (주간 H신문)

영남권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다소 복잡한 경향을 보이며 일어나고 있어, 호남지역과는 대조적이다. 즉, ‘한나라당 우세’, ‘민국당 약진 및 열세’, ‘기존 정치실세들에 대한 지지’ 등으로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어, 뚜렷하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우호로 인한 편향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하겠다.

“...3당 지역 바람 여전 ... 민국 저조 ...” (M신문)

“...대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라고는 할 수 없다...” (TM신문)

“...민국당 바람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약하다...” (TM신문)

“...민국당 주춤 한나라당 회복 ...” (MK신문)

충청권에서도 자민련이나 김종필 총재에 대한 우호에 따른 편향보도가 여전한데, 그 강도는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다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반 갈수록 JP 바람 거세진다 ...” (N신문)

“...‘녹색풍’ 이금규 선두질주 ...” (M신문)

“...송광호, 뚝심·배짱으로 서민의 삶 향상 약속

...” (CH신문)

이상과 같이 우리 언론들은 언론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보도 원칙인 공정보도와 균형 보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중앙 언론은 기존의 관행대로 ‘여당 및 여당 입후보자 편들기’의 양태로 편향되게 보도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노골적인 경향에 비해 다소 교묘해졌으며, 편향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해졌다. 더욱이 ‘여론조사’라는 과학적 통계지식을 빌어 보도함으로써, 그 위반 상황을 적확하게 지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언론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여 정정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 언론이 언론인의 기본 소양도 제대로 지니지 않은 채 특정 입후보자의 편에서서 적극적으로 편향되게 보도하였다는 점은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일부 지방 언론이 언론이기 보다는 하나의 지역 이익단체로서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김용호·강준만, 1995 참조).

나아가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역대 정권에 비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고착시키겠다고 주창해온 입후보자들이 언론의 특별한 호의와 배려에 의해 당선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지역 언론들에서 우호적으로 보도한 대다수의 입후보자들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친여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특정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그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영남권과 충남권에서도 발생하여, 우리 언론이 일부 지역에서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수행하지 못하고, 편향된 보도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우리 언론이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을 얼마나 수행하였으며, 위반한 사항들은 없었는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위반 사항들은 주로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일반 보도원칙들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가운데 본 연구자가 제시한 바 있는 공정성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자는 보도의 공정성의 개념을 '사실성'과 '균형성'의 확보에 의해 지켜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보도의 공정성의 개념과 객관성의 개념에 대해 피력한 바 있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실천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개념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자의 주장을 따르면,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사실 보도'에 주력하고, 일단 사실 보도라고 확신이 들면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균형 보도를 시도하면 된다. 보도내용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균형과 그들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본 연구자의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사위원회'의 심

의결과와 그 대상이 되었던 보도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언론은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존의 파행적인 선거보도 관행을 수정하지 못한 채, 공정성과 균형성에서 많은 위반 사항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우리 언론은 여전히 '경마식 보도'라는 당락중심의 보도관행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빌려온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여당과 여당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편향된 보도를 하였으며, 호남을 지역으로 하는 특정 언론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당 입후보자들에게 우호적으로 편향되게 보도하였으며, 그들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 언론은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람직한 선거보도 양태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특히 전 국민이 새로운 정치개혁을 소망하고,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선거개혁 및 그에 따른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언론이 보여준 행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위해 전면에서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언론은 자신의 '정치계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부족'에 따른 결과임을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바람직한 선거보도 양태를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한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언론을 개혁할 때라고 주창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구태를 빨리 벗어내고, 올바른 선거보도 양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변 생각해 보기 바라고, 이번 선거에서 위반한 사항들을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해주기 바란다. □

#### 〈참고 문헌〉

- 강명구, “탈사실에 있어서의 뉴스 공정성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제26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1987, pp. 85-111.
- 권혁남, 『한국 언론과 선거보도』, 나남, 1997.
- 권혁남,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구조사와 무응답 문제를 중심으로”, 2000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 pp. 157-169.
- 김영호 · 강준만,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나남, 1995.
- 김정기, 외, 『한국 언론의 병리: 21세기를 위한 분석과 대안』,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노규형 · 김학량, 『선거와 여론조사』, 나남, 1997.
- 류일상, “한국 언론인의 공정보도에 관한 사회윤리성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7.
- 백선기,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1995.
- 백선기, 『한국 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 백선기 외, 『한국 선거 보도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 백선기, 『언론보도와 신화적 인식』,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백선기, “제16대 총선에서의 시민단체 활동과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2000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 2000, pp. 209-224.
- 이창현, “출구조사 왜 틀렸나”, 『신문과 방송』, 2000년 5월호, pp. 13-18.
- McQuail, D., “From bias to objective and back” in T.McComack(ed.), *Studies in Communications*, vol. 3, 1986, pp. 1-36.
- Rosengren, K. E., “Bias in news: methods concepts” in C. Wilhot & H. de Bock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 Book*, vol. 1, Beverly Hills, CA: Sage, 1980, pp. 249-264.
- Westerstahl, J.,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 10, No. 3, 1983, pp. 403-424.

## 언로(言路)와 말

장 공 자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 충북대 교수

흔히 민주주의를 일러 '민중에 의한 정치' 라고 하는데, 이는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를 구별하는 기준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사실상 민주주의의 평등의 원칙이나 가치를 절대시하는, 대표자가 존재할 수 없는 정치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는 민중을 대표하는 대표자나 민중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중을 대표하는 대표자와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엄존이 민주정치의 현실이다. 다만 그들 대표자와 지배자가 민중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정치를 일러 민주주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대표자와 지배자가 민중을 무시하면서 천단적인 사고와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비록 '민중을 위해서'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런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민중이 특정 정책이나 지배자에 대해 찬성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가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의 조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토론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안이나 물리적인 위협을 느낀다면, 민주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민중이 정치적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치' 라고도 한다. 이같은 정치를 위해서는 토론은 불가피하고, 토론을 위해서 토론의 상대는 필수적이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고가는 길을 일러 선인들은 언로(말길)라고 하였다. 그들 선인들은 올바른 언로를 위해 공론에 불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공청회쯤이 될 것이다.

일찍이 정암 조광조(1482-1519)는 중종에게 "언로의 열리고 막힘은 국가사의 관건입니다. 통하면 치평할 것이며, 막히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언로에 힘써 위로는 공경·백집사로부터 시정의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율곡 이이(1536-1584)도 "언로의 열리고 막힘에 흥하고 망함이 달려 있다. ...공론이란 한 국가의 원기이다. ... 국가에 공론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를 금지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처럼 언로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관건이었다. 그런데 언로는 사용하는 말에 따라 열리

언로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관건으로, 사용하는 말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

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말의 구조는 말하는 사람의 의식구조와 같아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언로를 열리게 하지만, 닫힌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말은 언로를 막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은 언제 어디서나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양식을 알아보게 하는 수단이자 행위였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노자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信言不美), 아름다운 말은 진실 되지 못하며(美言不信), 참으로 착한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고(美者不辯),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辯者不美)고 하기도 했는데, 이는 말의 본질을 꿰뚫어 본 명언이라 할만 하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의 인격과 양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상의 양식이나 수양의 정도가 말의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므로 말은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며, 진실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넌지시 돌려서 하는 곡언(曲言), 사실대로 쏘아대는 직언(直言), 들어서 본받을 만한 가언(嘉言), 들으면 불쾌하고 기분 상하는 악언(惡言), 표리가 다르면서도 겉으로는 알랑거리는 교언(巧言), 앞뒤가 일치하면서도 아름다운 단언(端言), 세금이 붙지않는다고 해서 마구 쏟아놓는 요언(饒言), 그리고 남이 잘되기를 비는 덕담(德談),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담(惡談) 등이 있는 걸 보면 말은 분명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들어내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책 중의 책이라고 하는 ‘논어’가 학습(學而時習)으로 시작해서 말을 알아보는 것(知言)으로 끝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시비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한 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양인에게는 말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선별 사용하는 수양의 공부의 공부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정론(正論)과 유언(流言), 조언(助言)과 험담(險談), 청담(淸談)과 패설(悖說)을 구별하는 데는 상당한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논어’는 학습으로 시작해서 지언으로 끝을 맺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사람들이 얼어놓은 쟁의를 조절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도 말길에 따라 문제 하나 하나를 풀어 가는 말의 선별과 사용에 남다른 관심과 지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

양 경 승  
변 호 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제주와 청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양경승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강용삼 위원(전 한라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있었고, 6월 16일에는 청주리호관광호텔에서 최선열 위원(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장공자 위원(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20세기 말에 이르러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간사회는 이전의 수십 세기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른 변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정보의 유통속도와 유통량, 유통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보의 오류와 왜곡에 의한 피해발생 위험 역시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책임영역'은 기존의 신문, 방송, 통신에 대한 전통적 대응방식과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이를 잘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언론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사실상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영역 보다는 책임영역의 중요성이 월등하게 커졌다고 할 수 있고, 거대 정보유통 조직에 의한 정보의 독과점 및 왜곡 문제 또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책임언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수단에 의한 사전규제나 사후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 같은 자율적 사전규제 장치로서는 옴부즈맨제도나 신문평의회 또는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각종 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실제로 우리 언론계에서도 일부 운용되고 있으나, 옴부즈맨이나 독자 모니터링제도 등의 자율적 사후구제 장치는 이제야 태동하는 단계에 있어 크게 미약한 실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의 현행 법제상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 침해의 사후적 구제는 전적으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금전배상에 의한 것과 비금전적 원상회복에 의한 것이 인정되는데, 그 중 금전적 배상에 의한 구제는 전적으로 법원이 맡고 있고,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통한 구제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 맡고 있다.

폐지된 언론기본법과 이를 대체한 현행 정기간행물법 등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

를 거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 내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 의 원리상 국가(행정권력)가 언론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적 기관에 의한 조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재판에 갈음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한 합의를 유도할 뿐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의 출소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전치절차인 언론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하였다 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동해온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성과를 돌이켜 보건대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언론 모두 이 제도를 통하여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와 지식을 얻게 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언론은 반론권제도에 대한 초기의 본능적·맹목적 거부와 불신의 태도를 많이 버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중재절차 등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반론권제도를 무리 없이 우리 언론계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법적 지위나 중재기능의 제약과 한계, 또 그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언론계 내외로부터 중재위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와 질책이 가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뉴미디어시대의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사진금지청구권 등 제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흡수하여 통일적·종합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이로써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에 대한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등 절차를 간명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고, 유사한 구제수단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과 상호변환을 통해 분쟁의 해결가능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다만 전문 언론기관으로서 계속성과 함께 어느 정도의 규모와 인적·물적 조식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야기된 소규모 분쟁에 대하여는 통합법을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므로 민법 규정을 존치하여 통합법의 규율 밖의 분쟁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신문 등을 비롯한 새로운 언론매체에 대하여도 이를 제도 내로 적극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적 책임확보를 위한 사내 옴부즈맨의 설치를 제안한다. 언론사고 역시 사전 검색을 통한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며, 사전 검색 기능은 그 성질상 언론사의 자율적 기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언론사에 예측되지 않은 반독립적 기관으로서 사내 옴부즈맨을 둘 것이 요청된다.

사내 옴부즈맨은 언론현상과 법률제도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이나 언론학 관련 대학교수직에 있었거나 언론 현업에 종사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되, 그 직무상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해 언론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옴부즈맨에 대한 언론사의 부당한 간섭과 변칙적인 운용을 막기 위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그 성명과 자격, 지위,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위원회에 신고하게 하여 허위신고의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옴부즈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를 손해배상의 민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언론사나 언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도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법성을 인정해온 판례를 입법으로써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 제기 전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범죄사건의 보도를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되,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당해 피의자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처우하거나 그의 친족 또는 주변인에 관하여 불필요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완화를 위하여 당해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2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지 1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배상액도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나,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 감경해야 한다.

언론사는 장래의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같은 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잠정적인 보완수단으로서 공제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모두 원래의 보도내용을 부정하고 그와 배치,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 보도내용을 수정, 원상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래와 달리 정정보도를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정정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피해자가 증명한 때에 언론사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반론)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는 물론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절차의 전심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이 역시 모두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분쟁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양보함으로써 언론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상대적인 만큼 피해자는 그 청구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재나 직권중재결정이 당사자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한 증거조사기능의 확대,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 도입,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조정 전치주의의 확대,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와 소송절차로의 이행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련 보도의 시정청구제도 개편도 요구된다. 현행 법 상으로는 방송에 대한 시정청구는 방송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구제절차의 통일성과 중재절차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 역시 중재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 토론

사회 강 용 삼  
전 한라일보 편집국장

우리 나라 언론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만큼 언론인의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

**사회자 :** 주제논문을 발표해 주신 양경승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내용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발표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소장, 제주대 정의과 교수) :** 오늘 발표내용이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규율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존 법제도와 이와 관련한 사례분석에 치우친 느낌입니다. 혹시 뉴미디어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언론중재제도의 지난 20년 동안 활동 평가에 대하여 주제 발표자는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제도는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들어보면 이것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과거의 부정적인 데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인의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홍철 (제민일보 논설위원) :** 발표자는 언론자유에 대한 해석을 “언론의 자유는 행정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언론의 자유는 천부적 기본권으로 사법, 입법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자유를 행정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만 축소해석한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한편,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를 민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언론의 면책범위의 설정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기사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보도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 소송당사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백진주 (제주YWCA 부장) :** 시민단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제적인 협약이나 연대가 없이는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

**발표자 :**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언론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언론에 대한 규제는 행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 자본금이라든지,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요건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사이버 언론매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가는 아직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같은 경우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약이나 연대가 없이는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법은 항상 실제상황보다 뒤쳐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법으로서 그 틀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제 의견이 지나치게 언론을 두둔하는 양 비쳐진 듯하나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반 위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행정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한정시킨 것은 아니며, 당연히 사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자유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한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 형사상으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민사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민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당사자는 유족에 국한됩니다.

**사회자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앞으로 중재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소장, 제주대 정의과 교수) :** 이번 총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다소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1년에 한 번꼴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그 역할 강화를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총장 :** 발표자도 언론중재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이에 동감하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견해를 적극 수렴하여 중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오춘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사무국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조정기능에 국한되어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 피해자가 한 청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를 이용하는 국

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관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일반 국민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이용방법, 절차 등이 보다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자 :** 언론중재위가 언론보도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조정기능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중재위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국민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통합과 중재대상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론보도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손해배상 문제까지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시도에 지방중재부를 설치하여 언론중재신청을 보다 원활히 처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유근 (한마음병원장) :** 지난 의약분업 분쟁과 관련, 의사회의 입장이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언론중재위의 이용 절차나 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뉴스의 선택은 편집자의 권한이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사안을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거나 아예 보도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어떤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은 항상 대

립적이며,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견해가 왜곡되었다거나 누락되었다거나 편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언론이 어느 단체나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사항은 중재위원회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재위원회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중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그 보도와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보도내용이 왜곡되었다든가, 당사자 주장의 일부를 삭제하여 전체적인 취지가 달리 전달되었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를 찾도록 관련 법률의  
통합과 중재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위원장 :**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책임 못지 않게 언론의 자유 역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감하시는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는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분산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단일법을 제정하고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전치절차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법이 제정된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신속하고 보다 완벽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제도의 현 문제점을 적확히 지적하고 중재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양경승 변호사와 활기차고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강용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최 선 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활동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보급으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사이버 스페이스에 난무하는 개인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자직에 대한 일정한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 관행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단계의 편집, 가공단계를 거쳐 뉴스로 만들어지는 조직활동인 전통적인 저널리즘 패러다임에 대한 인터넷의 도발인 것이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언론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업계나 학계는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와 파급효과는 이용자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이며,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변화의 주체가 기술사업자, 정부이며, 이용할 사람들은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신문인지, 방송인지, 컴퓨터인지, 전화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융합미디어를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누구를 위해서 왜 디지털 기기로 바꾸어야 하는지, 과연 디지털 단말기들이 그들에게 폭넓은 선택, 상호작용, 심층적 정보를 줄 것인지 수용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매체 융합은 소비자에게 편리성, 효율성, 융통성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정책이나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큰 혼란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적 또는 법리적 해석의 근거가 되었던 많은 요인들이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없어졌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수용자의 권익찾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관련된 쟁점들을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현재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

답자 중 19.5%가 뉴스를 보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관련 뉴스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신문, 텔레비전보다 중요한 뉴스미디어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권이 인터넷 뉴스를 인정하게 된 것은 1998년부터 권위 있는 풀리처상이 온라인 저널리즘도 풀리처상 공공봉사 수상후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터넷은 이제 확실한 뉴스매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일 대 다수의 전통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과정과 달리, 일 대 일, 일 대 다수, 다수 대 다수라는 융통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과 지면의 제약 때문에 복잡한 게이트 키퍼와 편집과정이 필요한 기존의 방송, 신문과 달리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얼마든지 심층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시설투자가 법적으로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방송, 신문과 달리 시설투자 없이 사이트 개설만으로 글, 그림, 소리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크고 작은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의 또 다른 장점은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틀에 짜여진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장점을 살려 자유자재로 관련 정보에 링크 시키면서 스스로 뉴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관련기사와 참고 자료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매우 다른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뉴스의 이용자는 더 이상 수용자가 아니라 뉴스의 생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기존 신문의 디지털 뉴스 전략은 기존의 전자신문의 틀을 벗어나 각종 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로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신문사들은 거대한 종합정보 산업으로 기업화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수용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신문이 거대한 종합정보 산업체로 전환했

을 때 신문의 공익적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의 현황을 보면 인터넷 뉴스가 이미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당당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뉴스는 수용자들이 이제 단순히 언론사 혹은 정보 산업체의 고객,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정보 제공자, 참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 크고 작은 시민들의 단체 또는 개인 언론활동이 탈제도 개인 저널리즘을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시민기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기존 언론의 나태한 취재관행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언론사의 높은 문턱을 생각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진입이 가능한 인터넷 뉴스는 정보복지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속보성과 게이트 키퍼의 생략은 인터넷 뉴스의 장점인 동시에 취약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둘 다 오보의 위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인터넷상의 정보왜곡 문제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다양한 생각들이 경쟁하는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으로서 민주주의 과정에 필요한 공론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사전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물을 익명으로 올리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도 힘들고 증거 보전도 쉽지 않아 사후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내용 문제는 음란, 외설물에 관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사실의 왜곡성, 편파성의 문제에 대해서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논리가 아직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표현물의 위법성 구성은 기존의 표현물의 위법성 구성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가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반론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누구나 치고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명예훼손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즉각 반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승패가 빠른 시간에 공개 토론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공개토론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기 힘들다. 공개토론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의 반박력보다는 토론참여자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설득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우선 사이버 스페이스에 진정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나 공론장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은 토론문화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공정하게 반론권이 행사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사후 피해구제 방안이 나오도록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혁명은 수용자에게 거의 무한정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다. 물론 다매체, 다채널, 상호작용적, 탈제도적 미디어 상황은 수용자에게 선택과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민주주의론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소비자"는 여전히 주어진 정보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소비자에 불과할 뿐이며,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오히려 정보의 불평등한 소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용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이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 집단에게 편중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청자 권리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 조항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통합방송법이 미디어 융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렵게 준비하고 통과된 이 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위원회가 미디어 융합 규제체제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이러한 정책과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수용자운동은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다. 활동의 전문성과 다른 단체와의 연대성이 없는 개별적인 모니터 활동은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물 뿐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틀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용자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권리 찾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방송법 시행으로 확장된 시청자 권익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철저한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시장의 재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on-line 수용자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상당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자,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가상공간에서의 수용자 운동),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시민 저널리즘). 가상공간에 대안적 미디어를 만들어 수용자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디지털 방송의 공공성 문제와 정책적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토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가 진정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규범을 만드는 것도 수용자들의 몫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메시지를 감시하는 것, 가상공간에서 즉각적인 반론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수용자 운동과제이다. □

# 토 론

사회장공자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명예훼손 문제나  
반론권 문제에 대해서 중재위는  
적극 대처해야

**사회자 :**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이제 실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파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진단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두드러져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용자의 권리 찾기에도 NGO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임병록 (중부일보 논설실장) :**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역할, 영역이 확장되고,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명예훼손 문제나 반론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춘길 (한빛일보 주필) :** 제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였지만 미디어 운영의 영역 즉 인적인 측면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나 수용자 권리의 보장이 입법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수용되어야 할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는 언론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편 언론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확대뿐 아니라, 인적 구성, 중재위원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언론현장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언론은 이제 고루한 언론 권위주의에 빠져 인터넷 언론을 무시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 자료가 활용되면서 언론의 기사도용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무책임한 기사내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병섭 (충청일보 사장) :**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언론의 대처 방안들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터넷 저널리즘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권 언론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인터넷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훈련받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한 무책임한 기사내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 :** 인터넷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제반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 변화의 양상을 모두 다루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언론인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편 인터넷의 공론장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규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특수하고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매체 규제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합매체들에 대한 개념규정이 아직 불분명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보다는 시민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위의 역할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김병철 (중재위원)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으며 민법상으로는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은 언론기관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민법상, 형법상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경우 언론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터넷 방송 또한 정기간행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종호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 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언론중재위의 기능이 단순히 중재역할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대한 권고·계도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언론중재위의 역할 범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한편 최근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뚜렷한 관점이 부재한 것 같은데 언론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정기간행물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허근녕 (중재부장)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언론중재위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위의 권한과 기능 밖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재위의 기능과 관련한 법 조항은 정기간행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터넷 언론을 정기간행물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현실을 예단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중재위의 기능과 역

할의 제조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광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 이번 토론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 유 (청주교도소장) :**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도 전통적인 언론으로 개념지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언론으로 규정한다면 인터넷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조적의 건전성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론을 게재한다거나 그저 인내하는 방법 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각국이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인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10여 년 전, 수년 안에 활자매체는 지각변동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이후 이와 관련한 많은 언론학자들의 전망이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대안적 미디어의 출범은 언론매체 환경에 대한 많은 예견 내용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언론 개념의 범주와 상이한 인터넷 미디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언론학자로서의 발표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개인의 명예훼손뿐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 매체발달사를 보면 초기 신문의 경우 지금의 인터넷과 유사한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언론학계에서 “인터넷은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매스미디어라는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라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용어들이 새롭게 주창되고, 정립되어 가고 있는 다소 혼란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 먼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전통적 개념의 언론으로 새로운 매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 독일, 스웨덴, 영국의 언론피해구제 관련 기구 등을 방문해서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반론권이나 명예훼손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입법화가 이뤄진 나라는 없으며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날 수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스웨덴 신문평의회와 프레스 옴부즈맨은 등록된 신문사의 인터넷 신문상의 잘못된 보도는 등록된 신문사의 일반적인 보도행위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반론보도청구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위원회는 당장 해결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해외언론계 시찰기

권 우 동  
조사연구팀장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이병훈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신문평의회(Ontario Press Council)와 미국의 LDRC(Libel Defense Resource Center) 등 언론피해구제 관련 기관을 시찰했다. 방문기간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 신문평의회 의장 Doris Anderson M, LDRC 사무국장 Sandra Baron M 등을 만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신문사를 방문, 사설면 편집인 John Diaz 씨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언론매체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토론을 가졌다. 이번 시찰에는 권우동 조사연구팀장이 수행했다.

편집자 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만큼 그 절대적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논란을 벌여온 주제도 흔하지 않다.

민주주의 시행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대사만

돌아보더라도, 처음에는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구와는 달리 이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 내부의 필요에 의해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경험을 거칠 기회도 없이 외부에 의해 이식된 탓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체험 속에서 꽃피운 선진 제국의 언론은 어떠하며 그들이 어떻게 언론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조화시켜 나가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시찰에서는 방문처 인사들과의 면담과정에서 ①북미지역의 명예훼손법과 최근의 경향, ②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언론의 대응 혹은 시각, ③사이버 스페이스 등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질의·토론을 가졌다.

## 캐나다의 Ontario Press council

짧은 방문기간 동안 캐나다의 전반적인 언



론상황 일반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시찰단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언론자유규제기구인 온타리오신문평의회를 방문하여 Doris Anderson 의장과 Mel Sufrin 사무총장을 면담, 의미 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1994년도에 위원회 시찰단이 방문한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온타리오신문평의회와 불만호소절차규정 및 심의절차 등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신문평의회 정관이 1998년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회원 언론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면에 자신들이 신문평의회 의 구성원이라는 사실과 평의회 기능에 관한 간략한 개요와 그 주소를 게재토록 한 점이다.

### 1. 불만처리절차

- 스트레이트 기사, 의견 및 논평 기사 및 광고와 관련 취재과정과 공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불만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불만신청 접수 후 언론사가 불만신청인에게 사전에 사과하지 않았거나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평의회는 불만신청서 사본을 언론사에 보내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 불만신청인이 해당 언론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을 경우 바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며 이럴 경우 평의회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불만신청인이 직접 해당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문제된 기사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각할 수 있다.

- 언론사 자체를 상대로 한 불만신청 외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한 불만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 신문평의회는 5명의 평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심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시민대표 2인과 2명의 언론사측 대표로 구성된다. 불만신청과 직접 관련된 언론사측 위원은 배제된다.

- 평결에 이르면 언론사는 평의회가 평결에 이른 배경을 포함한 평의회 결정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 2. 최근의 불만신청 처리결과 및 경향

온타리오 신문평의회는 1998년 115건, 1997년은 119건의 불만신청을 접수, 처리하였다. 이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 546건이 접수되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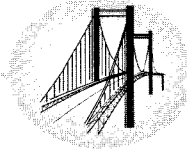
1998년 접수된 사건 가운데 30건이 정정되어 전년도 피해구제율 27%보다 다소 낮아진 26%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신문평의회 불만처리 신청 및 처리 현황

|               | 1998 | 1997 | 1992-1996 |
|---------------|------|------|-----------|
| 평결건수          | 11   | 10   | 427       |
| 피해구제건수        | 30   | 32   | 493       |
| 취하 또는 기각된 사건수 | 63   | 64   | 1,766     |
| 계류 중          | 11   | 13   | -         |
| 불만신청건수        | 115  | 119  | 2,733     |

Mel Sufrin 사무총장은 “접수된 불만신청사건 중 80%가량이 신문사와의 대화과정에서 해결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평의회가 직접 간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인들의 평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으며, 사건처리에 대한 일반공중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한다. 왜냐하면 평의회의 평결 등 활동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되기 때문이다.

### 3. 캐나다의 명예훼손법과 언론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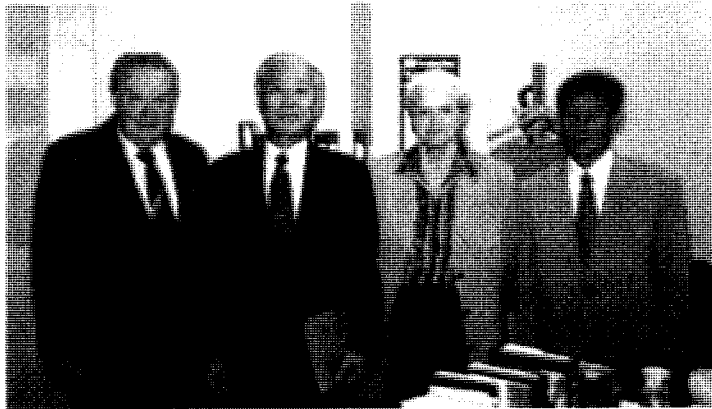
캐나다와 미국은 같은 대륙에 속해있지만 현재의 두 나라의 명예훼손법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사실 1964년도에 미 연방대법원이 설리번사건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채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 나라의 명예훼손법은 놀라 우리 만치 비슷하였다. 이것은 양국이 영국의 관습법적 명예훼손법의 전통에 오랫동안 머물러왔기 때문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1995년 7월 20일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판결에서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에서 확립된 '현실적 악의' 기준을 캐나다 대법원이 수용해야 한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토론토 정신위생학회 및 그 법률 대리인이 캐나다 주정부의 법률고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하여 160만 C\$를 배상토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캐나다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한 캐나다관습법을 지지했으며,

특히 정부관료들이 원고인 명예훼손소송에서 반드시 현실적 악의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오래된 주장을 거부하였다.

캐나다의 명예훼손소송 건수는 미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결에 이르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대법원의 경우 1987년~1991년까지 5년간 단지 27회의 명예훼손 판결을 했으며 그 배상규모는 평균 3만C\$였다. 1992년~1995년까지 4년동안은 24회의 판결에 평균 2만C\$ 이하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근래 몇 년간 손해배상액수는 점

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법원이 정정보도 등의 형태로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의회 사무총장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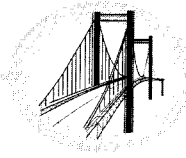


캐나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한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이러한 법적 환경 하에

서 캐나다 언론은 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별 언론사 또는 언론단체에서는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움부즈맨을 고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문평의회제도 등을 활용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지역별로 신문평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Ontario Press



Council외에도 Atlantic Press Council, Conseil de press du Québec, Manitoba Press Council, Alberta Press Council, British Columbia Press Council 등 모두 6개가 있다고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평의회인 Windsor Media Council(1971년 설립 당시의 명칭은 Windsor Press Council이었으나 라디오와 TV에 대한 불만신청을 다루면서 개명)이 1998년 중반에 해체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옴부즈맨을 고용하고 있는 매체는 토론토 지역에서는 Star지와 The Canadian Broadcasting Corp. 등 2개사에 불과하여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고 여겨졌다.

흥미로운 점은 Toronto Star지의 경우 과거에는 이 신문에 대한 불만신청건수가 신문평의회에 접수된 사건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편집자란을 통해 일반 독자들로부터의 불만을 수용하고 옴부즈맨을 고용하는 등 자체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만건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 4. 뉴미디어 규제에 대한 견해

캐나다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법률이 없다. 이와 관련해 신문평의회에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불만신청이 한 번 제기된 적은 있으나 평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캐나다 방송협회가 설립한 불만처리기구)에서 처리했다고 한다.

신문평의회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캐나다 내에서 이러한 규제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법적으로는 외설 또는 명예훼손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LDRC와 언론의 명예훼손 대처방법

### 1. LDRC(Lible Defense Resource Center)

#### (1) 성격

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점증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일게 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인식아래 1980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ABC, NBC, AP 등 미국 굴지의 언론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 자료센터가 LDRC이다. 즉, LDRC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그리고 관련 법률분야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 전개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언론사들에 의해 조직된 일종의 정보교환소(information clearinghouse)인 셈이다.

현재 멤버십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 방송사, 케이블사업자, 프로그램제작자에서부터 미디어전문보험사까지 9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단(the Defense Counsel section)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까지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로펌이 망라되어 있다.

#### (2) 주요간행물 및 활동

##### ① LDRC 50-State Surveys

매년 미국 50개 주법원, 미국의 자치령 준주법원(the U.S territories courts), 콜롬비아특구, 연방순회항소법원, 캐나다까지 망라하여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담은 서적으로 매년 관련자료가 업데이트된다. 이 책자를 처음 발간할 때인 1982년에는 한 권으로 나왔으나 지금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3권으로 나누어 발간하며, 미국의 언론관련법 또는 소송에 관해서는 이 책자에 거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LDRC Bulletin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관련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액수 등 최근 통계결과들과 기각 또는 약식판결결과 등을 게재하고 있다.

### ③ LDRC Libelletter

LDRC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월간지이다. 언론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그리고 관련법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관련 입법사항이나 불법행위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다.

### ④ LDRC 'BANKS' 운영

LDRC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언론사 측 변호인들에게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LDRC는 1,200여 개의 변론이유서를 수집하여 쟁점별, 사물관할,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 주제어 등으로 색인화한 'Brief Bank', 원·피고 측의 전문가감정인들의 명단을 수록한 'Expert Witness Bank',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관련소송에서 이뤄진 배심에 대한 실시(Jury Instruction)를 모아둔 'Jury Instruction Bank'를 운영하고 있다.

### ⑤ Biennial National Conference

전미신문협회와 전미방송협회의 공동후원으

로 미디어 전문변호사들이 참가하는 워크샵. 언론법의 실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주제를 선정, 격년마다 이틀간에 걸쳐 논의가 이뤄진다.

### ⑥ Annual Dinner

저명한 판사, 변호사, 기자, 공직자 등 가운데서 탁월한 연사를 초청, 강연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LDRC가 매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공로가 큰 사람에게 Willam J. Brennan, Jr. Defense of Freedom Award를 시상한다.

이밖에도 LDRC는 언론과 사법부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공중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 예컨대 고등학생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법에 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변호사 협의회를 상대로 LDRC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각 변호사들이 모의상황을 가정해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LDRC의 연간예산은 70~80만 달러이다. 사무국장인 Sandra Baron 여사에 따르면 이 조직의 정규직원은 6명에 불과하지만 잘 조직된 로펌 회원들의 협조 하에 각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예산은 회원들의 회비와 간행물판매, 그리고 Annual dinner를 통한 모금 등으로 충당된다.

## 2. 명예훼손법 개혁론과 소송의 동향

앞서 본 캐나다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개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인접국인 미국에서는 1964년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이후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독자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공적 행위에 대한 모든 보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무수행에 관해 부정확한 보도가 있게 되면 정부관료들은 해당매체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서구제국에서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서구사회의 일반적 입장이 미국의 법적 원리에도 똑같이 작용하는데 반해, 유독 명예훼손 분야에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치적, 법적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1) 명예훼손법의 개혁론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현실적 악의원칙이 수립된 이래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계속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명예훼손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많은 개혁법안이 주장되어 왔다.

그 중의 하나가 LDRC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명예훼손의 정정·해명에 관한 통일법(Uniform Correction or Clarification of Defamation Act)이다.

1989년 전국주법단일화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는 1989년부터 서로 다른 미국 각주의

명예훼손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통일명예훼손법(Uniform Defamation Act)을 1991년말에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명예훼손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구별하여 배상액을 입증 가능한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기사취소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는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도 취소전의 금전적 손해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LDRC는 이 법안에 대한 미디어 그룹의 입장을 평가하고 제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결국 설리번사건 이후 확립된 언론자유수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있다는 언론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이 법안은 좌초되고 말았다. LDRC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의 정정·해명에 관한 통일법'이라는 수정안을 제시, 1993년 8월에 전국주법단일화회의에서 압도적인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보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정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언론은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충분한 정정, 해명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 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정정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언론매체가 이 법에 정한 정정 등을 이행한 경우 입증 가능한 경제적 손해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추정적,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배상도 불허된다.

- 정정 요구의 적합성, 정정의 충분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



·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모든 표현매체이며 명예훼손 이외에 프라이버시 침해, 감정적 가해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에 널리 적용

이 법안은 현재 American Bar Association House of Delegates의 승인을 받은 후 각 주에 입법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손해배상의 과도한 제한 등 피해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나 언론으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명예훼손소송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LDRC의 사무국장인 Sandra Baron은 “입법화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다른 몇몇 주의 의회에서 논의됐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오직 North Dakota주에서만 1995년에 채택되었다. 현재 플로리다, 미시간, 조지아주 등에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몇개 주에서는 고용과 계약상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 때문에 언론보다는 경제단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각 주에서 입법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우선, 이 법이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로비스트를 고용, 의회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언론의 생리와 원칙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어렵다. 각 주의 언론협회에서는 단순히 언론사의 세금절감 등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 (2) 소송의 동향

LDRC는 2000년 2월에 지난 20년간의 미국

에서의 언론소송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Sandra Baron 사무국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 소송동향의 특징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해 지난 20년간 조사를 수행하면서 대조적인 경향을 발견했다. 총 판결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피고 언론매체측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원고가 승소한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수는 평균적으로 1980년대보다 1990년대 들어 실질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해외동향’ 참조)

· 소송건수의 감소경향 : 80년대 261건 → 90년대 177건

· 주법원에서보다 연방법원에서의 언론사 승소율 높음

그러나, 연방법원에서의 손해배상액수는 주법원보다 높음

· 입증책임의 부담이 다른데도, 공인과 사인간의 승·패소율에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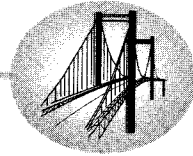
· TV매체의 승소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47.8%), 신문매체 승소율은 저조 (32.7%)

· 총 손해배상액수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상승

## 3. 미국 언론의 명예훼손 대처방법

일반적으로 언론은 명예훼손소송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문평의회나 옴부즈맨제도 등을 두거나 고문 변호사제도, 피소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로 이러한 언론 내부



의 자율기구를 선호하기보다는 법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문평의회와 뉴스옴부즈맨, 보험제도,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San Francisco Chronicle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자율규제기구

신문평의회나 뉴스옴부즈맨제도는 언론의 자발적 참여와 비용부담 등 협력을 필요로 하나 미국에서는 언론의 외면으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3년 20세기 기금(Twentieth Century Fund)의 후원으로 전국차원의 신문평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언론사의 외면으로 1984년 폐지되었고, 현재에는 미네소타주에서만 뉴스평의회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뉴스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신문사는 1,520여 개 일간지 중 40여 개사에 불과하다(Editor & Publisher, March 7, 1998, pp.16-17)

### (2) 보험제도

명예훼손 등으로 패소할 경우 언론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수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LDRC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평균 손해배상액은 5,354,154달러, 중앙치는 370,000달러로 1980년대 평균배상액 1,444,486달러, 중앙치 200,000달러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언론사가 소송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를 전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언론사가 많이 있으나, 그 내실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LDRC의 사무국장은 밝혔다.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였으나 손해배상액수의 급증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역시 좁아졌다는 것이다.

### (3) San Francisco Chronicle의 경우

이 신문사는 1865년에 창간된 조간신문으로 미국 10대 일간지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최대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으며 허스트사가 최근 이 신문을 인수했다.

Chronicle지는 대부분의 미국 신문이 그러하듯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신문의 Editorial Page Editor인 John Diaz에 따르면, 독자를 대변하는 옴부즈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약 1년반 전에 일요판에 Editor's column란을 신설하여 독자들의 의견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3자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관심사항은 낙태 등 사회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며, 주당 평균 2~3건 정도, 많게는 4~5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된다. Hot issue에 대해서는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

**통신사 기사를 독자적으로 재편집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손해배상판결**

-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 -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이 ‘옴진리교’의 신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스포츠닛폰신문’ 도쿄본사를 상대로 5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 제17부는 2000년 3월 30일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50만엔의 지불과 취소광고 게재를 명했다.

동 신문은 1996년 6월 29일자에서 ‘교토통신사’의 기사를 독자적으로 편집하여 ‘옴·헤로인 밀수’, ‘태국에서 귀국한 신자 체포’ 등의 제목으로 ‘옴진리교’의 신자로 보이는 남성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교토통신사’의 송부기사에 대하여, 제목이 의문형이고 ‘옴진리교’ 신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이라든가 객관적인 수사상황을 기재하고 있어 “원고가 ‘옴진리교’ 신자라고 단정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포츠닛폰신문’은 송부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①지하철 사린사건의 용의자가 태국에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②원고가 태국 등지에 10여 회 도향한 것으로 보아 교단의 조직적인 밀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사내용을 추가했다.

이러한 추가적인 기사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남성이 ‘옴진리교’ 신자이며 사린사건의 용의자가 밀수사건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있다”고 판단했다. 또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고 사린사건의 용의자가 태국에 잠복하고 있다는 진술을 기사화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 신문은 4월 11일 항소했다.

(『新聞協會報』, 2000. 4. 18.) □

**구청장의 해외시찰 성격에  
대해 비판한 언론보도는 의견이나  
논평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 -

공적인 비용으로 중국과 유럽을 방문했다는 ‘도쿄신문’의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세 명의 구청장이 동 신문의 발행사인 ‘주니치신문사’를 상대로 5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 제18부는 2000년 3월 27일 “기사의 비판내용이 의견이나 논평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도쿄신문’의 1999년 1월 19일자와 23일자의 조건, ‘練馬구청장도 공비(公費) 중국여행’, ‘알프스 관광도 공비로’ 등의 제목으로 공비에 의한 시찰의 대부분을 중국과 유럽 관광으로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구청장 岩波씨와 구청측의 설명도 함께 게재

했다.

재판부는 기사내용과 岩波씨의 지위로 비추어 보아 기사의 대상사항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 “기사는 전적으로 사적인 관광여행에 공비를 사용했다는 취지가 아니며 공무로 짜여진 일정 속에 실제로는 관광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였다.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은 기사에 나타나 있으며 ‘관광’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무로서의 여행의 행정효과나, 공비의 사용이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구민이나 보도기관으로부터의 비판은 민주적 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취재나 공개된 자료에서 ①시찰의 실태가 혹시 관광여행은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②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시찰과 구정(區政)간에 합리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 “기사와 제목은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新聞協會報』, 2000. 4. 11.) □

## 사진촬영을 어느 정도 용인하였다 해도 정당한 표현 범위를 벗어난 사진게재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미국 샌디에이고의 일본인 교수 살인사건을 둘러싼 <週刊文春>의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교수의 부인이 발행사인 문예춘추(文藝春秋)를 상대로 1천5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 제5민사부는 2000년 4월 28일 “기사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라비아(gravure) 사진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번복하여 문예춘추에 35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문예춘추는 <週刊文春> 1996년 5월 25일호부터 4주 연속으로 원고의 인터뷰기사와 영결식 사진을 게재했다. 1심에서는 그라비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진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1백5십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사는 미망인인 원고가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지 않고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취재과정에서 요청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결식에서 언론의 사진촬영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되므로 “기사, 사진 모두 위법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라비아 사진은 ①영결식 모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목과 함께 보면 보도사진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②상복 모습의 원고가 사진기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있는 장면 등이 그라비아로 게재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하면서 용인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 “정당한 표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문예춘추는 5월 9일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0. 5. 16.) □

\* 편집자 주

그라비아 : 사진제판에 의한 요판(凹版)의 하나로 사진처럼 농담(濃淡)이 표현된다.

##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보다 효과적인 사후구제를 위해 종전보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주요 언론사들이 표명한 침해예방과 피해구제 대응책들이다.

### 〈교토통신사〉

1. 기자, 데스크 교육 : ① 편집강령에 근거하여 취재, 보도한다 ② 신입사원 연수, 취재 경험 4년생 기자 연수, 해외특파원 연수, 데스크 연수를 강화한다 ③ 기자와 데스크는 '기자핸드북', '기사작성 기준집'을 상시 휴대, 인권을 배려한 보도에 힘쓴다.

\* '기자핸드북'은 경칭, 호칭의 사용법과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기사작성 기준집'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보도의 자유, 구체적 사례, 익명보도에 대한 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2. 출고 확인시스템 : 원고는 출고부(정치부, 사회부 등)에서 담당데스크와 당일 총괄데스크가 이중으로 확인하며, 이를 다시 '뉴스센터'가 전반적인 확인절차를 밟는다.

3. 출고 후의 검증 : 매일 오전 편집국 데

스크회의에서 전일 출고된 원고를 점검하며 독립부서인 '기사심사실'에서도 출고원고를 확인, 주1회 기사심사실 회보를 배포한다.

4. 불만, 항의에 대한 대응 : '뉴스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법무실'과 상의하여 대응한다. 대응원칙은 ①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다. ②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조사한다. ③정당한 불만이나 항의에 대해서는 기사작성 경위를 설명한 다음 사죄할 것은 솔직히 사죄하고 정정할 것은 신속하게 정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죄와 정정을 함께 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 〈아사히신문사〉

1. 보도기준을 모은 '결정집' 외에 '사건보도지침서'가 있는데 2000년 4월 1일 '수사단계 사건에서의 단정적인 제목의 억제', '용의자의 호칭', '연행사진이나 용의자의 얼굴사진 사용억제' 등 피보도자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도지침을 개혁했다.

2. 심사기구 등 : 7인으로 구성된 기사심사부에서 매일 '기사심사보고서'를 발행한다. 또 외부의 전문가 5인으로 '지면심의회'를 구성, 그 심의내용을 지면에 공표한다. 편집국내에 '인권문제소위원회'를 설치, 인권과 관련한 지면상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한다. 특히 새로 차장으로 취임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초청, '인권연수'도 한다.

3. 독자대응시스템 :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의 피해회복과 독자로부터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인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다.

1989년의 '산호초 사건'을 계기로 '홍보

실'을 신설, 대응하고 있으며 도쿄 본사의 경우 실장을 포함 2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한 불만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기사를 출고한 각부에 연락, 주의환기와 함께 정정, 사과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대한 오보의 경우에는 정해진 형태의 사과, 정정뿐 아니라 그 경위나 원인의 규명, 반성과 개선점 등을 '검증기사'로 공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조사의 상세한 보고를 포함하여 검증 특집의 형태로 지면에 공표한다. 사내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한 사례도 적지않다.

〈요미우리신문사〉

1. 인권침해 예방책 : ① '보도와 인권'에 관한 지침을 책정, 발표했다.

〈보도되는 입장·보도하는 입장-요미우리신문사의 '보도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1982년), 실명주의보도에서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해야 할 사례라든가 그 기술원칙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해설하고 그밖에 취재, 보도에서 인권상 배려해야 할 점을 수록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②사장 직속의 법무실을 설치, 보도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편집국과는 독립된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임한다.

③기자교육에 철저를 기한다. 신입사원 연수와 기자 재교육을 통해 '보도와 인권'에 관한 강의를 반드시 실시한다. 부장, 데스크 그리고 변호사가 참가하는 법무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미 25회에 이르고 있다.

④ 최근 10년 사이에 취해진 개혁의 구체적인 사례 : ㉠용의자 호칭의 사용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의 주소 표기 간략화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의 얼굴사진 게재의 억제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한 기사 작성 ㉤익명보도의 확대 ㉥연행사진의 게재 억제

2. '보도피해' 제소가 있었을 때의 대응 : 사내 창구로는 '법무실' 외에 '신문감사위원회'라는 독자상담부서가 있다. 법무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부서에 대해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하고 직접 상대방과의 절충도 한다.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정,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침이며 중대한 오보의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정정, 사과기사 외에 오보의 원인, 경과를 밝히는 검증기사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감사위원회는 매일 기사심사를 하며 외부전문가에 의한 '미디어 시평(時評)' 란도 있다.

〈니혼게이지신문사〉

1. '독자응답센터'에서 지면에 대한 의견, 문의, 불만, 항의 등을 접수, 처리하며 하루 200건을 넘는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케이스를 비롯한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련 부서에 연락,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법무실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E-mail을 통해서도 받고 있는데 '독자응답센터' 접수분과 함께 명백한 오보일 경우에는 정정, 사과 등 신속한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침이다.

2. 편집국내에 독립적인 '지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매일 지면심사를 한다. 편집 각부의 부장급 10인으로 구성, 매주 1회 회의를 갖고 심사결과를 회보에 발표한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은 편집국 전체의 취재, 보도지침으로서 즉각 실행, 활용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3. 기자연수 강화 : 취재, 보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입기자연수', '3년 생 기자 연수', '10년 경력기자 연수', '차장 연수', '신임부장 연수'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도쿄신문·주니치신문〉

1. 독자응답실을 설치, 하루 평균 120건의 독자의견, 불만, 항의 등을 접수하여 편집국장 과 편집국 데스크가 관계 부서에 연락, 직접 독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여 정정, 사과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고 개별적으로 배경설명까지 해준다.

2. 법무위원회를 두어 소송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3. 이동편집국을 두어 편집국 간부가 각지로 파견되어 독자의 소리를 직접 들어 지면 제작에 반영하고 있으며 불만, 비판, 항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도 등에 대해 독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신문사측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4. 매일 오전, 오후에 열리는 부장회의에서의 지면검토 외에 지면심사위원회가 매주 1회 편집국 각 부장에게 지면비평과 지면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사외인사에 의한 지면비판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5. 인권담당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변호사를 초청, 보도와 인권에 관한 연수와 의견교환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사〉

1. 이의, 불만신청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를 '독자 서비스실'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편집국으로

부터 독립되어 있다. 중요한 이의, 불만신청에 대해서는 정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정정기사 형식과는 달리 오보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정기사도 게재하고 있다. 그것도 1회만으로 끝내지 않고 수회에 걸쳐 검증결과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소송제기 사실, 쌍방의 주장을 지면에 보도하며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2. 보도와 인권에 관한 연수에 역점을 두고 있다.

(『新聞研究』, 2000년 4월호: 『新聞協會報』 2000년 4월 4일자) □

미국 법원,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에게 잇단 철퇴 가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은 캘리포니아 테하마카운티를 비롯 중국, 앙골라, 인도네시아, 쿠바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언론인 투옥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경없는 기자들'은 특히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캘리포니아주 글렌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새크라멘토 밸리 미러지(Sacramento Vally Mirror)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팀 쿠르스에게 미국 법원이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5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린 것은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팀 쿠르스는 캘리포니아의 전직 경찰 듀이 앤더슨이 테마하 카운티 기동대 재직 중 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가 고등법원에서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 노엘 왓킨스 판사로부터 법정모독죄로 5일간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는 살인사건에 관한 증언을 거절한 마린 인디펜던트 저널(Marin Independent Journal)의 전직 기자에게 마린카운티의 한 판사가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도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취재원 비닉법(shield law)은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Editor & Publisher*, 2000. 3. 6)



## 영국 일간지, 취재원 보호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승리

익스프레스지(The Express)가 자사 금융부 기자인 레이첼 베어드의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 익스프레스지는 베어드 기자가 입수한, 엘튼 존 경이 연루된 향소심과 관련한 기밀서류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영국 공문서보관소의 로드울프 경은 고등법원 판결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법원의 명령이 기자들로 하여금 일반적 직업상 규범(professional standards)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입증하여

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은 신문사가 입수한 자료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로드울프 경은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 밝히는 것이 재판의 이익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비록 필요했다 하더라도 밝히기를 거부하는 베어드의 행동을 받아들였어야만 했다.”라고 하였다.

익스프레스지의 부편집장인 크리스 블랙허스트는 “상고심에서 이기게 되어 무척 기쁘다. 우리는 중요한 원칙 즉,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능력이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고 느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언론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이 상고심에서 지지되어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베어드 기자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단히 기쁘고, 이 같은 판결은 바로 기자들이 자신들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장 논쟁거리가 되었던 법률상의 서류들은 엘튼 존 경이 최고의 회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것이었다.

(*Press Gazette*, 2000. 4. 28.)



## 미국 LDRC, 지난 20년간 언론소송판결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미국 LDRC(Libel Defense Resource Center)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간

에 걸쳐 언론 관련 명예훼손소송판결 경향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언론 관련 소송판결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10년간 명예훼손소송판결 수는 총 261건, 연 평균 26.1건이었으나 1990년대는 177건, 연 평균 17.7건으로 판결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편 최근 경향을 보더라도 1990년대는 18건에서 23건 정도의 판결이 있었으나 1999년의 경우 단지 11건에 불과하여 1997년 22건, 1998년 18건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판결건수 11건은 199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소송에 연루된 매체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인쇄매체가 피고로 제소된 경우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인쇄매체(신문, 잡지) 관련 소송은 80년대의 204건에서 116건으로 감소하였으나,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관련 소송은 56건에서 58건으로 그 변화가 미비했다.

판결결과, 소송에 연루된 언론사가 승소하는 비율이 90년대 들어 다소 상승하였다. 1999년의 경우 11건 가운데 4건이 언론사가 승소하여 36.4%의 언론사 승소율을 보여 전년도 44.4%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19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피고측, 즉 언론사 승소율이 높아졌다. 1990년대는 174건 가운데 68건이 승소하여 39.1%를 나타내 1980년대의 35.4%(260건 가운데 92건 승소)보다 다소 높아졌다.

LDRC는 법원에 따른 승소율과 배상액의 차이를 조사하여 주법원보다 연방법원에서 언론사 승소율이 높지만 패소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오히려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손해배상액 및 중앙치(median) 손해배상액을 분석하면 주법원보다 연방법원

의 배상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방법원의 평균배상액은 6,650,082달러, 배상액의 중앙치는 462,500달러였으나, 주법원의 평균배상액은 1,967,743달러, 배상액 중앙치는 200,000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를 보였다.

원고의 지위, 신분에 따른 승소율은 1990년대 10년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90년대 사인이 제기한 88건의 소송판결 가운데 35건이 승소하여 39.8%의 승소율을 보였고 공적 인물이 제기한 67건 가운데 26건이 승소하여 38.8%의 승소율을 보여 원고가 공적 인물이든 사인이든 승소율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년간을 살펴보면 사적인 물이 제기한 소송이 34.3%(105건 중 36건)로, 공적 인물이나 공직자가 제기한 소송판결의 승소율 36.7%(139건 중 51건)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년간 원고의 신분에 따른 언론사의 승소율을 보면 사인인 제기한 경우 36.8%(206건 중 77건)의 승소율,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37.4%(193건 중 71건)의 언론사 승소율을 보였다.

언론매체별로 승소율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신문보다 TV매체가 피고로 제소된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방송매체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90건 가운데 언론사가 43건 승소하여 47.8%의 승소율을 보였다. 신문사가 피고인 경우, 80년대는 33.3%(162건 중 54건), 90년대는 31.4%(86건 중 27건)였으며, 20년간을 전체적으로는 32.7%의 승소율(248건 가운데 81건)을 기록했다.

1990년대와 1980년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80년대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평균

값과 중앙치값 모두 급격히 상승했다. 1990년대와 1980년대의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1990년대 평균 손해배상액은 5,354,154달러, 중앙치는 370,000달러로 1980년대 평균배상액 1,444,486달러, 중앙치 200,000달러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손해배상액 2,962,525달러, 손해배상액 중앙치는 200,000달러였다. 천만달러 이상의 배상액이 판결된 경우가 80년대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졌으며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도 80년대의 22.2%에서 33%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은 매체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배상액이 인쇄매체보다 높아, 인쇄매체는 배상액 중앙치가 189,000달러인 반면 방송매체는 412,500달러로 나타났다.

(Media Law Reporter, news note, Vol.28, No.8.; [www.ldrc.com/damag00.html](http://www.ldrc.com/damag00.html).) □

## 일본 신문협회, 인명존중의 관점에서 유괴사건 보도하는 방안 강구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는 2000년 5월 11일, 横滨시의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TV촬영 가부를 둘러싸고 유괴보도협정의 가협정에 이르기까지 5시간이나 걸렸던 사안에 관해 심의한 끝에 “인명존중의 관점에서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협정의 취지이므로 신청단계에서 촬영의 가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경사회부장회

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음은 유괴보도협정을 둘러싼 일본 언론계의 최근의 동향이다.

신문협회 편집위원회가 1970년에 결정한 “유괴보도의 취급방침”은 유괴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받아 기자클럽에서 잠정적으로 가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본사 편집책임자의 양해를 얻어 본 협정을 체결하도록 정했다.

TV매체에 대해서는 1984년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유괴사건을 둘러싸고 편집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재경사회부장회는 “사안별로 경찰서에서 떨어진 장소에 중계차를 대기시키는 방안과 회견촬영 횟수 제한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했다.

1999년 9월에 발생한 宇都宮시의 미치광이 유괴사건에서도 협정체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TV카메라의 촬영을 둘러싸고 경찰과 혼란이 생겼으며, 이어 12월에 발생한 오사카의 유괴사건에서는 민방측의 1개사만 대표로 촬영이 허용되었다.

협정의 운용상 문제가 있었던 1997년 8월의 구마모토시에서의 유괴사건 이후 경찰청은 각 지역에 지시하여 기자클럽과의 연구모임을 가졌다. 경찰측은 “협정하의 회견에는 몰래카메라나 TV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중계차나 사기(社旗)를 부착한 차량을 타고 갈 수 없다”, “피해자 사진의 제공은 가족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新聞協會報』, 2000. 5. 16.) □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라며,  
만약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회사가 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기술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경기중재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거성개발(대표이사 이 철 환)  
피신청인 : 기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0. 3.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기호일보 : 『수산정수장 건설 “재난예고” 시공사, 부실업체에 재하청』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24일자 1면)

내 용 : 인천시가 발주한 수산정수장 건설사업 시공자 가운데 하나인 삼환기업이 기술력 문제로 부실시공을 일삼는 회사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예산 낭비와 함께 품질관리 및 시민급수 문제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시공사인 삼환기업 등 8개 업체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남동, 연수, 중구 일대에 급수지원을 위해 지난 96년 착공, 오는 2001년 12월 완공예정인 남동구 수산동 6만6천3백24평에 1천4백56억원을 들여 하루 62만 3천t의 정수능력의 정수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는 『삼환기업이 인천시로부터 수산정수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하던 중 서전건설(주)에 23여 억원의 공사를 하청주었으나 이 업체가 다시 거성개발(주)에 재하청을 주는 등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전건설에서 재하청을 받아 정수장 핵심부품인 하부집수장치(STRAINER)를 시공하고 있는 거성개발(주)의 경우 서울 암사수원지, 강북 수원지 집수장치를 시공했으나 모두 하자가 발생하는 등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관련 업체는 『집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기간만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급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부실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이며 인천시민의 급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회사는 상수도정수장의 하부집수장치(STRAINER BLOCK)를 제조납품하는 기업체로서 기호일보 3월 24일자 1면 『수산정수장 건설 “재난예고” 시공자, 부실업체에 재하청』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기술력 문제로 부실 시공을 일삼는 회사로 지목했으며 불법으로 재하청을 받았다고 보도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서울 암사수원지, 강북수원지로부터 신청인 회사의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으며, 특히 암사수원지는 기존 하부집수장치를 3년(97, 98, 99) 연속 폐사의 제품으로 개량작업을 하였다. 또한 본 제품(STRAINER)에 한하여 국내 유일하게 ‘조달청 우수제품인정’을 획득한 업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3월 24일자 1면의 『수산정수장 ‘재난예고’ 시공자, 부실업체에 재하청』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가 발주한 수산정수장 건설사업 시공자 중 하나인 삼환기업이 부실시공을 일삼는 회사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재하청을 받아 정수장 핵심부품인 하부집수장치(STRAINER)를 시공하고 있는 거성개발은 서울 암사수원지, 강북수원지 집수장치를 시공했으나 모두 하자가 발생하는 등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거성개발은 인천 수산정수장 시공과 관련해서 삼환기업 하청업체인 서전건설과 정수장 하부집수장치

(STRAINER)제품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재하청 시공을 맡은 사실이 없으며, 서울 암사수원지에서 시운전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거성개발의 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규명된 바 없고, 강북수원지 시공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호일보 2000년 4월 7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재목(삼환기업 “재하도급 없다” 주장)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호일보 : 『정정보도』제하의 기사(2000년 4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KBS가 9시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여당 편들기를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부산중재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 권 상)

피신청인 : 부산일보

종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0. 3. 31  
처 리 결 과 : 함 의

## 보도내용

부산일보 : 『KBS가 정권 전리품인가』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5일자 6면)

내 용 : 4·13총선과 관련, 공영방송인  
KBS가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보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KBS의 선거관련 보도는 여야의 공천자 명  
단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보도시간을 적절히 안  
배하는 등 비교적 균형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14일 KBS의 간판뉴스인 '9시뉴스'  
에서 "총선 D-30일을 맞아 지역별로 관세를  
분석하는 순서를 마련했다"며 서울 지역 관세  
를 분석한 뉴스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이날 KBS는 "현재 '각당 자체 관세분석' 결  
과, 민주당 우세 21곳, 한나라당 우세 14곳"이  
라며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서 여당의 우세'  
를 예상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민의 방송인 KBS의 공영성과 선거중립 의  
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들이 곳곳에서 포  
착된다.

먼저 KBS가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각 당  
자체 관세분석'에서 '각 당'이 어느 당인지  
불분명하다. 민주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아니  
면 또 다른 정당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자료에 근거한,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  
적 보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도 이 때  
문이다.

또 '자체 관세분석' 역시 자의적이고 객관

적이지 못하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우  
세를 주장하고 있는 선거전의 특성을 전혀 반  
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략)

더 큰 문제는 KBS가 매일 지역별 관세를  
분석해 보도하겠다고 밝힌 점. 그러나 출처불  
명의 자료를 인용한 이같은 보도는 얼마든지  
방송사 입맛에 맞는 특정 정당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 나아가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뉴스가 노골적으로 '여당편들기'를 시  
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도 계속 관세분석 뉴스를 내보내겠다는 것은  
"여권 편향식 보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  
지를 내비친 것은 아닌지?

KBS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이상 방송의  
균형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  
점이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은 지난 3월 15일 기사에  
서 "KBS가 3월 14일 9시 뉴스를 통해 방영된  
'총선 D-30 관세 분석' 리포트에서 출처가 불  
분명한 관세 분석을 근거로 여당편들기를 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리포트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각 당의 자체관세분석에 따른 것임을 리포트  
내용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민주당 21곳, 한나  
라당 14곳은 여야의 핵심당직자들이 전하는  
그 당시의 관세로 여야 모두 당시 시점에서  
민주당의 다소 우세를 인정했다.

피신청인은 정당의 관세 분석이 아전인수격  
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내놓는다고 했  
지만 서울지역에서 현저히 뒤지는 자민련과  
민국당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내

놓을 뿐 치열한 접전 중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비교적 정확한 조사를 하고 공식발표는 하지 않지만 취재과정에서 자료입수는 가능하다.

그러나 당에서 조사 결과를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지지율 차이까지 포함된 보도가 아니므로 취재원과 표본오차 등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KBS가 취재한 민주 21, 한나라 14는 다른 어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기관의 보도와 큰 편차가 없었으며, 이것은 편들기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 여야 어느 쪽의 항의도 없었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KBS의 서울지역 판세 보도는 결코 특정 정당에 대한 편들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점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KBS가 정권의 전리품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든지 “노골적으로 여당 편들기를 시도했다는 의심 받고 있다”는 부분, 또 “여권 편향식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등등의 무책임한 표현을 써가면서 공영 방송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3월 15일자 6면에 게재된 『KBS가 정권 전리품인가』제하의 기사에서 “KBS 9시 뉴스가 지역별 총선 판세 분석 리포트를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분석을 근거로 여당 편들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KBS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의 핵심 당직자들에게 취재한 것을 취합해 기사를 썼으며 이 리포트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당의 자체 판세 분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리포트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언론 매체의 판세분석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보도가 나간 뒤 여야 어디서도 항의가 없었습니다. 또 우세한 것으로 보도된 정당이 선거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리포트가 담고 있는 복잡한 측면을 저희 부산일보는 간과하고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견에 따라 막연하게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KBS의 판세 분석 보도는 ‘출처불명의 자료에 기초한 여당 편들기’가 아니라 정확한 물밑 취재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공정한 보도였음을 밝혀둡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3월 15일자 기자일기(KBS가 정권 전리품인가)와 관련 KBS는 “이 기사가 지적인 ‘출처 불명’과 ‘여당 편들기’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KBS의 총선판세 분석은 각 당의 핵심 당직자들로부터 취재한 것을 취합한 것”이라며 “부산일보가 지적인 대로 ‘출처불명의 자료에 기초한 여당 편들기’ 보도가 아니라 정확한 물밑취재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공정한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또 “KBS의 보도 내용이 당시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와 큰 편차가 없는 점도 특정 정당에 대한 편들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KBS가 출처불명의 자료로 여당 편들기 보도를 했다는 부산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0년 4월 8일까지 부산일보 정정·반론보도란에 보도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반론』제하의 기사 (2000년 4월 8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투석센터가 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등 환자유치행위를 일삼는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11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김 상 복)

피신청인 : 의협신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4. 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의협신보 : 『무료 투석 적극 대처를...』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7일자 10면)

내 용 : 서울과 인천에서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부산과 대구에 똑같은 형태의 무료 인공신장실을 개설할 방침이어서, 의료계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방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투석치료비는 물론 조혈제 등 약값도 받지 않고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인공신장실을 전국에 걸쳐 개설할 경우 기존 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 한 관계자는 “장기운동본부측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수가 70~80명인 점을 감안할 때 관리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는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신장질환뿐 아니라 내과계의 여러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들어 일부 회원이나 일반인이 무료혈액투석센터를 개설한 다음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심한 경우 환자유치 행위까지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전국회원의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에 법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면밀한 실사(實査)를 요청할 계획이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재단은 설립이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벌여왔

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평생토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월 50~8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신청인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정관을 변경하여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제4조 제7호), 또 신청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제5조)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여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영세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 혈액투석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 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재단에 단 한 번도 취재를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탈법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 불법적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허위 보도를 하여 신청인 재단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

·본 문 : 의협신보는 2000년 3월 27일자 제 10면에서 『무료 투석 적극 대처를...』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무료투석센터가 탈법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환자유치행위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설립 이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벌여왔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평생토록 혈액투석(인공 신장기에 강제로 피를 걸러주어야 하는 것)을 받아야 하나 월 50~8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1999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정관을 변경하여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제4조 제7호), 또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제5조)고 정하였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9. 3. 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층정타워 지하 1층과 인천 중구 전동 소재에 각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여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영세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 혈액투석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 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탈법적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외 어떠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의협신보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을 보도하였다.

반론보도신청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합의사항

· 제 목 :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인공신장실  
· 본 문 :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의협신보가 2000년 3월 27일자 제10면에서 『무료 투석 적극 대처를...』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나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동 본부는 91년 설립이후 장기기증운동을 벌여왔으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일주일에 3번씩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나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본부는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정관을 변경, '불우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을 사업에 추가하고, 또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정했다.

이 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서울과 인천에 각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영세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무료 혈액투석사업을 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과 일반 시민들이 후원하는 '사랑의 고리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년 4월 1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의협신보 10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의협신보 :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인공신

장실』제하의 기사(2000년 4월 13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 간부들이 검찰수사에 대해 음해공작을 펼치는 등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11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천존회유지재단  
(이사장 모 행 룡)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4. 3.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국일보 : 『천존회, 검찰수사 조직적 반발』  
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17일자 31면)

내 용 : 종말론을 내세운 사이비 종교단체 '천존회'의 핵심 간부들이 최근 검찰수사에 대해 음해공작을 펼치는 등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특별검거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16일 천존회의 거액 사기사건과 관련, 이 단체 종무원 부원장인 박원기(39·구속)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첩

과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씨 부부가 1월 25일 구속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하면서 300여 개 지부를 통해 신도들에게 “구속된 간부들이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등 검찰 수사를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검찰 소환에 불응토록 종용했다.

박씨는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한 신도들을 상대로 “개인비리를 찾아내 맞고소하겠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천존회는 1974년에 창시된 민족종교로서, 한국일보 2000. 3. 17.자 31면 『천존회, 검찰수사 조직적 반발』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신청한다.

보도내용 중 “종말론을 내세운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 천존회는 종말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태평성대의 기운이 무르익었다는 교리를 가르쳐 왔고, 그러한 우주관으로 진리를 해석하고 있다. 신청인 천존회의 마살제도에 대한 100년간의 임대차계약 진행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고 재단법인 허가를 득한 국가가 인정한 정식종교인데, ‘사이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흥종교로서 어렵게 대외적으로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검찰수사에 대해 음해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가당치도 않으며 오히려 불법 도청, 감청 등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공작을 펼친다는 것은 상황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도 부정적인 기사로 종교의 생명인 도덕성과 신뢰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중재신청을 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한국일보가 지난 3월 17일자 31면 『천존회, 검찰수사 조직적 반발』 기사에서 천존회가 종말론을 내세우고 사이비 종교단체이며 검찰이 구속간부들에 가혹행위를 한다는 등의 음해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존회는 종말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사이비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또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음해공작을 펼치지 않았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본회의 이사장과 간부들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올바르게 정당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천 존 회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천존회는 3월 17일자 31면 ‘천존회, 검찰수사 조직적 반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종말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사이비 종교단체도 아니며 검찰수사에 음해공작을 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년 4월 12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오피니언」란에 1단 기사로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0년 4월 12일자 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토지의 양도, 매입과정에서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11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전 용 원  
피신청인 : 주간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0. 4. 3.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주간내일신문: 『전용원 의원의 내방리 땅 -  
부동산 탈세용이나 경작용이나』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5일자  
면)

내 용 :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땅 1만여 평은 탈세  
용인가 순수 경작용인가. 지난 98년 전의원은  
내방리 땅을 매입함으로써 경기도 구리시 교  
문사거리의 1백40억원 짜리 배밭을 팔고도 수  
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제받게  
됐다.(중략)

전의원은 97년 5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교문  
사거리에 배밭을 갖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구리신시청이 자리잡은 요지였다. 다만 95년  
까지 5.7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군 부대  
와 협의해야 하는 '임의협의지역'이었으나,금  
호건설측과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해제됐  
다.

전의원은 이 배밭 경영을 들어 “조상 대대

로 물려받은 배밭을 관리해 왔다”며 농민임을  
주장했다. 이어 “버림상사 경영난과 정치활동  
으로 빚이 많아 배밭을 팔게 됐다. 부모님 보  
기도 면구스러워 과수원 할 땅을 새로 마련했  
다”고 했다.

양주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지만 “일꾼을 두고 경작  
하는 경우도 인정해서 자경농민의 규정에 혼  
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소작은 금지돼 있지  
만, 일꾼을 고용하는 대리경작은 인정되고 있  
다.

전의원측은 지난 2년 동안 일꾼을 고용해  
내방리 땅을 대리경작해 왔다. 1만여 평에 이  
르는 땅에 옥수수 호박 콩 등을 심어왔다. 전  
의원은 “직접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보다 싼 대체토지 값〉

이에 대해 내방리 이장 김정호 씨는 “전의  
원의 동생인 전광원 씨가 농사철에 들어서 관  
리 했다. 전의원이 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일꾼으로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했고, 때로는 시내에서도 사람들이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전의원이 자경농민  
의 범주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꾼을 직접 고용해서 부렸다는 사  
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2년 동안 경작을 관리해온 전광원  
씨는 (주)부림상사 대표이사로 중국과 무역업  
에 종사하고 있다.

만일 전의원이 자경농민으로 인정받는다면  
1백40여 억원 짜리 땅을 팔고도 수억원의 양  
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않게 된다. 면적이  
넓거나 공시지가가 1/2이 넘는 농지를 1년 이  
내 대체토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98년 내방리 땅을 두 차례에 걸쳐 1만여 평을 매입했다. 매입가는 평당 8만원 정도다. 인근지역에 비교해 가장 싼 땅을 구입한 것이다. 구리시에서는 1시간 이상 떨어진 오지였다. 교문사거리 땅이 평당 2백50만원이었으니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과중한 납세의무〉

게다가 내방리 땅을 구입한 이듬해, 남양주시는 전 의원 땅을 끼고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는 도로에서 500여 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 도로가 완공된 후에 땅값이 오르리란 전망이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자들은 세금납부실적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가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과중한 반면 힘있는 공직자들에게 숨 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인 동시에 총선 출마자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주간내일신문 3. 15자 『전용원 의원의 내방리 땅 - 부동산, 탈세용이나 경작용이나』는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 한다.

먼저 신청인이 구입한 땅은 동 지역의 지번 98, 101, 153 등 총 구입 평수는 5,012평으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위 땅을 매입함으로써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97. 5. 30. 부동산양도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세한 바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다.

그리고 매각한 땅은 95년까지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임의협의지역'이었으나 금호건설측과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해제됐다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금호건설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이미 88년 해제되어 90년 군부대에서 15층 높이 건물 신축에도 동의한 바 있다. 또한, 해제 자체는 도시계획에 의해되는 것이지 개인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해제되고 안되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꾼을 직접 고용해서 부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2년 동안 경작을 관리해온 전광원 씨는 (주)보림상사 대표라고도 했는데, 전광원은 신청인의 동생으로 신청인이 의정활동으로 바쁠 때 몇차례 부탁을 해서 관리해준 적이 있으며, 이는 형제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땅을 구입한 후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시작해 도로가 완공된 후 땅값이 오르리란 전망이라며 투기의혹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 도로는 새마을도로로 신청인이 매입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잡혀있었다.

이외에도 신청인이 마치 힘을 이용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함은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탈세를 기도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 신청인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3월 15일자 『국회의원 재산신고 검증』 제하의 기사에서 전용원 의원의 내

방리 땅이 마치 탈세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전용원 의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3월 15일자 『국회의원 재산신고 검증』제하의 기사와 관련, 매입한 내방리 땅 1만여 평은 5,012평이라는 점과 일부 땅에 대해 양도소득세 4억5천백만원을 납부했다는 사실, 납세여부는 3년 후에 결정난다는 점을 내일신문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도한 교문사거리 땅은 지난 20여 년간 과수원으로 경영하여 왔으나, 불가피하게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수원을 하기 위해 내방리 땅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국회의원 전용원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내일신문 2000년 4월 12일자 정치면에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국회의원 신고재산 검증)과 같게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체로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내일신문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4월 12일자 3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 경기중재 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유 봉 석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0. 4. 8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전국매일 : 『주민을 외면하는 공직자』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6일자 10면)

내 용 : 주민을 외면하는 공직자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민의 행정을 주관하는 사람이 면장이다.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과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때론 민민의 편에서 때론 집행부의 편에서 일을 하다 보면 면장들의 고충 또한 클 것이다.

그러나 일부 면장의 경우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마찰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용인시 남사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면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남사면을 떠난 면장이 현 면장을 무시한 채 살그머니 면에 들러 이러쿵 저러쿵 한 말이 심화되고 있다.

어떤 면장은 면민간의 화합에 발 벗고 나서는가 하면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면장이 있다.

즉 같은 면장이라 할지라도 길 장을 쓰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담장을 쓰는 면장이 있어 다 같은 면장이라 할 수 없다.

전자의 면장은 주민이 존경하는 면장이요, 후자의 면장은 주민간의 담을 쌓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주민을 보살피기는 커녕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부도덕한 면장이라 할 것이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남사면 전 면장 유봉석으로서 전국매일 4월 6일자 10면 『주민을 외면하는 공직자』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마찰과 갈등을 조장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신청인이 남사면장으로 근무당시에 남사면 숙원사업으로 부시장, 시장 순시때에 3회 건의된 사항인 남사면북리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이 출장할 것을 희망하여 현장을 안내한 것이다.

또한, 남사면을 떠난 면장이 현 면장을 무시한 채 살그머니 면에 들러 이러쿵 저러쿵 한 말이 씨가 돼 면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 면장과 상하수도과 직원과 다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전국매일 2000년 4월 6일자 10면에 “주민을 외면하는 공직자” 제하의 기사에서 “주민들간의 마찰과 갈등을 조장한 경우가 있다”, “현 면장을 무시한 채 살그머니 면에 들러 한 말이 면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부도덕한 면장” 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남사면 전 면장은 이와 관련하여 재직시에

북리지역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을 위해 상급기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떠난 후 상하수도과 요청에 의해 현장안내하였고, 면장실에서 현 면장과 상하수도과 직원과 함께 의견교환하는 등 주민의 물부족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지 주민의 갈등의 부추기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부도덕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유봉석

###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

내 용 : 전국매일이 지난 4월 6일자 10면 「취재현장」란 『주민을 외면하는 공직자』제하의 기사에서 ‘용인시 남사면에 경우 면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남사면을 떠난 면장이 현 면장을 무시한 채 살그머니 면에 들러 이러쿵 저러쿵 한 말이 씨가 돼 면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남사면 전 면장은 재직시에 북리지역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을 위해 상급기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떠난 후에 상하수도과의 요청에 의해 현장을 안내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해 면장실에서 현 면장과 상하수도과 직원과 함께 의견교환하는 등 주민의 물부족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지 현 면장을 무시한 채 면민의 갈등을 부추긴 사실이 없어 위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한다.

반론보도신청인 유봉석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0년 4월 19일자 10면에 상가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컷(취재현장란)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매일 : 『반론보도』제하의 기사(2000년 4월 20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천만원대의 기부금을 내고 서울미술고에 전학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종재12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변정은 외 23인

피신청인 : MBC - TV

종 재 부 : 서울제4종재부

접 수 일 : 2000. 4. 1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프로그램(2000년 3월 31일 21:00)

내 용 : >기자: 서울 봉천동에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갑작스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이 학교는 실기지도비 등 1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뒤한 교사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돼 동료 교사들의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중략)

>기자 : 김교사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비리는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학교는 전학을 오는 학생들로부터 1,000만원대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강사 : “저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아이가 의뢰가 와서 대략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랬더니 한 천오백만원선을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서울미술고등학교 편입 학생들이다. 지난 3. 31.일 21시 MBC 가 뉴스데스크 시간에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선생님도 왕따'란 보도에서 “이 학교는 전학을 오는 학생들로부터 1,000만원대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신청인들은 어떠한 금품제공도 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학교측의 편입 시험 결과에 따라 입학하였다.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서울미술고등학교에 편입학한 신청인들은 치욕적인 모욕감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정보도 신청을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0. 3. 31.자 MBC 뉴스데스크 '선생님도 왕따' 보도내용 중 “이 학교는 전학을 오는 학생들로부터 1,000만원대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전학한 학생들은 정당하게 전입학 시험결과에 따라 입학하였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미술고 관련 정정보도
- 분 문 : 지난 3월 31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서울미술고가 전학을 오는 학생들로부터 1,000만원대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

공히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작년 이후 이 학교에 전학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년 4월 22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21:00 「뉴스」프로그램 끝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합의사항이행결과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0년 4월 22일 21:00)

내 일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공모하여 어업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아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로 확정되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0대전중재7  
 청구명 : 추후보도청구  
 신청인 : 박승안 외 10인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재부 : 대전중재부  
 접수일 : 2000. 4. 11.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중도일보 : 『홍보지구 사업관련 보상금 편취, 공무원 등 11명 적발』제하의 기사 (1996년 10월 10일자 14면)

내용 :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홍보지

구 농업종합개발사업지역 내 어업권 보상과 관련, 불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아낸 전현직 어촌계장 등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정필재 검사는 최근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 불법적으로 어업권 보상을 받아 편취한 홍성군 서부면 신리 전 어촌계장 박모 씨(46) 현 어촌계장 박모 씨(54) 보령수협감사 한모 씨(47)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김모 씨 명의 굴양식장 10ha, 생산실적이 저조한 한 모씨 명의 10ha, 양식장 개발이 어려운 바다 15ha 등 서부면 신리와 결성면 성호리 일대 총 35ha의 바다를 보상을 목적으로 공동어업면허를 발급받아 신리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인 양 위장관리해 왔다는 것.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94년 6월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회에 걸쳐 양식장 35ha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 10억7천만원 중 7억9백만여 만원을 지급받아 각각 나눠 편취한 혐의이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1996년 6월 17일,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공사 지역 내 어장 피해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중도일보가 1996년 10월 10일자 사회면 종합판에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했으므로 추후보도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보는 1996년 10월 10일자 사회면(종합판)

에 『홍보지구 사업관련 보상금 편취 공무원 등 11명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검 홍성지청 정필재 검사는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과 관련, 불법적으로 어업권 보상을 받아 편취한 홍성군 서부면 신리 전 어촌계장 박모 씨(46), 현 어촌계장 박모 씨(54), 보령수협감사 한모 씨(47) 등 11명을 적발하여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서성)는 2000년 3월 1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전고등법원이 1999년 1월 14일 피의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시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0. 4. 22.자까지 14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추후보도문』제하의 기사 (2000년 4월 19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방역소독  
 약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13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주식회사 전우약품  
 (대표이사 전찬민, 김귀자)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0. 4. 2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국일보 : 『방역약품서 환경호르몬』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16일자 31면)

내 용 : 방역에 사용되는 상당수 소독약품의 주성분이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맹독성 농약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5일 일선 보건소에서 사용 중인 21종의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살과 메스탄, 하이그린, 슈퍼그린S, 프로그린, 사이포스, 하이킬라 등 9종의 주성분이 환경호르몬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은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이 환경호르몬으로 규제 중인 사이퍼메스린, 알파사이퍼메스린, 에스펜탈라이트 등 모두 6가지의 맹독성 제초제 및 살충제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졌다. 이 성분은 ppb(10억분의 1)단위의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도 이들 약품에는 1당 적게당 0.5g, 많게는 9g까지 함유돼 물에 희석해 사용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기준조차 없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회사는 정부방역 사업용 살

충제를 제조·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일보 3월 16일자 31면 『방역약품서 환경호르몬』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사실은 부산시는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산시가 언급한 성분들은 환경호르몬이 아니다. 단지 세계생태보전기금, 일본 후생성 등의 단체나 기관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환경문제와 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환경보전기구(EPA)”의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분류에는 당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성분들을 환경호르몬이란 이유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판정 기준으로 세계생태보전기금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했는데 이 단체의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목록에는 사이할로스린, 델타메스린으로 대표되는 합성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인류가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살충제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명만을 거론한 이 보도로 인하여 정부에 납품된 약품에 대한 반품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 품목들에 대한 구매 거부 및 기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3월 16일자 31면 『방역약품서 환경호르몬』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시는 15일 일선 보건소에서 사용 중인 21종의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살과 메스탄, 하이그린, 슈퍼그린S, 프로그린, 사

이포스, 하이킬라 등 9종의 주성분이 환경호르몬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은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이 환경호르몬으로 규제 중인 사이퍼메스린, 알파사이퍼메스린, 에스펜탈라이트 등 모두 6가지의 맹독성 제초제 및 살충제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졌다...”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부산시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환경호르몬을 검출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3월 16일자 31면 『방역약품서 환경호르몬』기사에서 슈퍼그린S, 하이그린, 프로그린 등 9종에 환경호르몬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제 확인된 바 없고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도 없다고 국립보건원이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0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1단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2000년 5월 2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선거기사심의사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국의 284개 매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의 를 벌여 모두 50개 매체, 93건의 기사를 불공정한 기사로 판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심의결정한 93건 가운데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58건의 기사가 경고결정을 받았으며, 주의조치된 기사는 35건이었다. 93건의 심의결정사례 가운데 지방일간지가 무려 64건으로 68.8%를 차지해 지방일간지의 불공정한 보도태도가 두드러졌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71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여론조사결과 공표요건 미비가 14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조항 위반이 7건, 상업광고제한규정 위반 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와는 별도로 후보자의 반론보도청구 1건이 접수됐으나 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정정과 사과문 게재를 원하는 시정요구 4건은 청구가 있는 후 정정 또는 반론보도 등이 게재되어 모두 취하됐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고 결정한 사례 가운데 일부를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선거기사심의의결현황

| 매체유형  | 결정내용          |               | 위반유형          |                |                |             |
|-------|---------------|---------------|---------------|----------------|----------------|-------------|
|       | 경고            | 주의            | 공정성 및<br>형평성  | 여론조사보도<br>요건미비 | 여론조사결과<br>보도금지 | 상업광고제한      |
| 중앙일간지 | 4             | 8             | 1             | 7              | 4              |             |
| 지방일간지 | 42            | 22            | 55            | 5              | 3              | 1           |
| 주간신문  | 12            | 3             | 15            |                |                |             |
| 주간지   |               | 1             |               | 1              |                |             |
| 통신    |               | 1             |               | 1              |                |             |
| 계     | 58<br>(62.4%) | 35<br>(37.6%) | 71<br>(76.3%) | 14<br>(15.1%)  | 7<br>(7.5%)    | 1<br>(1.1%) |

### 경고

#### 사례 1

#####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 『지역발전·내각제 쟁점화』(2000년 3월 18일자 1면), 『대전서를 남재두 씨』(2000년 3월 18일자 2면) 및 『민주 “망국적 지역주의 청산” 역설』(2000년 3월 18일자 4면) 제하의 각 기사

내 용 : 민주당 대전 서구를 지구당 개편대회 소식을 3면에 걸쳐 보도하면서 행사사진을 1면과 4면에 게재하였으며, 인물사진 1건을 게재.

“17일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 서을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재두 위원장이 이인제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손을 들어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는 1면 사진설명기사, “17일 민주당 대전 서구를 지

구당 개편대회에서 이인제 선대 위원장과 남재두 위원장 등 지역 위원장들이 환호를 받으며 입장 하고 있다”는 4면 사진설명기사와 함께 행사사진 보도.

“민주당 대전서울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재두 전 의원은 3선의 관록과 여당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구상까지 제시해 눈길. … 남위원장은 특히 ‘중기청 본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지방청이 없어서 지역 기업의 애로가 많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 대전지방청을 대전 둔산지역에 설치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약속.”이라고 보도.

이 유

대전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민주당 대전 서울지구당 위원장 선출 기사를 보도하면서 3개 면에 걸쳐 기사와 함께 행사사진 2건, 인물사진 1건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2조(형평성) 각 위반】

사례 2

심의대상기사

전북도민일보 : 『개혁이미지 살리

는 역할 큰 몫』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5일자 3면)

내 용 :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이 지구당 개편대회나 심야토론회 등에 참석, 민주당의 개혁적 이미지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구에 상주하지 못하는 대신 지역구의 주요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동영 대변인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정대변인은 민주당의 간판으로 몸이 중앙당에 묶이면서 지역에 상주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 하고 있다. 대신 예산확보와 한국전력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 중앙에서 할 수 있는 현안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

이 유

전북도민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전북 덕진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정동영 대변인을 ‘야당 공격을 방어하는 선봉장’이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원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 해당지역구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사례 3

전남일보 : 1) 『바뀌 · 바뀌 속 ‘무소속 돌풍’ 거세』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6일자 1면), 『예상넘은 ‘바뀌’ 민심 확산에 당혹감』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6일자 4면)

2) 『후보 이미지 심기 ‘기발’』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8일자 1면), 『유권자 심판운동’ 광주·전남 확산』제하의 기사(2000년 3월 18일자 3면)

3) 『유권자 선거혁명 시동』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0일자 1면), 『시민연대의 낙선투어』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0일자 5면)

4) 『정치개혁 ‘버스트어’ 시도 민 큰 호응』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1일자 1면), 『선거혁명 열풍’ 전국 확산 의지』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1일자 3면)

5) 『‘낙선운동’ 성패결린 최대 격전지』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3일자 3면)

6)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 앞서』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4일자 1면), 『광주·전남 관심 선거구 6곳 여론조사』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4일자 5면)

내 용 : 민주당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무소속 이정일 후보의 지지율이 32.1%로 민주당 김봉호 후보(19.2%)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와 해남·진도 선거구에 관련된 선거상황을 보도.

“예비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 조사결과 이정일 전 전남일보 회장이 김봉호 의원을 앞지른 것은

로 나타났다. 김의원의 열세요인은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파괴력과 40%에 달하고 있는 '반(反) 김봉호 정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게재.

민주당 해남·진도 김봉호 후보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대상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 앞서', '무소속 돌풍' 등의 기사제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특정 무소속 후보(이정일)가 우세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 이 유

전남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전 전남일보사 회장 이정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특정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3조(객관성), 동기준 제6조(사실보도) 각 위반】

#### 사례 4

##### 심의대상기사

경도일보 : 『‘용마루에 뜨는 달’ 서적 광고』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5일자 5면)

내 용 : 경남 밀양·장녕지역

구에 출마하는 김태량 민주당 후보의 자전적 에세이 〈용마루에 뜨는 달〉을 5단 광고로 게재.

이수성(전 서울대 총장)의 추천사와 저자가 경남 창녕 출생이며, 현 국회의원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경상남도 지부장을 맡고 있다는 광고문 게재.

#### 이 유

경도일보사가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하는 특정정당 후보의 저술에 대한 광고를 인물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조치함.

#### 사례 5

##### 심의대상기사

중부매일 : 『“힘있는 야당의 무공해 정치인”』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5일자 12면)

내 용 : 한나라당 제천·흥덕 지구당 엄태영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약력, 사진 4장을 전면에서 걸쳐 집중 보도.

“더욱 자라서 그들이 될 수 있는 재목이 되어 제천·단양 시민들의 고견을 받들고 그 뜻을 실천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한나라당 엄태영 위원장. 9년전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8년 동안의 의원직을 역임하면서 단 한번도 이 약속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4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대학시절과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5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선·후배와 함께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어머님과 장모님을 한 집안에 모시는 극진한 효자”, “장곡취수장을 통한 1급수 확보를 위해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명확한 자료와 논리도 제시, 시민들의 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합리적이며 학구파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기사내용을 “지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키는 ‘의리파’”, “기초의원대 통합공과금 문제제기 호평” 등의 기사제목과 함께 보도.

#### 이 유

중부매일이 특정 정당 후보의 시의회 의정활동 등을 담은 사진과 함께 출마의 변·포부 등을 한 면 전체를 할애, 특집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사례 6**

심의대상기사

일요시사 : 『'밀실공천 희생양', '관악 일꾼'으로 명성』 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6일자 10면), 『무선 이동전화 대중화 이끈 '016성공신화' 추억』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6일자 20면), 『IMF 완전 극복 위해 디지털화』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6일자 62, 63면)

내 용 : 서울 관악갑 무소속 출마자 김수복 씨와 성남분당을 이상철 민주당 후보, 성남분당갑 강봉균 후보의 경력 및 업적 소개와 정견을 사진과 함께 박스기사 및 전면, 양면에 걸쳐 보도. 지구당 창당대회 또는 출마공식 선언 등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출마후보의 경력 및 업적, 정견을 크게 게재.

이 유

일요시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16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후보들의 경력·정견·활동 내용 등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사례 7**

심의대상기사

주간현대 : 『무소속 강운태 강세 호남 이번 조짐』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6일자 8면) 및 『무소속 박주선 "호남이 키울 인물로 부상"』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6일자 9면)

내 용 : 강운태 씨(광주 남), 박주선 씨(전남 화순·보성) 등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호남지역에 이번을 일으킬 인물들로 부상하고 있다고 집중 보도.

“예상을 뒤엎고 강 전 장관이 여론조사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다. 강 전 장관의 승세가 갈수록 탄력을 받아가는 분위기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강운태 전 장관은 호적 시비의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약진하고 있다... 따라서 강 전 장관이 임후보일 이전에 초반강세를 굳혀 중후반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면 승기를 쥐게 된다”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국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인지도와 보성화순지역에

서의 지명도는 오히려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남도가 만든 수재형 가운데 한 사람이자 52세의 왕성한 정치력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와 같은 흡수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박찬주 의원의 공조직 95%를 박 전 비서관이 흡수한 것도 한의원의 포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따라서 전문가들은 박 전 비서관이 본격적으로 표몰이에 나서기 시작하면 의외로 단시일 내 승부의 분수령이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

이 유

주간 현대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광주 남구와 전남 화순·보성 선거구에 출마하는 특정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호남 지역 이번'을 일으킬 인물로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사례 8**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 『'뒷심' 부족한 386후

보』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9일자 2면)

**내 용** : 여야가 정치권의 세대 교체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거 공천했던 386 세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결과 뒷심 부족으로 주저앉고 있어 당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보도.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고민하다 저격수로 선택한 김성호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정농단을 특종 취재한 기자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 단숨에 지지도를 끌어 올렸다. 하지만 최근 그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 나타났다.…전대협 의장 출신의 민주당 임종석 후보도 초반 선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세기 의원의 반격을 받아 지지도 상승이 주춤해진 상태다.…한나라당 원희룡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는 접근했지만 확실한 우세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오경훈 후보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이 유

국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수도권에 공천된 386세대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것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 사례 9

##### 심의대상기사

**매일경제** : 『민국당 주축 한나라 회복』, 『민주 아성에 무소속 돌풍』제하의 각 기사 (2000년 3월 28일자 45면)

**내 용** : 지역별 판세 분석을 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관련한 선거결과를 전망하는 기사 게재.

대구·경북지역과 호남·제주 지역의 총선판도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10% 이상 차이로 김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박의원이 간격 좁히기에 진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호남·제주지역의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기사 내용에는 “강 전 장관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임복진 의원을 오차범위를 벗어난 표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고 보도.

#### 이 유

매일경제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대구·경북과 호남·제주 지역의 총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것은 ‘선거기간 중 여론

조사결과 인용보도금지’ 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 사례 10

#####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 『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식’』제하의 기사 (2000년 3월 30일자 6면, 12면)

**내 용** : 평택 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자 우제항 후보와 자민련 조성진 후보의 출정식 및 출마의 변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

“우제항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 자원봉사자와 지지자 및 유권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상당한 세력을 과시하면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의 승리를 향한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기사내용과 함께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들의 환호속에 출정식에 임창하고 있는 무소속의 우제항 후보”라는 사진 설명으로 출정식 사진 게재.

#### 이 유

경인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후보 2인의 ‘출정식’ 만

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사례 11**

**심의대상기사**

신경북일보 : 『이종용 위원장 후보등록 후 급거 상경』제하의 기사(2000년 3월 29일자 6면)

내 용 : 민주당 경주시 지구당 이종용 위원장이 거리유세보다 지역발전 공약 현실화를 위해 급히 상경했다는 내용을 박스기사로 보도.

“이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30만명 경주시민은 물론 300만명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경주경마장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특히 이위원장은 경주 발전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고 공천을 수락한 만큼 현재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한 표를 위한 선거운동보다는 중앙당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보도.

**이 유**

신경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후보의 출마동기, 지역숙원사업 해결노력 등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사례 12**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 『현역들 뒷심 만만찮아』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6일자 5면)

내 용 : 여야간 선거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당별 지지율과 격전지 42곳의 판세분석을 도표로 분석 보도.

“4일 실시한 여야간 선거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정론’ 47.6%에 ‘견제론’은 36.5%로 이 기준으로만 보면 여당이 더 유리한 것 같다”, “법정선거운동 직전까지 열세경합 또는 경합으로 분류되던 각 당의 현역 의원들과 지구당 관리를 오래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운동이 본격화하자 조직, 자금 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지지세를 점차 회복하

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서는 한나라 이세기(성동), 김영구(동대문울), 이성헌(서대문갑), 박명환(마포갑), 박주천(마포을), 이우재(금천) 후보 등이 여전히 오차범위권 하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 서울에서의 낮은 한나라당 지지율을 조직력 등으로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이들과 경합하는 386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경북에서는 민국당의 이수성(칠곡) 후보의 추격세가 빠르며, 구미에서도 김윤환 후보가 기세를 회복 중이다.”, “경기 원미울의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전주 교인권위원회에서 낙천대상에 포함된 후 민주당 배기선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등의 보도.

**이 유**

중앙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대치된 여·야의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한편, “지지도 5% 이내의 치열한 접전”, “오차범위권 하나 다소 형편이 나아졌다”, 특정후보들간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 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등) 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1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 사례 13

#### 심의대상기사

**전북일보** : 『“도내 전 지역 석권 제1당 확보 총력”』 제하의 기사(2000년 4월 5일자 6면)

**내 용** : 특정 정당의 선대위 부장직의 인물사진과 선거 전략만을 게재.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자체 판세분석결과, 전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일부 경합지역에 대해선 집중지원을 통해 압승을 노리고 있다... 또한 집권여당이 아직도 기호 2번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 제1당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 득표율이 전국구 의석 확보 및 충청, 수도권 세확산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 한 표라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정균환 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성패가 걸린 선거인만큼 전북지역 득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고, ‘전북 압승을 이어 전국구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제1당 만들기에 혼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고 보도.

#### 이 유

전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전북 선대위의 총선 전략을 중점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외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 사례 14

#### 심의대상기사

**새거제** : 『“경험과 역량 갖춘 김기춘 후보 지지”』제하의 기사(2000년 4월 6일자 5면)

**내 용** :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의 탈당배경 관련 기사를 박스기사로 게재하면서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을 기사제목으로 보도.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이 한나라당 김기춘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자신은 ‘경험과 역량을 고루 갖춘 지역의 잠일꾼인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김기춘 씨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을 공식탈당한 서 전 위원장은 김기춘 후보진영에서 선거대책위 고문을 맡게 될 것으로 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고 보도.

#### 이 유

새거제신문사가 위 심의대상기

사에서 서영철 전 민주당 거제시 지구당 위원장의 탈당배경, 행보 등을 소개하면서 서씨의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제목으로 달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외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14조(기사제목)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 사례 15

#### 심의대상기사

**경상일보** : 『‘김태호 죽이기’ 논란』제하의 기사(2000년 4월 8일자 1면), 『“한치 잘못 있다면 정계은퇴”』제하의 기사(2000년 4월 8일자 4면)

**내 용** :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삭발투쟁’을 동정적인 논조로 1면과 5면에 걸쳐 대서특필.

“김 후보는 대회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당 사무총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현 정권이 표적사정 1호로 지목, 지난 2년 동안 김태호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다’며 ‘3남의 병역비리 관련 발표는 허위사실로 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태호 후보와 3남에 대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비리혐의 소환발표에 대해 ... 김후보는 물론 김후보를 지지하는 중구내 시의원과 구의원 대부분이 집단 삭발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소환발표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야당의원에 대한 소환사실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수사와 기소절차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부 중앙일간지와 사설 등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

이 유

경상일보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검·군 합동수사반이 아들 병역부정면제혐의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소환통보한데 대해 '김태호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야당탄압', '정치적 공작' 등의 김후보 반박내용을 2개면에 걸쳐 중점 게재한 것은 김태호 후보에 대한 편향적 보도라 할 것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사례 16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세요”』제하의 기사(2000년 4월 7일자 3면)

내 용 :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민련 조성진 후보가 3전4기의 끈질긴 도전으로 부동산 동정론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사진 2매와 함께 상자기사로 보도.

“조성진 후보는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오후 1시경 동막 소재 부락산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 출동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불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성진 후보는 지역 종교계의 후광과 15대 총선에서 얻은 20.1%의 지지표와 25%에 달하는 충청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 3번에 걸친 총선의 쓴잔을 마신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16대 총

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간 서민층을 상대로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표밭을 꾸준히 다져온 바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조후보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시신을 거두지 못하는 상가를 찾아다니며 시신의 염을 직접 해주는 등 지금까지 50여 구에 달하는 시신의 염을 해주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는 등 홍보성 기사를 보도.

이 유

경인매일신문사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평택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민련 조성진 후보의 활동과 그에 대한 동정론 등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고 결정함. □

판결 1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방송은 1차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방송 내용을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며  
반드시 프로그램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00년 3월 24일 종교단체인 '세계정교' 총령본존인 하정효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며, 2회에 걸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용된 부분을 넘어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

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수정,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MBC는 1998년 11월 24일 「PD수첩」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성관련 비리, 현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등을 보도하였고, 이어 12월 22

일에도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이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각 보도에 대해 1998년 12월 24일과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98서울중재 327, 329) 모두 중재불성립결정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방송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상소하였고, 2심 법원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 판 결 문

사 건 : 99다63138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상고인: 하 정 효  
 서울 종로구 창성동 105의 1  
 피신청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9나2732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  
 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  
 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  
 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판결 참조),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  
 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8. 11. 24.  
 23:00경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종  
 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신청인에 대하여  
 성관련 비리, 현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파한머루' 라는 동자,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  
 를 하고, 또 1998. 12. 22. 23:00경 같은 프로그  
 램인 「PD수첩」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  
 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은 그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  
 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 판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반  
 론보도로서 인용부분뿐 아니라 별지 제2, 3목  
 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 전부를 원 방송에 대  
 응하여 2회로 나누어 순차로 방송하여야 하  
 고, 또 반론보도는 보도문의 낭독뿐 아니라  
 자막도 함께 표시하여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하며, 반론보도의 방송  
 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내용이 판결주문이나 반론보도문에 명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

.....

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가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및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 2차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나 방송프

로그램의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도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반론 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거나, 비난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면서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반론보도청구권 및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지적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의 첫머리에 있는 두 문단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 게재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리는 도입부분일 뿐이어서 신청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의 반론보도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

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을 1일 500만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제1심이 정한 배상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기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4.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송진훈

〈별지 제1목록〉 반론보도문

문화방송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1998년 11월 24일 '세계정교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이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본존 하정효 개인에 대한 성(性) 관련 비

리, 현금강요 및 학력위조 의혹 등에 관하여 보도를 하였고, 1998년 12월 22일에도 위 방송 보도 내용을 축약하여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정효의 반론 제기가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방송에서는 “하정효가 성진 의식을 빌미로 여신들에게 자신의 손이 신도들의 몸에 닿으면 병도 낮고 암도 낮는다. 전생에 내 부인이었다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성폭행을 하고, 그 중 어느 여신도에 대하여는 결혼생활을 계속하면 남편이 죽는다는 말을 하여 남편과 이혼시킨 뒤 방을 얻어 살게 하면서 수시로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녀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강요하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도 하정효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하정효 본인은 1980년경부터 성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후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기에게 병이나 암을 낮게 하는 능력이 없고 신도들이 자신에게 병에 걸렸다고 말하면 기도를 통한 정신적인 방법에 의한 치료를 조언해 왔을 뿐이며, 신도들을 만날 때에도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을 항상 배석하게 하여 왔다.

다음으로, 문화방송에서는 “하정효가 성진비, 통일성금 또는 액을 물리쳐준다거나 호를 지어준다 등 각종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현금을 강요하고, 그의 말이 담긴 경전과 책자들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특히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탄단절에는 계ومی라고 하여 종이 한 장에 4만8천원씩 112장을 5백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거나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온 모월간지를 4만8천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하정효는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자기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서를 받고 신도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둔 부동산도 많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세계정교의 신도들은 하정효와 성진하기 직전에 제단에 기도하면서 각자 알아서 제금을 내는 것이지 하정효와 만나는 대가로 혹은 호를 지어주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세계정교에서는 액을 물리친다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세계정교에서는 경전을 1권당 1만8천원에 정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탄단절에는 참석자에게 참가비로 4만8천원을 받았을 뿐이며 계음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신도들 자신과 가족 등의 이름을 쓴 다음 제단에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정효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신도들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신도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어서, 문화방송에서는 하정효가 모 대학 법정대 법학과에 다닌 적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하정효는 조선대학 장학생 시험에 합격한 후 4학년까지 이수한 후 미등록으로 제적되었을 뿐이다.

또, 문화방송에서는 “세계정교에서 숭배하는 세스팔다스신이 스스로 팔팔하게 다스리는 신을 말한다. 또 하정효는 자신을 세계를 구원하는 신이라며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4배를 올리도록 하였고, 세계정교에서는 하정효의 생일인 탄단절에 대규모의 기념행사를 하는 등 그를 숭배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정교에서는 ‘망경성야의 진태양계에서 십이삼세의 전유대계를 창조, 인도하는 절대신’인

세스팔다스계음을 숭배하고 내세, 절대자, 심판자 혹은 구원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정교에서 ‘절’은 자아해탈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하정효 총령에 대한 우상화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탄단절도 하정효 개인을 숭배하기 위한 의식이 아니다.

끝으로, 문화방송에서는 “하정효가 10년 맨발수행 끝에 신의 계시를 받아 와한뎬루라는 무예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정효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일간지의 주필로 활동하거나 행사 때마다 유명인사를 동원하였으며, 문화방송 취재팀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상은 세계정교 총령본존 하정효의 반론내용이었습니다. 끝.

\* 1. 본 반론보도문의 문장을 방송에 적당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그 취지를 곡해하거나 내용이나 길이를 줄여서는 아니된다.

2. 본 방송의 배경화면은 없어도 되지만 주문에 표시된 제목은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위 뉴스에서 방송된 화면 중에서 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정지화면이나 동작화면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단 화면없이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론내용의 요지를 나타낼 것이고, 원 방송내용의 요지와 대비하는 경우에는 반론내용이 더 큰 활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

판결 2

원고의 사상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0년 3월 22일 월간조선 기자인 이동욱 씨가 주식회사 월간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또는 논평일지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의견 또는 논평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또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진다는 피고의 표현의 “‘사디즘(sadism)’이라는 말은 변태 성욕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져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의 이와 같은 표현은 “기사 전체 내

용과 작은 제목으로 사용된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과 합체되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사가 과거의 친일행각을 은폐하고자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사에 소속된 원고가 회사측의 요청, 지시 또는 사주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의도에 영합하여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되었던 통일원의 통일캠페인 광고가 북한에서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피고 정지환은 ‘월간 말’ 1998년 1월호 “농구 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의 정신상태”제하의 기사를 통해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비이성적인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한 1998년 12월호에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

.....

세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98가합1491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동 옥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사 출판국 월간조선부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 고 : 1. 주식회사 월간말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대표이사 박 출 열

2. 정 지 환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주식회사 월간말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2000. 2. 16.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0.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5년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조선일보사라고만 한다) 출판국 월간조선부에 계약기자로 입사하여 현재 월간조선부에 근무하는 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이하 피고 월간 말이라고만 한다)은 도서잡지 출판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보적 시사종합지를 표방하는 월간지인 '월간 말'을 발간하고 있으며, 피고 정지환은 피고 월간 말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각 기사에 기재 경위 및 내용

##### (1)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

통일원은 1997년 2월초부터 5월말까지 사이에 MBC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통일 캠페인 광고를 하였다.

##### ① 라디오 광고 '통일이 되면'

여성 나레이터의 대사 : "통일이 되면 달라질 세상. 어서 보고 싶으시죠? ...(중략)...50년 넘게 다른 나라처럼 살아왔잖아요. 단혀진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중략)...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부터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 통일입니다."

##### ② 텔레비전 광고 '마음의 거리'

농구선수 우지원과 미스코리아 한성주의 대화 : "애틀랜타에서 북한 선수를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인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 같더라구요. 참 반갑고 친해지고 싶었

어요. 마음의 거리부터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 아닐까요.” (“중략) 알고 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린데 마음의 거리는 북극보다 멀어요. 우리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야겠어요.”

나레이터의 대사 :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통일의 길도 멀지 않습니다.”

③ 텔레비전 광고 ‘우리는 하나’

가수 이선희의 노래 가사 :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하나가 되죠. 마음을 열어요. 생각을 나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더 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통일은 어렵지 않아요.”

(2)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실린 원고 작성의 기사

원고는 위 통일 캠페인 광고가 그 동안 북한에서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광고의 취지와 제작 경위 등을 취재한 다음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월간조선 1997년 9월호에 게재하게 되었는데, 그 기사 중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피고 정지환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위 통일 캠페인 광고의 내용 중에는 ‘통일이 되면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고 수도 서울이 옮겨질 수 있으며 공휴일도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 아니거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② 수도와 나라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연장하면 국호도 바뀔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거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현 정부의 통일정책

을 오해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③ (텔레비전 광고 ‘마음의 거리’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며 문제가 있다. 즉 과거 반공교육에서 예컨대 빨갱이라고 빨달린 도깨비 그림으로 묘사했던 것은 북한집권층을 그렇게 묘사했을 뿐 주민들은 오히려 처량하고 험뻐한 모습으로 그려서 그림을 보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서 빨리 통일을 해 불쌍한 동포들을 구해내자’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위 광고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친북 지식인들에 의해 종래의 반공교육 비판 이론으로 사용되어 온 논리, 즉 ‘빨갱이 그림을 보고 북한 사람이 새빨간 줄 알았다’는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④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온 데 비하여 북한이 정반대로 무력 적화통일을 지향해 왔고, 남북대화도 항상 북한측이 구실을 만들어 단절해 왔으며,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통일이 지연되는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적과 아군의 개념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 되어 문제이다.

⑤ 위 통일 캠페인 광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집필한 ‘나는야, 통일1세대’라는 책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를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책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 인권 실상이나 굶주림의 원인,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북한의 국가를 그대로 소개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가사 전문을 실고 있는 등 어린 독자들에게 그릇된 통일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

고, 그리하여 위 광고들은 통일원이 3억8천만 원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이 사건 제1기사

피고 정지환이 취재하여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이 '월간 말' 1998년 1호의 제136면부터 제145면까지 사이에 게재한 기사 중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이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큰 제목 :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 라는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의 정신 상태"

② 작은 제목 : "문제제기 월간조선의 이상한 반공캠페인"

"이동욱 기자의 주장 : 권오기 장관의 계인이 찍혀 있는 통일원 통일 캠페인 광고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한다.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 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동욱 기자가 97년 6월 28일 박홍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의 조찬회에 참여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기사를 발제한 뒤 극우단체와 검찰이 마녀사냥 소동을 일으켰는데..."

③ 본문 :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2기사

조선일보사는 1998. 10. 19. 자신이 발간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의 제206면 이하에 "심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소위 최장집에 대하여, 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에 저술된 내용 중 몇몇 표현을

인용하여 그의 6·25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그 직후부터 위 최장집의 6·25 전쟁관, 나아가 그 사상 문제까지 쟁점화되어 위 최장집의 해명과 공식으로부터의 사퇴를 요구하는 촉과, 그와 같은 위 '월간조선'의 기사가 논문의 전체 취지와 문장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발췌된 부분적인 표현에 터잡아 전체적으로 위 최장집의 의도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월간조선' 및 '조선일보'를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특정인의 '색깔'에 대한 표적보도를 통한 이른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촉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정지환이 취재하여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이 1998년 12월호 제93면부터 제97면까지 사이에 게재한 기사 중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큰 제목 :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

② 작은 제목 : "병리학적 심리분석 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

③ 본문 :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최장집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논쟁의 과정에서 조선일보사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및 월간지 '월간조선'을 통하여 보인 태도에 관하여는 정신분석학을 통한 병리학 적 심리분석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조선일보의 기왕의 기사나 논설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해방 직전까지 몰두한 친일행각에 대한 원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반공에 앞장

설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자 반공을 내건 독재정권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자 반공을 내건 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정부 상태의 폭동사태', '광주시민'을 '난동자'로 매도하는 반면 그들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을 '구국의 영도자'로 찬양하는 등 자신을 확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왔다고 한 다음,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작은 제목에 이어서 그런 마조히즘적 정신분열 증세의 징후는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쓴 글에서도 감지되고, 한편 이른바 최장집 사건을 불러 일으킨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에게서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는데, 사디즘은 타인을 확대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증세를 말하고, 사디스트는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쾌락의 절정을 느끼므로 '특정한 이론을 신봉하거나 탐닉하지 않는 탄력적인 사고의 소유자'를 사상 검증을 통해 쓰러뜨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자극적인 일이 없으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여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과 그렇듯 거두절미한 대목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해석하는 지적 횡포만 있으면 된다고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는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는 1997년 '이장희 교수 죽이기'에서 우종창 기자의 거의 흡사한 방식을 썼다. 먼저 채택한 비법은 "전제와 결론을 잘라 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공산주의의 소멸은 세

계사의 추세"라는 이장희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괜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기자의 '말장난'에 졸지에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린 이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상황에서 하마터면 공안당국에 구속될 뻔하기까지 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하여

###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독자를 오도할 악의적인 의도하에 제목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모욕적·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가) 용공분자 부분

피고 정지환은 이 사건 제1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문제제기 월간조선의 이상한 반공 캠페인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 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의 정신상태"라는 큰 제목을 표기함으로써 일반독자에게 원고가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위험을 초래하였다.

### (나) 사상적 문제 부분

피고 정지환은 같은 기사에서 위 큰 제목 아래 "이동욱 기자의 주장 : 권오기 장관의 계인이 찍혀 있는 통일원 캠페인 광고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한다.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

가 있다.”라고 표기한 바, 원고는 자신의 기사에서 한 번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광고멘트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 (다) 마녀사냥 부분

피고 정지환은 역시 큰 제목 아래 “이동욱 기자가 97년 6월 28일 박홍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의 조찬회에 참여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린 자신의 기사를 발제한 뒤 극우단체와 검찰이 마녀사냥 소동을 일으켰는데…”라고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박홍 총장을 후원하는 모임은 극우단체로, 대한민국 검찰을 극우단체와 함께 마녀사냥을 하는 집단으로 모욕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비이성적 인간으로 해석되게 하였다.

#### (2) 판단

##### (가) 용공분자 부분

어떤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그 기사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만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사의 내용은 그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통상 제목은 간략하고 단적으로 내용을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를 갖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문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거나 독자에게 단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 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정지환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으로 “농구선수 우지원, 미스코리아 한성주, 가수

이선희, 통일원 장관 권오기가 ‘용공분자’라는 월간조선 이동욱 기자의 정신상태”라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먼저 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유명인사들이 용공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황당무계한 내용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 수준의 독자라면 그 제목만을 보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위 사람들이 용공분자라고 했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받았을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일반 독자로서는 위와 같은 제목을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건 제1기사의 다른 작은 제목과 본문을 더 읽음으로써 그와 같은 제목을 단 피고 정지환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나아가 본문을 통하여 이 부분에 관련된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정지환이 위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 것은, 원고가 위 월간조선 기사에서 통일원의 통일 캠페인 광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주장은 별지 제1 기재와 같이 논리의 비약과 사실의 왜곡에 터잡은 것이라고 본문에서 조목조목 논평한 결론, 즉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위 사람들이 용공분자라는 셈이 되어 그러한 논리에 터잡은 원고의 위 주장은 극히 부당하다는 같은 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비유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기사 전체의 인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제목만으로 독자들이 마치 원고가 위 사람들을 용공분자로 단정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상적 문제 부분

원고가 위 월간조선 기사에서 위 통일 캠페인 광고 중에 나온 우지원, 한성주, 이선희의 대사나 기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친북 지식인들에 의해 종래의 반공교육 비판 이론으로 사용되어 온 논리, 즉 ‘빨갱이 그림을 보고 북한 사람이 새빨간 줄 알았다’는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남한 국민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여 통일이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흐리고 적과 아군의 개념 없이 민족만을 강조하는 셈이 되며, 통일원이 많은 돈을 들여 북한의 통일전략을 홍보한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논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논평은 요컨대 위 광고 중에 나온 대사나 가사가 통일이나 반공교육에 관하여 그 동안 북한이나 친북지식인들이 주장해 온 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하여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이른바 ‘용공성이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지환이 이 사건 제1기사의 작은 제목에서 ‘원고가 위 사람들의 광고 중의 대사나 가사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용 관행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바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적시한 것이라고 여겨질 뿐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녀사냥 부분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게재한 이 부분 기사는 그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극우단체를 배후 조정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제2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 정지환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한 사실 및 위 월간조선 기사는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서 논리를 비약하여 한 비판이라는 나름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제2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비유적, 은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위 기사 부분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의견 또는 논평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의견 또는 논평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또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면, 사디즘(sadism)이라는 말은 이성을 학대함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는 변태 성욕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져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기사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기사의 체제와 내용에 나타난 피고 정지환의 주장과 논리의 전개 방법 및 작은 제목으로 사용된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과 합체되어 이를 읽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사가 과거의 친일행각을 은폐하고자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사에 소속된 원고가 회사측의 요청, 지시 또는 사주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의 의도에 영합하여 앞에서 본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도나 경위로 위 월간조선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 게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2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등인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기사의 작성 및 게재에 이르게 된 경위,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 및 내용과 그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2.

재판장 관사 조 용 구  
관사 조 양 희  
관사 이 재 석



판결 3

원고가 수사결과를 일방적으로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전문가로서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0년 3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김훈 중위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김중위의 시신부검을 맡았던 부검의인 이상한 씨가 SBS,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고 있는 예음문화재단 등 4개 언론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SBS는 3천5백만원, 동아일보는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SBS와 동아일보사에 대해, “원고가 수사결과를 일방적으로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전문가로서의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흠이 가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전문가로서 갖는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선후배나 동료법의학자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부검의 또는 법의학자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타격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 SBS에 대해서는 “원고가 방영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응한 SBS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 방영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액을 3천5백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검을 하기 전 혹은 부검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기관의 논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예음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원고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법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다른 전문가의 진술을 “호되게 비판받았다”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반하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SBS는 1998년 9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및 12월 13일 ‘8시 뉴스’에서, 동아일보사는 ‘월간 신동아’ 1999년 1월호에서, 조선일보사는 ‘주간조선’ 1998년 12월 24일자에

서, 예음문화재단은 '시사저널' 1998년 2월 24일자 기사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한 소대의 지하병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김훈 중위의 사망과 관련한 타살 의혹과 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문을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99가합34685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상 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  
서한맨션 102동 1111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최 광 석  
피 고 : 1.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송 도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 상 직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오 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4.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의 1  
대표자 이사장 이 승 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변론종결 : 2000. 3. 8.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3.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2000.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원고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은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의 1 내지 3호증, 제2의 1 내지 3호증, 제3의 1 내지 25호증, 제4호 내지 7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제13의 1 내지 26호증, 을 가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7의 1 내지 6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원고는 198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1990. 2. 28.) 및 해부병리 전문의(1995. 3. 7.) 자격을 취득한 후 1996. 4. 20. 군에 입대하여, 국군원주병원 병리과장 및 외래과장을 거쳐 1997. 4. 28.부터 1999. 4. 19.까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범의감식관 및 법의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 2. 25.경 김훈 중위의 시신을 부검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고 서울방송'이라 한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및 "SBS 8시 뉴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월간 신동아"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는 주간지인 "주간조선"의 발행회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이하 '피고 예음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정희상은 "시사저널"의 사회팀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경위

(1) 1998. 2. 24. 12:20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한 소대의 지하벙커에서 소대장인 김훈 중위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5. 12:40에서 13:40 사이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유족으로부터 전신부검의 동의를 얻어 김훈 중위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부검 직후 사망의 종류를 자살로 인한 외인사라고 적은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가 군수사관의 요구로 자살표기를 삭제한 사체검안서를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교부하였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김훈 중위의 사망 이후부터 계속하여 군 수사기관에 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타살의혹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1998. 3. 25.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찾아온 유족들에게 부검결과를 설명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1. 사인이 접사에 의한 두부관통총창사로 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사기관에 이송하였다. 1998. 4. 29. 한미합동 수사본부는 김훈 중위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는 공식수사결과(이하 '제1차 수사결과'라 한다)를 발표하였고, 발표장에서 김훈 중위의 유가족들은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항의하였다. 유족들의 이의 제기로 1998. 6. 1. 육군고등검찰부에서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1998. 7. 30. 육군고등검찰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다. 1998. 8. 30. 유족들은 재미 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로부터 김훈 중위의 타살가능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육군고등검찰부에 제출하였다. 1998. 9. 1. 육군고등검찰부는 노여수 박사를 참고인으로 신문하였다.

(2) 피고 서울방송은 1998. 9. 13.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혹! 김훈 중위 의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

로 김훈 중위의 사망과 관련한 타살의혹과 수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3) 1998. 11. 27. 육군고등검찰부는 김훈 중위의 사인은 자살이라고 수사결과(이하 '제2차 수사결과'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1998. 12. 4. 원고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1998. 12. 8.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다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였다.

(4) 피고 서울방송은 1998. 12. 13. "SBS 8시 뉴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검소견도 조작의혹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8. 9. 13.에 같은 프로그램에 방영하였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이후의 사건 전개 부분을 추가하여 "의혹! 김훈 중위 의문의 죽음 II"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각 제작, 방송하였다.

(5) 피고 조선일보사는 "주간조선 1998. 12. 24.자"에, 피고 예음문화재단은 "시사저널 1998. 12. 24.자"에 김훈 중위의 사망과 관련한 타살의혹과 수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6) 피고 동아일보사는 "월간 신동아 1999년 1월호"에 "특종기자 '정희상'의 판문점 김훈 중위 사건 9개월 추적기"라는 제목으로 김훈 중위의 사망과 관련한 타살의혹과 수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7) 1999. 1. 15.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주최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범의학자인 노여수, 노용면, 이운성, 황적준, 문국진 등과 원고, 현장감식분야전문가, 범죄심리학자 등 8명을 토론자로 한 범의학토론회가 열렸다. 1999. 4. 14. 위 합동조사단은 김훈 중위는 자살한 것으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2. 피고 서울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방송의 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의혹! 김훈 중위 의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1998. 9. 13. 방영한 기사내용 중(같은 프로그램에 "의혹! 김훈 중위 의문의 죽음 II"라는 제목으로 1998. 12. 13. 방영한 기사내용 중)

(가) 화면 윗부분에는 부검감정서상 "창벽과 창강 내에서 탄연의 부착이 관찰된다"라는 문구를, 아랫부분에는 "매연이 없는 사입구 내부"라는 제목의 부검사진을 각 배치하면서, 진행자 문성근 : "이것은 군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식서입니다. 그는 사입구 안으로 매연이 들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셨듯이 사입구 안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감식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입구 바깥쪽에는 매연이 붙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연이 묻어 있습니다(화면 윗부분에는 부검감정서상 "사입구 주변의 표피에서 화약의 감입이나 매연부착은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아랫부분에는 "매연부착이 관찰되는 사입구 주변"이라는 제목의 부검사진을 각 배치하면서). 이는 총구를 밀착하지 않고 쏘았기 때문에 매연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 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검군의관은 왜 실제 시신의 상태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적은 것일까요?"

[위 방송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1-1)'이라 한다]

(나) 1998. 9. 3.경 원고와의 전화통화내용- 화면 우측중앙에 자막으로 "이○○ 대위 부검군의관"이라고 표시하면서

담당피디 : 총알이 들어간 사입구 상태 있잖

아요. 그거하고 사진하고 소견하고는 좀 반대 되는 얘기를 쓰신거 같아서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원고 : 아닙니다. 반대되는 내용 없습니다.

담당피디 : 총알이 들어가는 구멍있잖아요? 그쪽에는 탄연의 부착이 관찰된다라고 쓰였는데요. 그것도 맞는 얘깁니까?

원고 :예

담당피디 : 그러면 그 사진하고 왜 틀린 겁니까?

원고 :아니, 사진을 잘 보십시오.

담당피디 : 사진은 잘 봤지요. 직접 찍으신 거를 저희가 본건데?

원고 : 예 잘 보시면 됩니다.

담당피디 : 사실은 저 미군측의 수사결과를 이대위님이 쓰신 부검소견서를 참고로 해서 사입구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착접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 : 그거는 수사관들이 내리는 거니까요. 제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피디 : 그러면 밀착접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십니까?

원고 :그건 이야기를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위 방송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1-2)'라 한다]

진행자 문성근 : 부검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부검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1998. 12. 13. 방송에서는 제외됨)

(2) 1998. 12. 13. "SBS 8시 뉴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부검소견도 조작의혹 받아"라는 제목 하에 방영

앵커 : 군수사당국은 김훈 중위 사망직후 실시한 부검결과 자살 때 나타나는 총상의 형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신의 형태는 부검감식서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부검서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훈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훈근 기자 : 자살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는 총상을 입은 상처부위의 상태입니다. 권총을 밀착시키고 쏠 경우 발사 순간 뿜어져 나온 화약연기와 입자가 모두 안으로 빨려 들어가 입구 안은 물론 두개골 내부까지 시커멓게 변합니다.

노여수 박사 :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절대로 떼고는 안해요. 왜냐하면, 이거 떼고 쏘면 이게 어디로 가서 맞을지 모르잖아요. 이걸 꼭 대고서 아주 짹 누르고 쏜다구요.

이훈근 기자 : (부검감식서를 화면에 보여주며) 'CG총상 입구 바깥쪽에는 탄약매연이 묻지 않았지만, 두개골 안쪽에 묻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밀착사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부검의가 찍은 시신의 원형사진에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총탄이 들어간 안쪽은 오히려 깨끗할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만 탄약매연자국이 묻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구를 머리에 밀착시키지 않고 일정거리를 두고 사격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누군가 근거리에서 사격했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전화통화 내용 : 기자 "사진하고 왜 틀린 겁니까?", 원고 "아니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훈근 기자 : 부검감식서에 나타난 또 다른 의문점은 바로 정수리 안쪽에 있는 피멍입니다.

노여수 박사 : 둘이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김훈 중위의 왼쪽에서 머리를 쳤고, 한 사람은 김훈 중위의 오른쪽에서 총을 쏘고...

이훈근 기자 : 일반적인 자살관행을 벗어난

총상과 의문의 피명이 김훈 중위의 타살가능성을 증폭시키면서 부검감식서도 조작됐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이훈근입니다.

[위 방송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1-3)'라 한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피해자의 특정여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것이 피해자를 가리킬 것 즉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요하지 아니하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상황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또한 어떤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표시 자체로부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도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상당한 다수 있고, 이들에게는 그 표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1,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김훈 중위의 시신을 부검한 군의관 이대위라는 표시는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군의관이 2명에 불과하고, 이씨 성을 가진 군의관은 원고 한 사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월간 말"이라는 잡지의 1998년 9월호에 원고의 실명이 게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 서울방송의 위 각 기사가 피해자인 원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상의 음성만을 방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 (2) 사실의 적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영상 매체의 방영 내용은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기사 (1-1) 및 (1-3)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1-1) 및 (1-3)은 원고가 부검감식서에 자신이 찍은 부검사진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1-3)은 원고의 부검감정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위 각 기사들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법의학 전문가로서 양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나아가 원고가 부검감정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법의학 전문가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방송은 김훈 중위의 유족들이 제공한 사진(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근거로 원고가 찍은 위 부검사진과 원고

가 작성한 부검감식서를 대조한 결과, 탄약매연이 총상입구 바깥쪽에는 묻지 않았지만 두개골 안쪽에는 묻어있다고 기재한 부검감정서의 내용이 시신 사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의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은 진실하고 가사 진실하지 않더라도 피고 서울방송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각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우선,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찍은 부검사진에는 사입구 바깥쪽에 매연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부검감정서에 매연의 부착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는 기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서울방송이 부검감식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사진이라고 제시한 사진(을 제3호증의 1, 2)이 원고가 찍은 부검사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제13호증의 13,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그 형상에 의하면, 위 사진은 원고가 부검하기 전에 군수사관에 의해 찍힌 사진임이 인정되고, 원고는 부검 당시에 시신의 사입구 바깥쪽에 부착된 매연이 부검 전에 닦여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시신에 관하여 직접 관찰한 내용 그대로를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방송의 위 기사 부분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부검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두개강 내부에 탄연부착 흔적이 없음에도 부검감정서에 탄연부착 흔적이 발견된다고 기

재하였다는 기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두개강 내부에 매연부착 흔적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두개강 내부에 매연부착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사부분 또한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두개골 정수리 안쪽에 있는 피멍은 타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9호증의 3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의학자들 사이에 두개골 정수리 안쪽의 피멍(두정부 혈종)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총기에 의한 관통사의 경우에도 두정부혈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법의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사실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 기사부분은 진실한 사실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먼저,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8,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그 형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13. “그것이 알고싶다”를 제작, 방영할 당시에는 원고가 현장사진을 보지 아니하고 부검함으로써 부검 전에 김훈 중위의 시신의 사입구가 닦인 상태임을 알지 못하여 부검감식서에 사입구 바깥쪽에 매연의 부착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음을 피고 서울방송이 알지 못하였고, 1998. 9. 1. 육군고등검찰부에서 노여수 박사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과 그때 처음으로 원고가 현장사진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사실을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서울방송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미 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가 두개강 내부에 탄연의 부착이 관찰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부검감정서와 부검사진이 정반대라고 지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방송이 1998. 9. 13.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당시에는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8. 12. 13. “SBS 8시뉴스”와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당시에도 피고 서울방송이 위 각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및 그 형상에 의하면, 육군 고등검찰부의 수사결과발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원고가 부검한 후 부검감정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현장사진을 보지 못하여 부검감정서에 사입구 바깥쪽에 매연의 침착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음이 밝혀졌고, 두개강 내부에 희미하게 탄연의 흔적이 관찰됨이 밝혀진 상태이었으며,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1998. 12. 14.자 주간조선”은 원고가 부검 전에 현장사진을 보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 기사를 작성하였음에 비추어, 위 각 기사가 다루는 내용이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임을 인식하였을 피고 서울방송으로서는 보도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군수기관으로부터 보도 직전까지 이루어진 수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위 기사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피고 서울방송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작진과 “SBS 8시 뉴스”의 이훈규 기자가 원고의 부검소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위 기사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방송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서울방송은 1998. 12. 13. “SBS 8시 뉴스”와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위 각 (1-1), (1-3) 기사를 제작, 방영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기사 (1-2)에 관한 판단

1998. 9. 3. 원고가 피고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의 담당피디로부터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요청을 거절하였고, 방송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기사 (1-2)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 서울방송은 1998. 9. 13.과 1998. 12. 13. 위 프로그램에 위 전화통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영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위배하여 한 피고 서울방송과 위 프로그램의 담당피디의 위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방송은 원고는 공무원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부검감정서상 의문점에 대하여 국민에게 밝힐 도덕적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의문사한 시체를 부검한 의사로서 공적 인물이므로 피고 서울방송으로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부검의의 부검결과 및 견해의 표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기사 (1-2)를 방영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에게 피고 서울방송의 인터뷰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원고와 전화통화내용을 방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에 반하여 전화통화내용을 방영하였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 서울방송은 피고 서울방송이 방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원고의 얼굴, 성명 등에 관한 것일 뿐 인터뷰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방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본질적 내용은 원고의 얼굴, 성명뿐만 아니라 인터뷰 내용도 방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방송은 1998. 9. 13.과 1998. 12. 13.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의 담당피디의 사용자로서, 위 프로그램의 담당피디가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정에서 그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가 피고 서울방송으로부터 피고 서울방송과의 전화통화내용이 방영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고 전화통화했던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서울방송은 그 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방송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방영 시점, 방영 시간, 피고 서울방송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서울방송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일반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수사결과를 일방적으로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

을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전문가로서의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흠이 가도록 한 점, 원고가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로서 갖는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선후배나 동료 법의학자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부검의 또는 법의학자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타격을 가한 점, 한편 원고로서도 부검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의학교과서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검 전에 혹은 부검감정서의 작성 전에 현장사진이나 현장검증조서를 보았다라면, 그리고 부검감정서에 시신의 상태에 대한 소견과 그를 기초로 한 원고의 법의학적 견해를 좀더 자세하게 밝혔다면 원고의 부검결과에 대한 의심들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 김훈 중위 시신의 두 개강 내부에서는 보통의 접사 혹은 밀착접사에서 보이는 탄연의 양 보다 훨씬 적은 양의 탄연의 부착이 관찰되었음에도 원고가 막연히 탄연의 부착이 관찰된다고만 부검감정서에 기재함으로써 의혹의 불씨를 제공한 점, 그렇지만 김훈 중위 시신의 부검과 관련하여 원고가 법의학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원고가 우리 나라에서는 드물게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로서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강력한 화력을 갖는 총기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여러 차례 부검해 본 귀중한 경험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법의학자로서 갖는 명예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서울방송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

그렇다면, 피고 서울방송은 원고에게 위 위 자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방영일인 1998.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방송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3. 피고 동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보도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동아 1999년 1월호 “특종기자 ‘정희상’의 판문점 김훈 중위 사건 9개월 추적기”라는 제목으로 “군의관의 직무유기”라는 소제목 하에 게재된 기사 중

(1) “군의관은 김훈 중위 시신부검 당시 자살자의 밀착사격 시신에 반드시 나타나는 두개골 및 두개강 내부의 매연부착흔적이 김중위 시신에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견서를 적을 때는 마치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적었던 것이다. 이는 곧 김중위 시신을 부검해 놓고 거기서 관찰된 현상을 적은 것이 아니라 법의학 교과서에 있는 자살자 시신의 특징을 옮겨 적었다는 뜻이 된다.”

[위 기사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 (2-1)’이라 한다]

(2) “노박사는 또 군의관이 법의학을 다루는 부검의가 직무상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무시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부검 후 시신의 장기와 주요 부분의 조직을 떼어내 1,000cc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은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부검시신이 자살과 타살을 다루는 수사 대상이라면 이런 행위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위 기사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 (2-2)’라 한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1) 피해자의 특정

어떤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표시 자체로부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도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상당한 다수 있고, 이들에게는 그 표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월간 말” 1998년 9월호에서 원고의 실명이 게재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군의관은 2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 동아일보사의 위 기사가 “김중위 시신을 부검했던 군의관”이라고만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 (2) 사실의 적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기사 (2-1)에 관한 판단

위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부검할 당시에 김훈 중위의 시신에는 두개골 및 두개강 내부의 매연부착 흔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견서를 적을 때는 마치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적었다는 내용으로서, 위 기사를 읽는 일반 독자들로서 하여금 원고가 부검 전에 자살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부검에 임하여, 자살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법의학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반하여 법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밀착접사로 자살한 사신의 특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김훈 중위의 시신의 두개강 내부에 매연부착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연부착흔적이 있는 것으로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법의학 전문가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동아일보사는 위 기사의 내용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더라도 피고 동아일보사와 정희상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기사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김훈 중위의 시신을 부검할 당시 김훈 중위 시신의 두개강 내부에 매연부착 흔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두개강 내부에 매연부착 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3호증의 13, 제13호증의 31,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및 그 형상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육군 고등검찰부의 수사결과 발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두개강 내부에 희미하게 탄연의 흔적이 관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기사가 다루는 내용이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임을 인식하였을 피고 동아일보사와 정희상은 보도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보도 직전까지 이루어진 수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위 기사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동아일보사와 정희상이 원고의 부검소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위 기사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동아일보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사 (2-2)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2-2)는 원고가 부검 후 시신의 장기와 주요부분의 조직을 떼어내 1,000cc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동아일보사는 위 기사의 내용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진실하고, 설사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기사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우선,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김훈 중위의 시신 중 사입구 주위의 조직을 떼어내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부검 후 시신의 장기와 주요 부분의 조직을 떼어내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나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동아일보사와 정희상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동아일보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책임의 근거

기사를 투고받아 이를 편집하여 출판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편집과정에서 투고자가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 작성자에게 기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기사의 게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심층보도기사와 같이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사의 경우 기사 작성자와 언론기관의 주의의무는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2-1)과(2-2)를 작성한 정희상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직원이 아니고, 위 기사의 모두에 “시사저널 사회팀 기자”라고 명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심층보도 기사를 게재하는 피고 동아일보사로서는 정희상이 작성한 기사가 진실한지, 명예훼손의 우려가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희상에게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기사의 게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동아일보사는 기사의 출판사로서, 기사의 작성자인 정희상과 함께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각 기사가 게재된 잡지가 배포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동아일보사는 그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각 기사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위 각 기사의 게재 시점과 게재 부분, 피고 동아일보사와 정희상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동아일보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수사결과를 일방적으로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전문가로서의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흠이 가도록 한 점, 원고가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선후배나 동료 법의학자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부검의 또는 법의학자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타격을 가한 점, 한편 원고로서도 부검감정서에 시신의 상태에 대한 소견과 그를 기초로 한 원고의 법의학적 견해를 좀더 자세하게 밝혔다면 원고의 부검결과에



대한 의심들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 김훈 중위 시신의 두개강 내부에서는 보통의 접사 혹은 밀착접사에서 보이는 탄연의 양 보다 훨씬 적은 양의 탄연의 부착이 관찰되었음에도 원고가 막연히 탄연의 부착이 관찰된다고만 부검감정서에 기재함으로써 의혹의 불씨를 제공한 점, 안면부의 피부를 절제하는 것이 유족의 정서에 맞지 않아 사입구 주위의 피부조직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음이 부검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김훈 중위 시신의 두개강 내부에서 보통의 접사나 근접사보다 탄연부착의 정도가 적어 원고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면, 사입구 주위의 피부조직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위해 유족의 동의를 구하여 피부조직의 절개를 해 볼 필요도 있었다는 점, 그렇지만 김훈 중위 시신의 부검과 관련하여 원고가 법의학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원고가 우리 나라에서는 드물게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로써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강력한 화력을 갖는 총기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여러 차례 부검해 본 귀중한 경험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법의학자로서 갖는 명예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동아일보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동아일보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가 배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1. 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3.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도내용-1998. 12. 24.자 주간조선에 “졸속수사가 군의문사 양산”이라는 제목 하에 게재된 기사 중

(1)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군수사의 허점이 가장 잘 드러난 예는 부검이다. 사건 현장을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검이 부실해 결국 이 사건을 의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사망 뒷날인 지난 2월 25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뤄진 부검에서는 부검의 기초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사진조차 보지 않고 부검을 한 것으로 최근 김훈 중위 의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하경근)에서 확인됐다. 군의관의 응급조치 등으로 시신은 당연히 원래 모습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부검의가 현장사진을 보고 비교해가며 부검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던 것이다.”

[위 기사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 (3-1)’라 한다]

(2) “결국 이러한 부실한 부검은 나중에 총기가 김중위의 관자놀리에 밀착한 상태, 즉 접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1-5센티미터 떨어진 근접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객관적인 사실자체가 뒤집혀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위 기사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 (3-2)’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이 사건 기사 (3-1)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으로 이루어진, 즉 평가를 포함한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의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인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또한 이로써 피평론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며, 평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논평기사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논평이 가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사 (3-1)은 부검의가 현장사진을 보고 부검하는 것이 부검의 기초요건이나 수사의 상식임에도 원고가 현장사진을 보고 부검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사는 위 기사는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기사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부검전부터 부검감정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현장사진을 보지 않고 부검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사관이 사망상황이나 현장상황을 설명해 주기는 하나, 현장사진을 제공하는 일은 없고, 부검의가 현장사진이나 현장검증증서를 보지 않고 부검하는 것이 부검의 관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조선일보는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검의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

내외 법의학자들과 법의학 교과서들이 현장검증이 끝난 시체의 부검 시에는 반드시 현장검증증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부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검 중 김훈 중위의 시신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흔적을 발견하는 등 시체의 상태가 변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조선일보사가 현장사진을 보고 부검하는 것이 부검의 기초요건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거나, 부검의가 현장사진을 보고 비교해가며 부검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부검을 하기 전 혹은 부검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기관의 논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사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 조선일보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기사 (3-2)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3-2)는 원고가 현장사진을 보지 않고 부검한 잘못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접사에서 근접사로 바뀐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는 위 기사는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위 기사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여수 박사는 1998. 9. 1. 육군고등검찰부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1 내지 2센티미터의 근접사라는 소견을 밝혔고 원

고도 이에 동의하여 1998. 11. 27. 육군본부고 등검찰부는 1 내지 2센티미터 혹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근접사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1-5cm 떨어진" 등의 표현은 진실에 반하다 하더라도, 위 기사를 읽는 일반독자에게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예음문화재단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도내용 1998. 12. 24.자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의 "달갈로 거대한 바위 깨다"라는 제목의 기사 중

"그러나, 군검찰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노박사의 소견을 공식 수사자료로 삼지 않고 그에 대한 참고인조사만 벌였다. 김중위 시신을 부검했던 군의관은 노박사에게 호되게 비판을 받았다."

[위 기사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사 (4)' 라 한다]

이 사건 기사 (4)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상 문제점과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노여수 박사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부검과정에서 큰 잘못을 하여 위 조사 당시 노여수 박사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예음문화재단은 위 기사는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위 기사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을나 제7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여수 박사는 육군고등검찰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법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법의학적 견해를 군검찰관의 원고에게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는 원고가 노여수 박사로부터 법의학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호되게 비판받았다"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반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기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예음문화재단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예음문화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방송, 동아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선일보사, 예음문화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2000. 3. 29.

재판장 판사 안 영 료  
판사 함 석 천  
판사 이 상 주



외국의 언론관계 판결

미국판결

TV토크쇼 프로그램의 광우병과 관련한 일부 토론내용이  
쇠고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사실적 근거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Texas Beef Group v. Winfrey  
(미국 연방 제5항소법원 2000년 2월 9일 선고)

판시요지

미국 연방 제5항소법원은, 광우병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미칠 위험성을 다룬 <Oprah Winfrey쇼>의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Oprah Winfrey, Oprah Winfrey쇼의 제작자와 배급자, 그리고 한 초대 손님을 상대로 하여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주 법률 Texas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의 위반, 그리고 '보통법상의 영업 비방 (business disparagement)', 명예훼손(defamation), 과실(negligence) 등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Oprah Winfrey측의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 신청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제5항소법원은, 문제된 발언들이 진실하고 확인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아무도 위 법

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방송에 나온 의견들이 고의적인 허위라고 판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개요

1. 서론

1996년 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cob Disease)의 새로운 변종이 영국에서 발견되었다. 이 변종은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1996년 3월 20일, 영국 보건부는 광우병(Mad Cow Disease 또는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된 쇠고기의 소비와 이 새로운 변종이 관련되어 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 냈다고 발표하였다. 광우병은 1986년 초 이래 영국의 소에서 발견

1) 연이어 광우병은 아일랜드, 캐나다, 그리고 다른 유럽의 소에서 발견되었다.

되어 왔다.<sup>1)</sup> 광우병은 소의 뇌에 치명적인 퇴행성 증상을 일으킨다. 광우병은 소나 양같은 반추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오염된 단백질 공급물을 소가 먹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쇠고기의 소비와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영국에서 큰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언론 기관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보도 기사를 실었다. <Oprah Winfrey 쇼> 역시 '위험한 식품(Dangerous Food)'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 방송으로 인해 쇠고기 시장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몇몇 텍사스 목장주들이, Oprah Winfrey, Oprah Winfrey 쇼의 제작자 및 보급자들, 그리고 그 쇼의 초대 손님이었던 Howard Lyman을 상대로 텍사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목장주들은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주 법률(Texas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의 위반, 그리고 '보통법상의 영업 비방(business disparagement)', 명예훼손(defamation)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그 후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원심은 영업 비방의 점만을 배심원단의 판단 대상으로 남기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배심원단은 영업 비방의 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목장주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비록 우리는 특정한 쟁점들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목장주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 2. 사실관계

영국에서 광우병 소동이 확산되자, <Oprah Winfrey 쇼><sup>2)</sup>의 제작진은 식품에 감추어져 있을 위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준비에 들어갔다. 편집자 James Kelly는 제작 준비에 착수하고 제작팀에게 광우병에 대한 조사를 맡겼다.

1996년 4월 11일 '위험한 식품' 편이 시카고에서 촬영되었다. Lyman<sup>3)</sup>, Gray Weber 박사<sup>4)</sup>, Will Hueston 박사<sup>5)</sup>, Linda Marler, James Miller 박사<sup>6)</sup>, Beryl Rimmer 등이 초대 손님이었다. 촬영 중 Winfrey는 초대 손님들과 몇 가지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토론 내용에는 영국에서의 새로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병, 그 병의 무서운 증상, 미국에서의 발병 위협,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미 농무성이 취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yman은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에 대하여

2) 'Oprah Winfrey 쇼'는 Oprah Winfrey가 사회자로 나오는 토크쇼인데, Harpo Production사가 제작을 하고 King World Production사가 배급을 한다. Harpo Production사는 Oprah Winfrey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이고, 그녀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

3) Lyman은 과거 목장을 경영하였던 자로서 채식주의자로 밝혀졌고, 인도주의 사회 (Humane Society)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4) Weber 박사는 동물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고, 전국 사육 우육 협회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를 대표하였다.

5) 미국 농무성을 대표한 Hueston 박사는 광우병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가이다.

6) Miller 박사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가진 의사이다.

Weber 박사와 Hueston 박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초대손님들은 미국이 광우병의 위협에 대하여 주의 깊게 대처해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하며 Lyman의 발언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들은 광범위한 동물 테스트와 관찰이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보고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촬영 후 Kelly는 광우병 편의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편집을 하였다.<sup>7)</sup> 약 8분에 걸친 Hueston 박사의 발언 중 37초 정도의 분량만 방송되었다. Weber 박사와 Hueston 박사의 발언들 중, (1) '반추동물에서 나온 것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방식(ruminant-to-ruminant feeding)'을 미국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점을 Weber 박사가 언급한 부분, (2) '반추동물에서 나온 것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하여 Weber 박사가 설명한 부분, (3) 영국과 미국 사이에 광우병에 대한 대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Weber 박사가 설명한 부분, (4) 소 도살 전 검사에 관한 방청객의 질문에 Weber 박사가 대답한 부분 등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부분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Lyman이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 Miller 박사의 발언은 전혀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편집된 토크쇼는 1996년 4월 16일 방송되었다.

위 방송 이후, 텍사스 일대 사육우(飼育牛) 시장의 소 값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였다. 목장주들은 가격 침체가 거의 11주 가량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육우 가격의 폭락은 시카고 시장의 사육우 선물 가격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부 목장주들이 <Oprah Winfrey쇼>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Winfrey는 Weber 박사와 한 농장주를 1주일 후에 방영된 토크쇼에 초대하여 '위험한 식품'이라는 방송 내용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Weber 박사는 '반추동물에서 나온 것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방식', 그에 대한 목장주들의 자발적 금지, 그리고 예상되는 정부의 강제적 금지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Weber 박사는 시청자들에게, 목장주들이 소의 건강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다.

### 3. 소송의 경과

1996년 5월 28일 Paul F. Engler와 Cactus Feeders회사는 텍사스 주 법원에 Winfrey, Harpo Production사, Lyman, 그리고 Cannan Communication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3일 후 Cannan Communication사에 대한 소송의 취하 신청을 하였다가, 며칠 후 Cannan Communication사를 다시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종전의 취하 신청을 받아 들었다. Cannan Communication사는 유일한 비주간(非州間) 당사자(non-diverse defendant)이었고, 이 사건은 이후 연방법원으로 넘겨졌는데, 주 법원에서의 취하로 인해 피고로 다시 추가시킬 권리를 상실하

7) 광우병을 다룬 토론은 그 날 방영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다른 방영 내용들로는 햄버거를 비롯하여 이. 콜리(E. coli) 박테리아에 감염된 고기의 위험, 음식 취급 요령, 시카고의 음식점 순방, 그리고 굴을 먹거나, 다이어트용 약초 차를 마시거나, 공공 음료수대를 이용하는 행위의 유해성 여부 등이었다.

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고들은 원심에서 Cannan Communication사를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들에 대하여 법률 문제로서의 판결(judgement as a matter of law)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주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들의 신청은 받아들이고, 영업 비방의 점에 대한 청구만을 배심원단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배심원에게 지시한 설명 중 '(비방성) 진술이 원고의 특정한 재산을 대상으로 그에 관하여 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배심원들은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목장주들은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이유

### 1. 관 할

원고들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담당할 복수의 주간 분쟁(州間 紛爭)으로 인한 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송결정이 복수의 주간 분쟁으로 인한 관할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결함이 추후 치유되었다면, 연방법원은 소송물로 인한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갖는다. 더구나 원고들은 주 법원의 관할이 유리하지 않다면서 Cannan Communication사를 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비록 Cannan Communication사가 이송 결정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심 법원은 재판 시에 적절한 관할권이 있었다.

### 2.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 주 법률 (Texas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

1995년 제정된 위 법률에 의하면, 부패성 식품(perishable food product)이 일반인의 소비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허위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그 식품의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부패성 식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장성을 잃을 정도로 품질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보급되는 농축·수산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파된 정보의 허위성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과학적 조사, 사실 또는 데이터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위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들 중 하나이다. 재판에서 당사자들은, 항소인들의 살아있는 사육우가 위 법이 보호하는 '부패성 식품'인지 여부와 과연 피항소인들이 살아있는 사육우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전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다. 원심은 심리한 결과 사육우가 '시장성을 잃을 정도로 부패'하지 않고, 따라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이 논점에 대하여는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동시에 원심은 피항소인들이 고의적으로 쇠고기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전파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논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결정적인 쟁점은, 피항소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일반인들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듯한 허위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파하였는지 여부이다. 정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이다. 이처럼 이미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1조에서의 언론 자유 조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의견의 표현 역시 사실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의 표현처럼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해 둔다. Peter Scalamandre & Sons, Inc. v. Kaufman, 113 F.3d 556, 562 (5th Cir.1997) 및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7-23, 110 S.Ct. 2695, 2705-08 참조. Howard Lyman과 Winfrey 쇼의 담당자들이 광우병의 위협과 그 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멜로드라마 식으로 다루었다는 점에는 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Lyman과 Weber 박사 및 Hueston 박사 사이에 주고 받은 말들이 아니라, Winfrey가 '자신은 햄버거 먹는 것을 완전히 그만 두었다.'라고 외친 부분일 것이다. Winfrey가 말하는 내용을, 미국 인들은 경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은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 사건에서 제소된 내용도 아니다. 그 대신, 이 사건에서는 Lyman이 두 가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편집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목장주들이 입증하는데, 목장주들은 그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목장주들은 Lyman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첫째, 목장주들은 광우병이 에이즈를 흔한 감기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Lyman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다. 둘째, Lyman은 허위로 미국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을 공적 관계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따라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는 것이다. 그 쇼가

방영될 무렵을 기준으로 할 때, Lyman의 견해의 사실적 기초, 즉 미국에서 '반추 동물에서 나온 것을 다시 반추 동물에게 먹이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었다. 그러한 방식은 목장주들의 자발적인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었다. Weber 박사도 이 점은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Lyman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존재하거나 발견될 수 있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FDA)은 <Oprah Winfrey쇼>가 있는 지 불과 수 개월 후에, 육우업계의 동의를 얻어 위 방식에 대하여 강제적인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광우병을 에이즈에 비교한 그의 발언은 과장된 것이었고, Winfrey는 쇼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그 발언에 흥미를 집중시켰다. 이 법원이 Scalamandre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비방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Lyman의 발언들이 허위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발언들은 모두 정확한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아무도 Lyman의 견해들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Winfrey와 Harpo Production사는 '위험한 식품' 편을 편집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prah Winfrey쇼>의 이번 방송은 Scalamandre 사건에서의 뉴스 보도와 다르지 않다. 이번 방송의 편집행위가 Weber 박사의 대답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았다. 편집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소에 대한 급식이나 조사 관행에 세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Weber 박사와 Hueston

박사는 Lyman의 주장을 반박하고, 광우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상대적인 안전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다. 목장주들이 편집행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위 법률이 정한 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편집행위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정보가 전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영업 비방(Business Disparagement)

목장주들은 마지막으로 영업 비방의 점에 대한 원심 법원의 배심 지도(jury instruction)가 잘못되었다고 다룬다. 첫째, 배심 지도 사항이 불필요하게도 피항소인들이 그들의 특정한 사유우에 대하여 '허위 비방성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배심원들에게 요구하였고, 둘째, '허위 비방성의 진술'이 '쇠고기를 대상으로 그에 관하여' 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사육우를 대상으로 그에 관하여' 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 목장주들의 이의 제기는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따라서 목장주들은 그 주장하는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상실하였다.

연방 민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는 제안된 배심 지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할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진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항소심에서 다룰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명백한 오류 (plain error)가 있을 경우는 예외인데, 만약 (1) 어떠한 오류가 있고, (2) 그 오류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3) 중요한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리고 (4) 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의 공평성, 완전성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배심 지도 사항에 대한 명백한 오류라고 인정된다. 목장주들은 원심에서 명확히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상실하였고, 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4. 결론

원심의 재판 당시에 원심 법원에 사건의 관할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Oprah Winfrey 쇼>의 '위험한 식품' 방송에 대한 목장주들의 청구는 처음으로 식품 비방에 대한 위 법률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목장주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법률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방으로 인한 청구와 관련한 원심의 배심 지도 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sup>8)</sup> □

출처 : Media Law Reporter 28권 pp.1481-1491.

번역 : 장상균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8) Jones 판사는 원심을 유지한다는 다수 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다만 위 텍사스 주 법률의 입법 의도나 연혁 등에 비추어 사육우가 위 법률의 보호 대상인 '부패성 식품'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다.

## 일본 판결

### PC통신 회원 다수가 알고 있는 공개대화내용의 일부를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左貝恭郎

피고 寺崎 司

동경지법 1994 (가) 9488호, 위자료 등 청구사건

1997. 12. 22. 민사제35부 판결, 청구기각·항소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사실 및 이유

#####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해 120만엔 및 이에 대한 1994년 6월 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 2. 사실 개요

본건은 피고가 PC통신의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와 교환한 ID의 부정사용에 관한 대화를 발췌하여 회원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①명예훼손, ②프라이버시 침해, ③통신의 비밀의 침해, ④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행위에 의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120만엔 상당)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 3. 전제사실

이하의 사실은, 증거를 괄호속에 적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 및 피고는 PC통신망 PC-VAN에 가입하고 있는 자이다.

2) PC-VAN은 일본전기주식회사(이하 '일본전기'라 한다)가 그의 소유인 호스트컴퓨터와 전국 각지의 사업소 컴퓨터(액세스 포인트)를 전용디지털회선에 의해 접속하여 위의 액세스 포인트와 각 회원이 갖고 있는 PC 등의 기기(이하 '회원단말기'라 한다)를 전화회선을 이용, 접속하여 회원에 대해 전자메일, 온라인대화서비스(이하 'OLT'로 한다), 전자게시판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3) OLT는 '일본전기'가, 복수의 회원이 동시에 출력·입력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이하 '액세스'한다) PC-VAN 내의 일정한 데이터영역을 회원에 제공하고, 각 회원이 위의 데이터영역에 통신문(메시지)을 써 넣으면 그 메시지가 같은 시각에 위의 데이터영역에 액세스하고 있는 모든 회원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장치로 회원이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위의 데이터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각에 같은 데이터영역에 액세스하고 있는 회원이 서로 메시지를 읽고 그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를 써넣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회원상호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4) 전자게시판은 '일본전기'가 회원이면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PC-VAN 내의 일정한 데이터영역을 회원에게 제공하여 각 회원이 위의 데이터영역에 메시지를 올리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와 같이 올려진 메시지는 PC-VAN 사무국이 지워버릴 때까지 회원이면 누구든지, 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다.

5) 각 회원은 '일본전기'와 회원계약을 체결할 때 알파벳 또는 숫자로 된 회원번호(user ID·이하 'ID'라 한다)가 부여되고 회원이 PC-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ID가 반드시 표시되는 외에도 각 회원이 자신들이 붙인 대화명이라고 불리는 통칭을 표시할 수도 있다. 회원규약상 각 회원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PC-VAN의 회원수는 1993년 4월, 당시 약 62만명 이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6) 1992년 6월경 AI출판주식회사(이하 'AI출판'으로 한다)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한 ID(THB56898)를 원고가 사용하여 OLT 등을 이용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원고는

전자게시판에 위의 건은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게시했으나, 그 후에도 원고가 ID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있고 위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았다.

7) 피고는 1994년 3월 25일 OLT에서 대화명 '醉人テラ'를 사용하여, 대화명 'ぼにいて-る(PONYTAIL)'를 사용하는 원고와 대화(이하 '본건대화'로 한다)를 교환하고, 동월 30일 '본건대화'의 통신기록(이하 '본건 통신기록'으로 한다)을 적당히 발췌하여 전자게시판에 게재했다(이하 '본건게시행위'로 하며 그 게시내용을 '본건게시'로 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앞서 6)의 의혹의 진상을 따졌으나 원고가 회답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아마 범인은 당신이겠지요"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 쟁점에 대한 판단

### 1. 인정사실

1) 원고는 PC-VAN에 있어서 SEB24321의 ID가 부여되어 대화명 'PONYTAIL (ぼにいて-る)' 외에 '百舌鳥伶人'의 이름을 사용, OLT 등을 이용하여 SIG(일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 등에 사용되는 특정의 데이터영역)의 하나인 '시민의 토론광장'의 어시스턴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원고는 'AI출판'이 발행하는 '월간 PC통신'지에 기사를 집필하는 등 컴퓨터 관계의 자유기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2) '右近'은 1992년 6월 15일 PC-VAN의 전자게시판에 "지난 날 OLT에 있어서 THB56898의 ID를 가진 회원이 나에 대해 나

와 나의 형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화명이나 직업 등의 개인적 정보에 관해 조롱하는 태도로 비열하고 짓궂은 발언을 집요하게 계속했습니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3) 위 게시물 직후부터 다음날 16일까지의 전자게시판에는 다른 PC-VAN 회원으로부터 THB56898 은 PONYTAIL 이다, THB56898과 SEB24321은 동일인물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SEB24321의 ID를 사용하여 전자게시판에, “나는 ‘右近’이 구면의 인물 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대화를 한 데 불과하다”는 내용 등을 게시했기 때문에, 동일인물이 SEB24321과 THB56898의 ID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4) 그 후 ‘右近’이 SEB24321 및 THB56898의 각 ID에 대해 메일 수신거부기능을 행사했던 바 원고는 동월 17일 ‘右近’에 대해 SISIKAI의 ID 및 ‘SIG司會’의 대화명을 사용하여 “수신거부 해선 안 돼”라는 제목으로 百舌鳥伶人명의로 전자메일을 발송했다.

5) ‘右近’은, ‘월간 PC통신’ 편집부 石井希世子 앞으로, 百舌鳥伶人으로부터 OLT를 통해 짓궂은 내용을 받았는데, 그가 사용하고 있는 ID (THB56898)는 ‘AI출판’의 것이 아니냐고 묻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동월 19일 그 회답을 받은 다음 동월 20일 전자게시판에 “百舌鳥伶人씨의 ID 부정사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기의 내용을 요지로 한 게시를 했다.

6) 이에 대해 원고는 동월 20일 전자게시판에 SEB24321의 ID를 사용하여, 위 5의 게시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월간 PC통신’ 편집부 간부 및 AI출판사장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을 게시했다. 또 石井도 같은 날, 전자게시판에 당해 ID가 AI출판으로부터 百舌

鳥씨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며, 대여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당해 ID가 AI출판의 소유이며 百舌鳥씨에 의해 장기간 부정사용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 등을 게시했다.

7) 그 후 전자게시판에서는 위의 5), 6)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어 회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해 납득이 가는 설명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이 올랐다. 이에 대해 원고는 ID사용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많은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해킹이나 대차ID의 사용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은 아니며 右近이나 石井은 억측만으로 주장하면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이상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게시, ID의 구체적인 입수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8) 그 후 AI출판은 대표이사 中谷恒敏 및 편집국장 小野英章의 연명으로 동년 7월 17일 전자게시판에 “PC-VAN 회원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당사 소유의 ID ‘THB56898’ 관리의 부주의로 불상사를 일으켜 PC-VAN 회원 여러분에게 많은 괴로움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THB56898의 ID를 사용한 자에 의해 OLT에서 짓궂은 일을 당한 PC-VAN의 한 회원으로부터 ‘월간 PC통신’ 편집부 石井씨 앞으로, 위 ID는 AI출판의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위 ID는 틀림없이 당사 소유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OLT와 그 밖의 사용상황으로 보아 위 ID를 사용한 자는 SEB24321의 ID 및 ‘PONYTAIL’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특정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9) 더욱이 SIG ‘시민의 토론광장’의 운영자 2명은 1992년 7월 26일부터 27일에 걸쳐 게시판에 “PONYTAIL씨를 어시스턴트 해임”이라

는 제목으로 하기의 내용을 요지로 하는 게시를 했다.

10) 그로부터 1년 이상이나 경과한 1993년 12월이 되어서까지도 전자게시판에는 PC-VAN의 회원들과 원고와의 사이에 부정사용에 관한 게시가 계속되어, 회원들로부터는 "AI는 사안의 전말을 보고하고 있으나 당신으로부터는 묵비 뿐", "오인이라고 우겨대려면 당신의 주장을 들려주기 바란다"는 등의 요망이 있었으나 원고는 왜 내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에게는 전말을 이야기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1) 이상과 같은 경과를 거쳐 원고가 AI출판 소유인 THB56898의 ID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원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으나 ID의 입수방법에 대해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남아있게 되었다.

12) 피고는 1993년 8월에 PC-VAN을 이용하기 시작하기까지 원고를 전혀 몰랐으나 동년9월경 AI출판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앞에 언급한 "PC-VAN 회원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게시를 읽게 된 것을 계기로 ID의 부정사용문제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게시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 자신은 구체적인 사실을 어느 것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피고는 1994년 1월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OLT에서 위 의혹에 관해 원고와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때 원고는 1대1로 스크램블(OLT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데이터영역에 액세스하고 있는 각 회원이 동의하여 그 시점에 액세스하고 있지 않았던 회원이 같은 데이터영역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건다면 위 사건의 진상을 설명한다고 발언했다.

원고의 위 발언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혹은 진실이며 PC-VAN 회원의 공적인 이해와 관련 있는 원고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13) 피고는 1994년 3월 25일 OLT에서 원고와 위 의혹에 관해 본건대화를 교환했을 때, 본건통신기록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해도 좋은지 허가를 구했으며 ID문제의 진상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ID문제는 조작이며 그 문제는 해결이 끝났으므로 제3자에게 응답할 필요가 일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피고는 "아마 범인은 당신이겠지요. AI가 말 한대로"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원고 및 피고는 본건대화에 스크램블을 걸지 않고 있었으며 본건대화 도중 약 20명의 회원이 액세스하였다. 더구나 OLT에서 어떤 회원이 액세스했을 때는 같은 시각에 같은 데이터영역에 액세스하고 있는 각 회원 단말의 화면상에 위 회원의 대화명 및 액세스한 취지가 표시되어, 액세스를 종료하든가 다른 데이터영역에 액세스를 변경하는 경우도 그 취지가 표시되었다.

14) 피고는 동월 30일 전자게시판의 하나에 본건통신기록을 적당히 발췌, 게시했다 (본건 게시).

더욱이 본건게시는 IHS파일이라는 그대로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려고 한 자는 위 메시지를 회원단말기의 디스크에 일단 보존한 다음 소정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본건게시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의 회원이 현실적으로 읽었는지는 전혀 모른다.

## 2. 명예훼손에 관하여

1)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게시 중의 “아마 범인은 당신이겠지요. AI가 말한 대로”라는 피고의 발언은 ‘아마’, ‘AI가 말한 대로’ 등의 표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I출판 소유인 THB56898의 ID를 부정사용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적시한 것은 아니며, 그 점에 관한 원고에 대한 의혹이 극히 농후하다고 평가,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본건게시행위의 당시에 있어서, 원고가 위 ID를 부정사용 했다는 의혹은 AI출판의 “PC-VAN 회원의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게시, 右近의 “百舌鳥伶人 씨의 ID 부정사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이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고, 원고의 반론이나 그 밖의 PC-VAN 회원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전자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회원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불특정의 회원간에 극히 농후한 의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용이하게 추측된다. 더구나 본건게시에 있어서, 원고의 ID 부정 사용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아무 것도 적시되지 않았고 원고가 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게시는 이미 AI출판이나 右近 등에 의해 전자게시판에 게시되었던 전기정보에 의해 불특정의 회원이 알 수 있는 위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에 새로운 사실을 부가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게시에 의해 의혹의 확실성에 대한 종래의 인상을 넘어 새롭게 원고에 대한 위 의혹을 질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게시행위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 가령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원고에게 있어 AI출판의 ID를 부정사용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본건게시행위에 의해 원

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PC-VAN 서비스에 있어서 회원이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무책임한 내용의 발언을 했을 경우, 다른 회원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서비스의 질서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위에 언급한 의혹의 진위는 다수의 PC-VAN 회원의 공공의 이해에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면식도 없고 몇번 정도 OLT에서 대화를 교환한 데 불과한 피고가 사사로 운 원한이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본건게시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본건게시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가 AI출판이 소유하는 THB56898의 ID를 입수하여 이를 사용, OLT를 이용함에 있어 AI출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할 뿐 아니라 AI출판 및 右近이 전자게시판에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게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든가 위 ID의 입수경위에 관한 원고의 변명은 그 내용이 극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이런 것들을 읽은 피고에게 있어, 원고가 위 ID를 부정사용 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게시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있어, 원고가 위 ID를 부정 사용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이상과 같이 피고의 본건게시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

성은 조각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3.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1) 원고가 AI출판 소유의 'THB56898' ID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은, 불특정다수의 회원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대로이며, 본건게시 중의 위 의혹에 관한 부분은 이미 PC-VAN의 회원사이에 공개되어 있었던 정보이고, 피고의 본건게시행위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건게시의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본건대화 도중에 약 20명의 불특정의 회원이 액세스 한 것을 원고는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대화를 끝내지 않고 계속, 스크랩블을 걸지 않았던 것은 앞에서 인정한 대로이며 원고는 OLT에서 공개성의 한도에 있어, 본건대화를 불특정인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행하였고 또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본건게시행위에 이른 것은, 의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위의 의혹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본건게시행위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또 원고는 본건대화를 불특정인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용인했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의 본건게시행위가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 4. 통신의 비밀의 침해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대화의 당사자이며 본건게시행위는 통신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과는 관련이 없고 또 유선전기통신법이 금지하는 행위도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 5.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본건통신기록은 OLT를 이용하여 교환된 대화문이며 그 내용은 일상의 대화와 특별히 다르다고 인정된 점이 없고 문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건통신기록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건게시행위는 하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의 본건게시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통신의 비밀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까지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것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判例タイムズ』, 1011호, pp.186~192.

번역 : 한동원 (전 중재위원)

## 독일 판결

### 일반인의 정보이익이 우선되는 경우 범죄혐의자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며, 범죄사실을 풍자한 내용이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면 인격권 침해라 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BGH), 1999. 12. 7.자 판결 - VI ZR 51/99

[Karlsruhe 지방상급법원(OLG)]

참조조문 : 민법 제823조 - 실명 언급

#### 판시사항

1.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이름을 신문에 언급할 경우 그 허용 요건은, 혐의사실 외에 보충적으로 그 사건이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일반과 특별히 관계있는 범죄행위이어야 한다.

2. 풍자가 인신공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표현의 핵심이 비유적인 것으로서 과장, 왜곡 및 날조된 표현이 풍자에 있어서 고유한 것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 풍자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방법과는 무관하게 표현의 핵심내용이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풍자적 형태는 당사자의 모욕에 대한 간접증거가 될 수 없다.

####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말까지 시 도로공사의 계약 관련 업무담당관으로 활동하였고, 1995년 중엽까지 지방정치의 당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989년 이래 마약퇴치를 위한 단체의 명예 회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 S신문 및 H신문의 발행자 및 편집자는 허용되지 않는 보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검찰은 1996년 10월에 이득 및 뇌물수수를 근거로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거리표시작업 공사를 한 회사 R을 수색할 때에 원고에게 보낸 계좌이체영수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10월 8일 원고의 집 및 도로공사에 대한 수색이 있은 후, S신문은 원고와 접촉을 한 뒤, 1996년 10월 10일자 1면에 원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의심받고 있는 관청”제하의 기사를, 지방소식면에는 원고의 이름을 언급한 “중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전 직원”제하의 사실과 원고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R회

사의 기부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1996년 10월 11일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검찰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을 언급하는 보도가 금지되었다. 1996년 10월 11일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 다른 지방신문이 원고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신문의 1996년 10월 12일자의 후속기사에서는 이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이유는 R회사의 지배인이 횡령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조된 계좌이체영수증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6년 10월 16일자의 H신문에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가 무죄임을 확신한다! 그의 권한으로 R회사는 거리표시 공사작업을 하였고 동시에 그의 마약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 죄송하지만, 물론 ‘반(反) 마약단체’에 ... 계좌이체하였는데 누가 이때 우연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당신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위로를 베풀고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에게 악을 믿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의 종결을 기대하고자 한다. 아침뿐이 기생하는 무리들!”

검찰은 1996년 11월 6일에 충분한 혐의사실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고, 이에 관하여 S신문은 1996년 11월 9일에 보도하였다.

원고는 1996년 10월 10일 및 16일자의 보도가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1996년 10월 10일자 보도가 원

고에 대한 선입견을 유발하였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으며 지방소식면에 그의 실명을 보도한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수사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는 수사와 원고의 명예직의 활동을 연계시켰는데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타당치 않는 것이며, 단체의 경리책임자는 피고에게 R회사의 기부에 관해 언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1996년 10월 16일자의 보도는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담고 있고, 이에 관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간과하고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소를 기각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1996년 10월 16일자의 기사로 인한 원고에 대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15,000DM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는 상고하였다.

### 판결이유

1. 항소법원은 1996년 10월 10일자의 신문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로 인하여 피의자의 하자있는 행위가 공개되어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보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을지라도, 인격권 침해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다.

1) 상고심은, 일반인은 단순한 수사절차의 개시를 죄가 있다는 증거와 동일시하고 따라서 수사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죄의 존재에 대한 비난과 “무언가 관계가 있다”는 의구심

을 배척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인의 주의의무는 높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이것에 관하여 Peters, NJW 1997, 1334, 1338 f.과 비교해 보시오).

이와 같은 보도의 허용 요건은 첫째, 최소한의 입증사실의 요건의 존재, 정보의 진실성 및 “공익성”이다(1977. 5. 3.자 판결 -VI ZR 36/74 - NJW 1977, 1288, 1289 및 1996. 11. 26. 자 판결 - VI ZR 323/95 - NJW 1997, 1148, 1149과 비교해 보시오). 동시에 당사자의 명예가 보도에 의하여 중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침해되면 될수록, 주의의무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1972. 6. 20.자 판결 - VI ZR 26/71 - NJW 1972, 1658, 1659 및 1977. 5. 3.자 판결(위와 동일)]. 이 원칙에 따라, 선정적인 것을 목표로 한 악의의 일방적 및 왜곡적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를 옹호하는 사실 및 주장이 고려되어야 한다(BVerfGE 35, 202, 232 - AfP 1973, 423 ; 1965. 10. 12.자 판결 -VI ZR 95/64 - NJW 1965, 2395, 2396). 보도 전에 정식으로 당사자의 견해를 청취해야 한다(BGHZ 132, 13, 25 m. w. N.). 마지막으로 보도는 일반의 정보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중대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언론인의 주의 및 진실의무에 대한 요구가 과도해서는 안되고, 그 요구는 의견발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BVerfGE 85, 1, 15; BGHZ 132, 13, 24; 조사 의무에 관하여 비교 1998. 6. 16.자 판결 - VI ZR 205/97 - VersR 1998, 1250 = BGHZ 139, 95 ff.). 범죄행위에 관한 보도는 시사적인 것으로 대중매체의 임무에 속한다(BVerfGE 35, 202, 230 f. = AfP 1973, 423).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문이 보도 시점에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정보만을 전파해야 한다면, 신

문은 기본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헌법상 수여된 공적인 여론형성에 있어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BVerfGE 97, 125, 149; 1977. 5. 3.자 판결 (위와 동일)].

그리하여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및 일반의 정보이익 간의 형량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사 보도 및 정보이익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해 표현은 표현행위의 시점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져, 철회 또는 손해배상이 고려되지 않는다[BVerfG, NJW 1999, 1322, 1324; 1996. 11. 26.자 판결 (위와 동일)]. EMRK 제6조 2항에 의한 무죄추정은 -그것이 신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한- 혐의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보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2)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1996년 10월 10일 자의 신문기사는 문제될 수 없다.

2. 지방소식면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불복된 판결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

1) 범죄행위의 혐의의 존재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동일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보도에 있어서 신문은 특별히 신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데에서 항소법원이 출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이름의 언급은 혐의보도가 허용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요구사항 외에, 당사자의 비밀유지이익도 고려하여 형량을 할 때에 일반의 정보이익이 더 중요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뒤이어 실명 언급은 원칙적으로 일반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중

대한 범죄 사건 또는 범죄행위에 있어서만 고려된다(BGH, 1994, 3, 17.자 판결 - III ZR 15/93 - NJW 1994, 1950, 1952; 비교 LG Berlin, NJW - RR 1999, 1253 f.). 당해 사례에 있어서 피의자의 지위 및 범죄행위의 종류를 고려해 볼 때 중대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실명을 언급한 보도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Loeffler/Steffen, Presserecht, 4. Aufl, LPG § 6 Rd. -Nr. 208과 비교해 보시오).

2)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보도시점에서 존재하는 혐의사실의 정도가 실명 언급과 모순되지 않았다는 항소법원의 견해는,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이것에 관하여 BGHZ 132, 13, 26 및 BGH 1994, 3, 17.자 판결 - III ZR 15/93 - NJW 1994, 1950, 1952과 비교해 보시오). 신문이 수사의 기초단계에서는 적어도 익명화하거나 완전히 보도를 중지해야만 하는 반면, R 회사에서 발견된 원고의 이름이 적힌 계좌이체영수증 및 단체에 행한 지급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실명 언급이 허용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사실이 된다.

3) 항소법원은 원고의 특별이익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항소법원에 의하여 법적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신문보도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원고의 지위가 충분히 증명되었고, 상고심도 의심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은 적절하게, 원고의 두드러진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를 1996년 10월 11일자의 다른 지방신문이 수사과정에 대한 보도 외에 원고와 인터뷰한 기사를 원고의 사진과 더불어 게재하였다는 것에서 보고 있다. 원고는 이미 마약퇴치를 위한 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내 일반인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고의 전 직업활동 및 원고

가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회사의 기부 간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수사과정 중에 있는 원고의 가치분결정에 대한 일반의 정보이익은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단지 지방소식면에서 언급하였지만 도로공사에서의 원고의 활동에 대한 묘사 및 일반에 대한 마약퇴치를 위한 단체의 장으로서의 활동을 고려해 볼 때 분명한 실명 언급 없이도, 원고와의 동일시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원고는 1996년 10월 10일의 보도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상고심은 기각될 수 있었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의 상고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1996년 10월 16일자의 H신문 보도로 인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 풍자로서의 특징을 갖춘 이와 같은 만평 기사는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5조 1항에 의한 의견발표 자유의 보호 하에 있다는 항소법원의 법률적 출발점은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에 있어서 그 가치 평가적 요소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실적 내용은 분명히 뒤로 후퇴하고 전체적으로 의견 발표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BGHZ 132, 13, 21 및 1994, 6, 28.자 판결 -VI ZR 273/93 - VersR 1994, 1123 및 1993, 10, 12, 자 판결 - VI ZR 23/93 - VersR 1994, 57, 58 f.과 비교해 보시오). 예컨대 만평에 의하여 원고가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단지 기소되었다는 인상 또한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므로 허용되는 혐의보도의 한계도 초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평의 결론에서는 분명하게 수사

절차의 종결을 기대한다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상고심은, 항소법원이 문제의 표현을 허용되지 않는 인신공격으로 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가. 타인의 행위에 대한 풍자의 형태로 행해진 의견 및 비난에 있어서의 한계는, 그것이 순수한 인신공격 또는 외형적 모욕에 관한 것인지 또는 그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는가에 있다(BVerfGE 86, 1, 13; 82, 272, 283 f.; 369, 380; BVerfG, NJW 1995, 3303, 3304, 3307; 1993, 1462; 1993, 6, 16.자 판결 및 1993, 10, 12.자 판결). 물론 문제가 된 표현은 이와 같은 한계를 넘지 않았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인신공격”의 개념은 의견발표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로 인하여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현내용이 사안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과도한 비난으로 개인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전면에 있을 경우에만, ‘인신공격’에 대해 말할 수 있다(BVerfG, NJW 1995, 3303, 3304; NJW 1991, 1475, 1477; BGHZ 91, 117, 122 및 1993, 10, 12.자 판결).

가치평가에 대한 타당한 법적 요건은, 표현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는 가이다. 인신공격의 내용을 담은 만평을 평가함에 있어 항소법원은, 특히 풍자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는 첫째로 표현내용과 저자에 의하여 선택된 풍자적 포장간의 구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표현의 본래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는 점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BVerfGE 75, 369, 377 f.; 86, 1, 12; BVerfG, NJW 1998, 1386, 1387).

그 표현이 풍자적인 것으로서 낯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시각에서 볼 때에 허용되

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의견 대결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명히 저자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표현은 기본법 제 5조 1항의 보호를 받는다. 부정부패에 관한 비난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중요하게 관계된 문제이어야 한다(1993, 10, 12.자 판결과 비교해 보시오).

나. 항소법원은, “당신의 마약단체에 대한 기부...용서해 주시기를, 물론 마약퇴치단체에”, “-당신처럼 - 사심이 없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자”와 같은 통상의 표현은 단지 풍자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고, 표현에 대한 가치평가에 인신공격으로도 고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표현을 심사할 기준이 없는 한, 이곳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은 풍자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핵심적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완화될 것이다(BVerfGE, NJW 1998, 1386, 1387).

과장, 왜곡 및 낯선 묘사방법이 풍자의 고유한 특징이 될 경우, 이는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풍자는 언어의 유희를 통하여 표현의 특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독자를 선동하고 그림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자신의 주제로 유인하기 위하여 먼저 웃음으로 독자를 자극하고자 하기 때문이다(BVerfGE 86, 1, 11 = AfP 1992, 133 - NJW 1998, 1386, 1387; 1982, 6, 8.자 판결 - VI ZR 139/80 - NJW 1983, 1194, 1195과 비교해 보시오).

풍자의 범위에서는 양호한 미적 기준 및 언어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수준의 결정을 위한 검토”가 행해져서는 안된다(BVerfGE 75, 369, 377 = AfP 1987, 677). 또한 항소법원은, 만평이 원고의 명예적 활동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목표했다는 점과 이의가 제기된 ‘실연’ 부분은 비판적·풍자적

표현의 문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 그 밖에 기사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는, 단체는 마약을 옹호하지 않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이밖에 상고심은, 항소법원이 만평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4. 만평이란 표현행위는, 인신공격의 관점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법 제5조 1항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므로, 기본법상 동일하게 보호되고 있는 원고의 인격권과의 형량이 필요하다. 형량을 한 결과 당해 표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금전배상의 인정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 사례의 상황을 살펴 볼 때, 원고의 인격권은 표현의 내용으로 뿐만 아니라 만평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의견발표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결정적인 것은, 풍자적인 보도가 그 표현의 핵심을 볼 때에 풍자적인 비유의 표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만평이 원고의 무죄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는 범위에 있는 한, 이는 위에서 설명한 수사과정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견의 표현으로서 형량되어야만 하고, 특히 사실적 관점에서 볼 때에 혐의보도의 한

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법원이 1996년 10월 16일자 의 만평 보도의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 상고심은 이의를 제기한다. 수사절차는 1996년 11월 6일에 종결되었고 항소법원이 지적인 원고에 대한 지방소식면의 좀 더 호의적인 보도는 절대적으로 원고의 검사의 언급에 기인한 것으로, 상고심이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량은 불복된 판결을 유지케 해 줄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의견발표의 자유는 표현된 의견의 내용 및 형태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표현된 의견은 가치 있는 것인지 또는 무가치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또는 타당치 못한 것인지, 근거 있는 것인지 또는 근거 없는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또는 이성적인 것인지에 달려 있지 않다(BVerfGE 85, 1, 14 f.; BVerfG, NJW 1995, 3303, 3304; 1993, 10. 12. 자 판결). 오히려 결정적인 것은, 만평에 대한 평가가 허용되지 않는 인신공격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것과 표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출처 : AfP(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31. Jahrgang, Heft 2-2000, SS.167-172

번역 : 손원선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강사)

영국사례 1

**유명인의 아들이라도  
16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사생활이 공개되는  
사진 게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영국 수상과 그 아내인 블레어 여사는 1999년 12월 21일자 데일리 스포츠(The Daily Sport)지에 “호색한 블레어”라는 제목과 함께 게재된 아들의 사진이 보도실천강령 제6조(아이들)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사진은 신청인들의 아이가 참석했던 무도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한 소녀와 춤추고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기사내용과 사진제목에는 아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신청인들은 아들의 허락 없이 촬영되고 보도된 것은 보도실천강령 제6조 2항과 5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실천강령 관련 조항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이 기사화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위에 상관없이 기사화하는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의 편집장은 그 파티가 파티주체자들이 초대한 신문사나 사진대행업체 사람들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였다고 말하면서, 전년도에는 그에 따른 어떠한 불만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글을 보내왔다. 그는 또한 신청인들의 아들이 그 자신의 복지(welfare)와 관련되어 촬영된 것이 아니며, 파티주체자들은 문제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에 대해서 어떤 의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사는 소년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행사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실천윤리강령 제6조

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평 결

보도실천강령은 모든 청소년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아이들이 공개의 두려움 없이 상업적인 파티를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수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년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한 후, 부모의 지위로 인해 기사에 이름을 밝혀졌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 제6조 2항과 5항 위반에 해당한다.

제6조의 목적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신문이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거나 청소년들의 복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할 때는 충분하고 적절한 동의를 구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데 있다. 단지 부모의 지위 때문에 아이의 이름이 밝혀진

이 사건의 사진은 분명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CC는 상업적 동기로 행사를 열었던 그 관계자들은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된 이 같은 경우 먼저 그들 부모의 허락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그렇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6조 2항에

위배된다. 또한 PCC는 아이들 누구라도 사진에 의해 신분이 밝혀져서는 안되며 따라서 신청인의 아들 이름이 기재된 것은 분명히 제6조 5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PCC는 다른 신문사들이 사진 대행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들을 기사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명 보도실천 강령이 모든 청소년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도로에 잘못 착륙했던 것이 충돌사고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항대변인은 언론매체에 사고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은 문제의 기사가 비행기가 마치 불법적인 궤도 수정을 실행한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이 항공분야의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그들이 아마추어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신문사측은 공항과 경찰 그리고 응급구조대의 보도협조를 받지 못한 상황하에서도 가능한 정확하게 보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응급구조대의 정보원은 사망자 가운데 두 명이 목이 잘려 있었다는 것을 기사에게 말했으나 공식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신문사측은 응급 구조차의 운전기사 말을 믿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사고현장에는 없었지만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과 함께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후 신문사는 검시에 의한 공식적인 사실들을 보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신문은 항공기 사고 조사자들이 자신들에게 단지 조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만 말했던 사실을 전했다. 비행기가 항공 유도도로에 잘못 착륙했다는 것은 신문사측의 생각이었다.

## 영국사례 2

### 비행기 추락 사고원인과 희생자 시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여 유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부인들이 1999년 9월 19일자 선데이지(Sunday)에 실린 "공항 참사로 세 명 사망"이라는 표제하의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신청인들을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5조(슬픔 또는 충격에 대한 침해)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불만신청의 일부는 수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들의 남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항공

기 추락사고를 다룬 내용이였다. 신청인들은 희생자들 중 두 명이 목이 잘려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보도실천강령 제5조를 위반한 부정확하고 무신경한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구조대는 언론 브리핑에서 목이 잘려 나갔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를 명백하게 부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문제의 신문보도는 신청인들이 남편 시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신청인들은 비행기가 유

신문사는 만약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그 후 상세하게 사고 결과를 다룰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 평 결

PCC는 사고 희생자들의 비행기 조종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신문보도가 명백한 억측이라고 할만큼 잘못 보도되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비행기가 항공 유도로에 착륙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PCC는 신문이 정확성을 분명하게 해 줄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행기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것을 기대했다.

PCC는 충분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없을 초기단계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망자와 관련한 보도는, 신중하게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유족들을 슬픔에 빠지도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PCC는 기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으며,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진술을 사실로서 보도했다는 점과 유족들에게는 충분히 민감한 문제였음에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 호주사례 1

### 재판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 후 재판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은 수용할 수 없어

호주신문평의회는 미첼 리안 씨가 자신이 피고였던 재판을 보도한 '웨스트오스트레일리언(The West Australian)'지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이 어떤 사건의 재판 이전 상황을 보도했다면 재판의 지연과 소송관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재판 결과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의회는 강조했다.

1997년 8월, 신청인이 법원의 금지 명령(restraint order)을 어겼다는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첫날의 심문에서 부각된 사항들을 토대로 "여자 집주인이 임대 거주인을 스토킹(stalking)의 명목으로 고발하다"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 후, 재판은 1998년 1월로 연기되었고 다시 그 해 8월로 스토킹(stalking)의 명목으로 고발하다"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 후, 재판은 1998년 1월로 연기되었고 다시 그 해 8월로 미루어졌는데, 8월 재판에서 마침내 신청인은 조건부 석방(conditional release) 조치가 내려

졌다. 그러나 '웨스트오스트레일리언'지는 마지막 이틀에 걸친 공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불만으로 제기했다.

단지 원고의 입장만을 보도했기 때문에, 기사는 균형을 잃었으며, 자신은 '스토킹'으로 고발당한 것이 아님에도, 표제에 스토킹이라 표현하여 재판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문사는 원고측의 누군가에게 좌우되어, 수많은 재판 가운데 신청인의 재판을 보도하였다.

'웨스트오스트레일리언'지는 신청인의 세 가지 불만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문사는 12개월에 걸쳐 재판이 두 번이나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놓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사 제목은 첫 공판에서 주어진 증거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며, 어떤 재판사건을 기사화할 것인가는 편집장이 재판사건의 뉴스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고

했다.

신문사는 1999년 초 신청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 재판결과와 상세한 판결내용, 증인으로서 원고인 집주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치안판사의 주장을 기사화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하기는 분명 어려우나, 신청인이 후속 기사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재판결과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보도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여긴다.

불만사항은 신문사가 재판진행 과정 중 공판 첫날에 대해 보도한 헤드라인과 기사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지지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평의회는 기사 제목이 그날 법정에서 진술되어진 것을 합당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신청인의 주장 즉, 자신의 재판 사건이 선택 보도됨에 따라 자신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 주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용하지 않았다. □

드는 문제의 기사내용을 부인하는 존 포드햄의 편지를 다음날, 독자투고란에 게재하였다.

불만을 신청한 찰스 채플 씨는 문제의 기사는 독자들을 우롱한 엄청난 언론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최초의 기사와 관련 테일러에게 직접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왜 사실을 잘못 알게 된 독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항의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선헤럴드지가 기사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고 신문사도 이를 인정했다.

선 헤럴드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인 알렌 레이블은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마크 테일러에게 사실을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독자들에게 신문은 오직 진실하고 정확한 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라디오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사수집과정에서 많은 재확인 절차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호주평의회는 신문사가 마크 테일러와 진정으로 화해했고 사과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

## 호주사례 2

### 국민투표와 관련 영향력 있는 인사의 발언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관련, 신문 제1면에 '여당을 지지하는 똥똥한 창녀들(Tubby Bats for Queen)'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선 헤럴드(Sun Herald)에 대한 불만을 수용했다.

그 기사는 존 하워드 수상에 의해서 막후 조종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의 전 회장인 마크 테일러가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테일러의 행동을 옹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했다.

다음날, 선 헤럴드의 자매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The Sydney Morning Herald)는 "테일러의 부인(否認)"이라는 제목으로 테일러의 매니저인 존 포드햄이 마크 테일러는 결코 국민투표 논쟁에서 찬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선 헤럴

# 위원회소식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마쳐

지난 2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회가 5월 13일, 공식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월 1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자체 심의결과, 50개 매체 93건의 기사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조치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결과 공표요건 미비가 14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조항이 7건, 상업광고 제한규정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와는 별도로 후보자의 반론보도청구 1건이 접수되었으나 청구권 행사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정정과 사과문 게재를 원하는

시정요구 4건은 청구가 있던 후 정정보도 내지 해명 기사 등이 게재됨으로써 모두 취하됐다.

한편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결산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심

의결과 분류 및 분석 내용, 심의안건 및 결정문, 종합평가, 관련 법규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선거기사심의의결 현황을 결정 내용별, 매체별, 심의 대상기사 유형별, 위반내용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산 좌담과 송효빈 위원이 집필한 평가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문의:심의 2팀 02-732-6031~3)

## 지난 3월 31일, 위원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 열려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위원회 창립 19주년을 맞아 서울 사무처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박영식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성의 있는 중재 서비스를 통해 새 천년에 걸맞는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미경 심의2팀 차장 외 3명의 유공직원에게 대한 포상식도 함께 있었다.

## 위원장, 북미지역 언론계 시찰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신문평의회(Ontario Press Council)와 미국의 LDRC(Libel Defense Resource Center) 등 언론피해구제 관련 기관을 시찰했다. 방문기간동안 캐나다 온타리오 신문평의회 의장 Doris Anderson 씨, LDRC 사무국장 Sandra Baron 씨 등을 만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신문사를 방문, 사설면 편집인 John Diaz 씨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언론매체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토론을 가졌다. 이번 시찰에는 권우동 조사연구팀장이 수행했다.



시찰단과 S.F. Chronicle지 사설면 편집인 John Diaz씨

## 제주와 충북지방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언론중재제도의 홍보와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8일과 6월 16일 제주와 청주에서 가진 토론회가 각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제주토론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양경승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성과를 회고



하고 그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령이 신문, 방송 등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선거법에도 특별규정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하여 신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통일적·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충북토론회에서는 최선열 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쟁점들을 수용자 관점에서 조망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위원은 인터넷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나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진정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반론권 행사 여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사후 피해구제 방안이 나오도록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 소식지 창간

위원회의 각종 행사와 업무 현황, 위원 동정 등

위원회 안팎의 소식을 전달하게 될 소식지 <언론중재위원회>가 7월 중순 창간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월 1회 발간 예정이며, 창간호에는 최근 위원회 행사 내용, 언론관계판결, 위원 동정, 유관단체 소식과 이밖에 중재신청사건 통계 및 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발간

최근 국내 언론관련 판결 내용을 담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이 6월 30일 발행되었다. 이번 제7집에는 1999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상하급심 판결 가운데 반론보도청구사례 6건을 비롯, 정정보도청구사례 1건, 손해배상청구사례 21건, 헌법재판소결정례 3건 등 총 33건의 판결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언론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법제연구에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조사연구팀 02-732-6011~3)

##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다음과 같이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        |          |       |
|--------|----------|-------|
| 기획실    | 기획팀장     | 장원상   |
| 중재심의실  | 심의1팀장    | 오광건   |
| 중재심의실  | 심의1팀 차장  | 임득상   |
| 중재심의실  | 심의2팀 차장  | 이미경   |
| 기획실    | 기획팀 차장   | 조남태   |
| 기획실    | 조사연구팀 차장 | 정희성   |
| 기획실    | 총무팀 차장   | 강현석   |
| 대전사무소장 |          | 권오근   |
| 대구사무소장 | 직무대리     | 류석창   |
| 전북사무소장 | 직무대리     | 안백수 □ |

# On-Line 중재상담실



## 인용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가

인터뷰 기사 중 취재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취재원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상대측에서 금품이나 그에 상응한 물품을 제공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요구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과연 언론사가 보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인터뷰 기사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일부' 라는 표현을 인용했으므로 사실보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니므로 한 명의 특정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ang2383@hanmail.net



기사내용 중 취재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화 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데요. 인용한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 반론보도청

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인의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의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뉴스관련 월간지의 잘못된 기사에 반론 보도 혹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평범한 낚시꾼입니다. 한 낚시관련 월간지에서 잘못된 낚시이론을 펼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잡지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반론을 기재하였으나 바로 삭제 당하였습니다. 부득이 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월간지는 잘못된 이론에 대한 정정기사는 고사하고 버젓이 그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라 그들의 잘못을 수정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대부분의 독자가 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kue@naver.com



귀하는 한 낚시관련 월간지가 잘못된 사이론을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 혹은

은 반론보도를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귀하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한 그 기사가 사실 보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된 기사는 뉴스이론에 관한 것으로서 기자나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나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안내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질의**

저는 10여 년 넘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5월 3일에 걸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교사에 비해 월급이 많다고 보도를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 올 때 수당까지 포함하여 28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며, 지금도 연봉이 1500만원 안팎입니다.(세금제하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서)

1시간당 3,500원꼴 퇴근시간은 6시이며 저녁 8시까지 일한 것은 시간외수당에서 제외하고 8시 이후부터 하루 4시간만 인정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교사보다 월급이 많다는 것인지 왜 언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공무원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인지. 싱가포르 공무원이 어찌고저찌고 할 때도 왜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보도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ㅇㅇ



언론매체가 일반공무원의 월급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방송법 제91조 등에 의거 언론의 사실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 받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메일내용만으로는 중재신청이 가능한 지 알 수 없으므로 중재상담자(02-732-6031)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합니다**

대구지역의 "오락실 단속공무원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4.17~4.26일 동안에 ○○지역방송, ○○매일신문에서 피의자의 성명(실명), 직업, 사무실 전경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보도하여 가족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요?

awone00@hanmail.net



**사건혐의자의 실명공개 보도**

귀하는 대구지역 언론사가 사건피의자의 실명과 직업 등을 공개 보도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실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당장 중재신청하기가 곤란하고 어렵다면, 추후에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보도된 혐의사실이 무죄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해 달라고 하는 추후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메일내용만으로는 자세하게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위원회의 대구사무소 중재상담자(053-763-0020)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멋대로 남의 이름을...**

저는 금호고속에 근무하는 송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보 2000. 4. 19일자 사회면에 보도된 표제 “강남터미널 신축공사 하차장 완공 앞두고 와르르” 기사에 저의 허락도 없이 회사명과 실명을 공개한 보도와 함께 제가 한 말이 아닌 내용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니 내용을 확인 후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gentle@netian.com

 귀하는 ○○일보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발언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신문의 보도내용이 발언한 내용과 다르게 보도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발 제지해 주십시오

4월 6일 ○○방송 9시 뉴스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앵커는 “의사들이 왜 집단휴진을 하는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의사들이 왜 집단 휴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돈만, 병원 수입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다른 이유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대정부 투쟁을 하였고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자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층이면서 세금은 봉급쟁이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내면서 특권을 누리었는데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의사들을 집단 매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앵커와 기자의 대화내용입니다.

“앵커: 정부가 그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혹시 속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자: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의약분업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도했어야 했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다니요? 의사들이 지금껏 그렇게 완전한 의약분업 쟁취, 대체조제, 임의 조제 근절, 정부의 의보재정 지원 등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속내를 모르다니요? 모르면 이야기를 하거나 말든지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의사들의 주장은 전혀 인용하지 않은 채 신년도 수상한 시민단체 입장만 그렇게 인용합니까?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전 의사들의 집단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총보다 펜이 무섭다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전국 의사들의 분노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부로 기사를 쓰는 기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일 것입니다. 이 기자와 앵커에 대해서, 또한 ○○방송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정보도를 기대합니다.

ped@com.ne.kr



귀하들께서는 ○○방송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단지 돈만, 병원 수입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방송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내용이 불충분하고 일방적이어서 시청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게 방송되었다면, 그 방송과 관련이 있는 의사협회 등 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중재상담자(02-732-6031)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를 우롱한 ○○방송을 고발합니다.

○○방송은 자사 방송광고를 통해 3.30. 11시 30분부터 (특별생방송 : ○○방송 게임스페셜)을 방송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교수들의 게임을 생방송으로

방송한다는 광고를 철석같이 믿고 늦은 밤 11시 30분에 방송을 보았지만 방송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작 게임은 녹화방송. 그것도 편집된 녹화방송으로. 〇〇 방송의 시청자 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 MC는 마치 게임이 생방송인 양 진행을 하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시청자 우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뻔히 녹화방송인 것이 다 보이는데 생방송인 양 시청자를 우롱한 〇〇방송을 고발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사과 방송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시청자 우롱하는 방송국과 PD가 나오지 않도록...

kentkyu@netsgo.com



귀하는 〇〇방송이 녹화방송을 마치 생방송인 양 방송하여 시청자들을 우롱했다며 사과 방송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방송법 제41조 등에 의거 언론의 사실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 받고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불만사항이나 일반적인 방송에 대한 불만은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〇〇회와 〇〇일보의 추잡한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난 주 토요일, 2월 13일자 〇〇일보에 다음과 같은 허위 보도가 실렸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는 회원들로 하여금 여성 〇〇회측을 공격하도록 직접적인 지령을 내린다가, 또 간접적으로라도 조장한 적 조차 없는데, 어째서 이런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단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마땅한 대응 전략을 알려 주십시오. 그냥 참

고 넘어가기에는 이들의 소행이 너무나도 괴씸합니다.

pessimist\_2000@yahoo.co.kr



귀하는 2월 13일자 〇〇일보에 징반모가 회원들로 하여금 여성 〇〇회측을 공격하도록 직접적인 지령을 내린다가, 또 간접적으로라도 조장하였다고 보도되어 단체의 공신력을 떨어 뜨리고 이미지를 훼손 당했다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보도내용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내용이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보도된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당사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나 중재신청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중재담당자(02-732-6031)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지의 불법광고 피해**

정보지에서 특정업체의 광고를 대량 수주받아 광고를 실는 한편 광고주와의 인터뷰내용을 기사화 하여 보도하였을때, 또 그 기사의 오류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때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는 한 정보지가 광고주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하셨습니다.

정보지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귀하가 그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사이버기자신고센터(02-734-42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에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재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재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 송 법

**제49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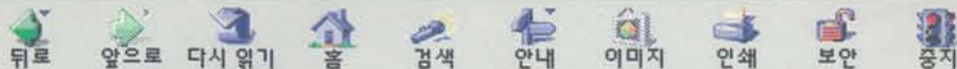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